

2013

K O D D I
연구 요약 집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 편의증진, 직업재활 등 각종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본원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이 최대한 장애인복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3년 한 해동안 수행한 연구 중 일부 수탁연구 등을 제외한 29건의 연구내용을 본 연구요약집에 담았습니다.

본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해를 거듭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으며 2011년에 수행한 연구과제부터 KODDI 연구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분야 정책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현장 및 연구자들의 참고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해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협력 부문이 추가되었고,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와 같은 보다 폭넓은 기초통계·자료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과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성관계의 의미와 실제’ 등을 수행하였고,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연구로 ‘성인발달장애인의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

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립 및 활동지원에 대한 연구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주거복지 분야는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및 직업재활 분야의 연구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황 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인권증진 분야의 연구로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였고, 편의증진 분야의 연구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법 개정마련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분석 연구',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은 국제협력 분야 연구로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원은 지난 한 해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행한 모든 연구가 관련분야 정책지원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정책연구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요약집에 수록된 모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주신 연구진들과 보건복지부, 장애계, 학계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변 용 찬**

독자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자립지원 중추기관으로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별 정책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초통계·자료,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및 가족, 자립 및 활동지원, 주거복지, 고용 및 직업재활, 인권증진, 편의증진, 국제협력 등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발굴 및 선정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를 모은 『2013 KODDI 연구요약집』은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보고서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koddi.or.kr>)의 [자료실] > [신간자료] 게시판에서 원문파일을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의 [개발원소개] > [조직도]를 참고하여 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33-0600

팩스 : 02-416-9567

이메일 : aimal97@koddi.or.kr

목 차

I 기초통계·자료 / 1

- 1.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3
- 2.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12
- 3. 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3
- 4.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 33

II 발달장애인 / 43

- 1.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메뉴얼 45
- 2.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성관계의 의미와 실제 55

III 장애아동 및 가족 / 65

- 1.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67
- 2.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81
- 3.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91
- 4.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100

IV 자립 및 활동지원 /113

- 1.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115
- 2. 활동지원급여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126
- 3.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40
- 4.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151

V 주거복지 / 163

1.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 165

VI 고용 및 직업재활 / 177

1.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79
2.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194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207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220
5. 해외 장애일자리 현황 조사 233

VII 인권증진 / 243

1.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245
2.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256
3.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264
4.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276

VIII 편의증진 / 287

1.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89
2. 건축법 개정마련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분석 연구 .. 299
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PILOT) 연구 310

IX 국제협력 / 321

1.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323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연구 337

I. 기초통계 · 자료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최복천, 유영준, 임수경, 조윤경

요약

성인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장애복지제도 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 과제에서 밀려나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구성원은 심리·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과 욕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아동을 둔 가족을 모집단으로 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유형과 지역별로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940부가 회수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장애진단 과정이 평균 26.4개월로 진단받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 돌봄자인 어머니들은 평일 평균 12시간 이상, 주말 평균 18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정서적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응답자의 57.8%가 가족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는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과 가족간의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3.9%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전체 응답자의 81.5%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49.0%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비용의 부담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제약이라는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섯째,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보육시설,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부재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진단 후 장애아동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서비스조정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 양육 및 돌봄지원 등 생활전반에 걸친 영역별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특성·생애주기적 특성·가족 환경을 반영한 선정기준 및 판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욕구 파악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인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장애복지제도 내에서 장애아동이 가지는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과제에서 밀려나 '이중적 소외'를 경험함
- 또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구성원은 심리·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과 욕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장애아동가족 지원프로그램 및 정책 등을 살펴본 후 현재 국내 장애아동가족 지원정책의 문제를 짚어보았음
- 설문조사
 - 장애아동 및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아동 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장애발견 및 진단, 돌봄 및 양육, 가족관계, 건강 및 의료, 경제 및 고용, 사회차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보육 및 교육으로 구성하였음
- 연구보고회
 - 장애아동 및 가족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음

II. 국내 장애아동 가족지원 현황

1. 국내 장애아동 법적 규정과 현황

1) 장애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자료를 기초로 장애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등록 장애인은 현재 2백5십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0~17세의 장애아동 수는 78,186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장애아동 중에서 지적장애아동이 46.2%(36,099명), 뇌병변장애아동 16.8%(13,099명), 자폐성장애아동 13.8%(10,78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장애인 중 아동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의 점유율이 높았음

2. 국내 장애아동 가족지원 관련 법령

- 장애인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일반법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족지원법」 등에서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일부 찾아볼 수 있음

3. 국내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방향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특징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특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어려움과 욕구를 반영하여 이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함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아 보육지원 강화를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영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 장애아가족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영역은 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로 부모의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 양육 지원확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4.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현황 및 내용

- 우리나라는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각종 세제상 감면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양육·돌봄영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의 돌봄 지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거주 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사업,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영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장애영아 교육지원, 치료지원, 통합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방과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재활치료영역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정서적 지원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Ⅲ.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 본 연구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실태와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장애아동 가족을 모집단으로 하여 장애유형과 지역별로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940부가 회수되었음

2. 조사 결과

○ 장애진단 과정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은 장애발견에서부터 진단까지 평균 26.4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진단 받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빠른 장애발견과 조기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장애를 부모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장애 진단 후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돌봄과 양육

- 대부분 주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평일 평균 12시간 이상이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평균 18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고 있었음. 또한 여전히 장애가족은 자녀 돌봄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양육부담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부담보다 보다 오히려 정서적 부담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음

○ 가족관계

- 가족 간의 갈등이 다소 있거나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의 57.8%를 차지하고 있었고, 갈등의 주요 이유는 아동의 돌봄 부담과 가족 간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가족 갈등은 46.9%가 부부관계 안에서 발생하였고,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35.5%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장애아동 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강 및 의료

- 장애아동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0% 정도였으며,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62.7%로 나타나 장애아동은 지속적으로 의료재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과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5.0%와 29.3%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의 64.3%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애아동의 건강과 의료문제에서 중요한 과제는 장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과 재활관련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경제 및 고용

- 전체 응답자의 81.5%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장애아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특수교육이나 재활치료비, 거주시설 이용료, 보장구 구입 및 교체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장애가족은 장애아동을 돌봄으로 인해 49.0%가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었고, 21.0%는 처우가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은 장애아동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돌봄으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었음

○ 사회적 차별

- 장애아동의 차별경험은 학교생활, 보육시설,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졌으며, 차별 경험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은 장애인 단체가 19.8%. 교육청 또는 보건복지부가 11.4%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59.7%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따라서 장애아동과 장애인 가족이 사회적 차별을 받아도 장애아동 가족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를 옹호해 주거나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육 및 교육

- 보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특수학교 유치부와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서는 주변에 보낼 곳이 없다고 응답하여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아동 가족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등하교와 선생님의 이해부족이나 편견을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친구들의 놀림이나 이해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장애아동 보육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영아 보육비 및 교육비 추가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도 장애아동의 보육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었음
- 교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9.87%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놀림이었고, 이와 함께 선생님의 이해부족이나 편견도 장애아동과 가족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제시하였음. 장애아동의 교육문제

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아동의 진로와 직업교육 확대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었음

○ 장애아동가족양육서비스

- 응답자의 45.7%가 장애등급 재심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64.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는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의 부담, 등급판정의 기준의 모호성, 절차의 복잡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이용 경험은 지원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음
-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가장 많았음. 또한 치료 및 교육서비스의 확대와 지원에 대한 요구와 직업훈련이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 전환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IV. 결론 및 제언

1.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시스템

-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함께 조기 발견과 관련한 대중인식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진단 후 장애아동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안내와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장애아동의 조기개입지원체계는 가족 중심의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 체계간의 단절 없이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조정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2. 가족의 영역별 지원방안

-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수당지급 대상 확대, 무상·의무교육 지원범위 확대, 의료비지원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해 장애 자녀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별 특화사업 운영, 발달장애인이용서비스 바우처도입 검토, 주간보호 및 그룹홈 확대, 장애아를 위한 통합 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소득기준 제한 완화, 장애아동 전문 치과진료사업 확대, 재활병원 확충,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적용품목 확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치료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육기관 내 정규 특수교사 확대 배치, 실제적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및 부모 참여 보장, 학교 치료지원 내실화 제고, 통학비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방과 후 프로그램 질 제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등이 필요함
-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종합 정보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양육과정에서 참여가 미비한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장애자녀 형제·자매를 위한 모임, 캠프, 교육지원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부모단체 육성 및 자조집단 활성화,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한 부모자원센터 운영,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가족변호인 서비스 실시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3. 국가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

-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등급, 재산기준 등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의 의료적,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적 요인과 가족 전체적 필요욕구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결정되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장애아동의 장애특성, 생애주기적 특성, 다양한 가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화되고 유연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제공인력의 자격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임. 또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를 지방정부차원에서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장애관련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은 첫째,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진단 후 장애아동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심리·정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안내와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가족 중심의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서비스 조정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둘째,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경제, 양육 및 돌봄, 재활 및 의료 등 생활전반의 영역을 고려한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의 총량의 확대와 함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 특성·생애주기적 특성·가족 환경을 반영한 선정기준 및 판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욕구 파악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김인순, 권영숙, 안성준, 이영환, 흥현근, 윤영삼, 이규일
이주송, 김광일, 송창수, 성진희, 박성오, 강태성

요약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시설주관기관은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분석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정책적 제도개선의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수행은 전국 편의증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시설과 정비대상시설을 포함하여 총141,573개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기존에 4단계 조사표를 보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조사를 위하여 3단계로 단순화하고 조사항목을 2배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3조관련 별표1의 유형분류 및 ‘의무’항목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72종으로 유형을 분류함. 또한 전수조사 조사원을 전국적으로 1,003명(장애인194명포함)을 선발하여 9개 권역별로 조사표교육 및 현장조사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진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분석결과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로 2008년의 설치율 77.5%, 적정설치율 55.8%와 비교시 설치율은 낮아지고 적정설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율이 2008년도 조사결과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13년도 조사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매개시설이나 내부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관련 세부항목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유형별 편의시설의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현황, 핵심항목 기준 설치현황, 2008년 및 2013년 조사간 비교, 2008년 이전·이후 편의시설 설치율비교 등 다양한 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수조사결과에 기반한 편의시설 현황에 따라 편의시설 종류 중에서 대분류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설치율이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편의시설 별 설치율 제고를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등을 통하여 편의증진 정책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I. 서론

1. 조사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하였으며,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4번째 실시되는 국가통계자료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의 가장 기본적 목적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등의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발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실태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등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대상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시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 의거 1998. 4. 11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시설과 정비대상시설을 자치단체별로 파악하여 총 141,573개 시설을 72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 조사원 선발은 시·군·구 및 지체장애인협회 지부 등에서 선발한 1,003명의 조사원(장애인 194명 포함)이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각 편의시설별로 실측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함
- 선발된 조사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9개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대전, 제주)으로 구분하여 기본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함
-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된 시설에 대하여 난수표 적용을 통하여 5%를 추출하여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진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등이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

3. 조사표 개발 및 유형분류

- 조사표 개발 조사항목은 2008년도의 항목을 설치기준별로 세분화하여 최대 조사항목은 160개로 실제 조사내용은 건물유형에 따라 다르나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종전의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하여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0개 유형의 모든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0개 유형의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의무'항목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72종(A1~V1)으로 분류함
-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유형 44종으로 의료시설, 학교 등 시설의 세부용도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3년 전수조사의 유형을 72종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부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II. 편의시설 설치실태 분석방향

1. 조사결과 분석방향

- 기본적인 분석내용인 편의시설 종류별 및 건물용도별 분석은 2008년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편의시설 설치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계열 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며, 편의시설별 중요도를 감안한 설치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함
 - 첫째, 기본적으로 2013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별 설치율과 건물유형별 설치율을 파악하며, 2008년도 조사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각 편의시설별 및 건물유형별 세부항목별 설치율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향후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시키는데 참고가 되도록 한 것은 2008년도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지역별, 시설주체별 분석도 2008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시·도별 분석에서는 해당 시·군·구별 설치율 변화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해당 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시설주체별 분석은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을 구분

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차이의 의미를 파악함

- 셋째, 2008년도 조사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다. 시계열 비교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중의 하나인데 2013년도 조사항목이 2008년도의 조사항목과 차이가 있는 관계로 2013년도 전체 조사결과를 2008년도 설치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시계열비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2008년도와 동일한 조사항목만을 기준으로 시계열비교 분석을 시행하였고, 또 2013년도에 조사한 시설 중에서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2008년도 실태조사 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함
- 넷째,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에게 체감적인 편의제공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각 편의시설별 조사항목에 포함된 세부설치기준 중 해당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치기준을 2개씩 정하고, 이들 기준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핵심항목 기준' 설치율을 제시하여 편의시설별 체감 설치율을 산출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조사항목 중에서 편의시설 이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간의 가중치가 있음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치로 분석이 된 점을 보완함

2. 편의시설 설치율 산정방식

- 편의시설 설치율이란 한 시설(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체 편의시설 항목수 중 조사를 통해 그 시설(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항목수의 비율을 의미함

<표-1> 편의시설 설치율 산정방식

$$\text{※ 편의시설 설치율} = \frac{\text{설치된 편의시설 세부항목수}}{\text{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times 100$$

3. 조사결과 신뢰도

- 2013년도 분석대상 시설은 약 14만개로 2008년도의 약 11만개보다 증가하였음에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가 다르고, 조사한 자료 중 부정확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관계로 일부 세부항목의 분석대상수는 2008년도보다 감소된 것이 있다. 하지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v. 20.0으로 하였으며, 시설종류별로 표준편차는 내부시설 0.589, 기타시설 0.631, 매개시설 0.775, 안내시설 0.874, 위생시설 0.8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준편차는 0.744로 높은 유의수준으로 나타남

Ⅲ.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결과

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 본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로 2008년의 설치율 77.5%, 적정설치율 55.8%와 비교시 설치율은 낮아지고 적정설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편의시설 설치율이 2008년도 조사결과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13년도 조사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매개시설이나 내부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 관련 세부항목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진 것은 아님. 편의시설 종별 설치율은 다음 <표-2>과 같음

<표-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0,711 36.1%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 설치기준항목수란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임

2.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는 대상시설의 건물군을 22종, 7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설치율은 다음 <표-3>과 같음

<표-3> 건물유형별(22개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율

구 분	대상 건물수	대상 편의시설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612,251	61.1%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181,666	60.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65,840	66.9%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89,431	62.6%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52,750	66.2%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118,955	66.1%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573,285	61.9%
노유자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606,439	52.4%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20,930	63.4%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29,982	64.3%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355,133	63.0%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124,925	47.5%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22,541	62.7%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6,373	65.3%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1,303	65.2%
묘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2,426	57.8%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7,492	72.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11,468	57.7%
공원	1,418	27,656	15,307	55.3%	13,557	49.0%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750,881	64.7%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15,290	57.2%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3.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 전수조사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분석시에는 세종시를 충남에 합하여 16개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72.2%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 <표-4>과 같이 지역별 설치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4>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

구 분	대상건물수	대상 편의시설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세종)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4.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 72개 건물유형을 공공 및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파악한 설치율은 다음 <표-5>와 같음

<표-5>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율

시설주체	대상건물수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공공시설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민간시설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5. 편의시설 종류별 핵심항목기준 설치현황

- 편의시설 종류별로 수개의 설치기준 중 편의시설 이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부설치기준만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설치율은 72.9%(적정설치율은 62.9% + 미흡설치율 10%)로 전체설치율(67.9%)보다 5%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점자블록 등이 핵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편의시설 종류별 핵심항목기준 설치율은 다음 <표-6>과 같음

<표-6>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종류	핵심세부항목수 및 전체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미흡설치수 및 미흡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수	설치율%	수	설치율(%)	수	설치율(%)	수	설치율(%)
매개시설	317,504	100.0%	208,725	65.7%	45,853	14.4%	62,926	19.8%
내부시설	207,046	100.0%	169,972	82.1%	10,106	4.9%	26,968	13.0%
위생시설	188,214	100.0%	82,452	43.8%	14,351	7.6%	91,411	48.6%
안내시설	76,128	100.0%	33,794	44.4%	8,298	10.9%	34,036	44.7%
기타시설	24,841	100.0%	16,895	68.0%	2,823	11.4%	5,123	20.6%
계	813,733	100.0%	511,838	62.9%	81,431	10.0	220,464	27.1

6. 2008년 및 2013년 조사간 비교

- 2008년도와 2013년도에 공통적으로 조사된 세부항목에 한정하여 산정한 2008년도의 설치율은 77.8%, 적정설치율은 57.6%인 반면, 2013년도의 설치율은 78.2%, 적정설치율은 68.6%로 나타났음. 설치율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2008년 이전 건물임에도 2008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3년 조사에 포함된 건물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적정설치율이 대폭 상승한 이유는 2008년도와는 달리 조사문항을 세부설치기준별로 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없앴기 때문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다음 <표-7>와 같음

<표-7>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편의 시설 종류	2008년도					2013년도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42,840	1,035,594 77.1%	754,353 56.2%	1,455,010	1,202,226 82.6%	1,063,331 73.1%				
내부시설	1,406,739	1,231,281 87.5%	959,834 68.2%	1,030,043	969,146 94.1%	867,051 84.2%				
위생시설	512,965	286,607 55.9%	183,238 35.7%	808,790	414,059 51.2%	336,763 41.6%				
안내시설	28,994	14,350 49.5%	7,498 25.9%	77,309	43,077 55.7%	35,019 45.3%				
기타시설	79,394	54,811 69.0%	38,173 48.1%	115,273	97,619 84.7%	89,304 77.5%				
계	3,370,932	2,622,643 77.8%	1,943,096 57.6%	3,486,425	2,726,127 78.2%	2,391,468 68.6%				

7.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

-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 조사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8년 이전 대상건물의 설치율은 66.5%, 적정설치율은 58.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8년 이후 대상건물의 설치율은 71.6%, 적정설치율은 64.7%인 것으로 나타났음.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다음 <표-8>와 같음

<표-8>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종류	2008년도 이전 건물					2008년도 이후 건물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708,267	1,162,906 68.1%	1,037,337 60.7%	747,465	538,608 72.1%	491,690 65.8%				
내부시설	1,195,036	950,725 79.6%	845,250 70.7%	517,316	428,569 82.8%	390,617 75.5%				
위생시설	748,238	329,764 44.1%	263,667 35.2%	322,617	174,608 54.1%	148,756 46.1%				
안내시설	124,199	50,099 40.3%	41,994 33.8%	45,653	21,534 47.2%	19,082 41.8%				
기타시설	133,438	108,048 81.0%	97,311 72.9%	48,574	40,994 84.4%	37,097 76.4%				
계	3,909,178	2,601,542 66.5%	2,285,559 58.5%	1,681,625	1,204,313 71.6%	1,087,242 64.7%				

IV. 종합평가 및 편의증진정책 방향

1. 종합평가

- 이번 조사결과에 기반한 편의시설 현황은 편의시설종류별, 건물유형별 설치율 분석외에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2008년과 2013년에 동일하게 조사한 항목을 비교한 설치율,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설치율 및 핵심항목기준 설치율 등 다양한 분석내용을 제시하여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였음
 - 설치율 종류가 많아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2013년도 조사대상시설수는 08년도보다는 30%이상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에 조사한 시설수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조사대상임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편의증진정책 방향

- 첫째,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가 설치율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동 조사결과가 장애인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물의 용도별로 편의시설 설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동 조사결과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건물단위별로 설치현황을 분석하고, 설치율의 정도가 장애인등에게 얼마만큼의 편의정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준 또는 등급 등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별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장애인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둘째, 이번 분석대상 시설 약 14만개는 2008년도보다 약 30%나 증가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2003년도에도 약 14만개를 조사하였던 것과 비교시에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보다 현실성 있게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현재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한,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특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물용도도 중요하지만 용도와 관계없이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항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시설주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에 변화가 있고, 또 전동휠체어 보급 확산 등 편의시설 관련 환경이 변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즉,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최적의 설치기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시설이용상의 편의수준과 시설주의 의무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관련 세부설치기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각 시설주관기관에서는 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관내 대상시설 중 장애인화장실, 접근로 단차제거 등의 시설이 미설치된 건물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전수조사의 분석결과 등은 향후 5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권 및 지방자치단체별 16종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시·군·구별, 건축물 유형별, 민간·공공시설별 등 다양한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을 통하여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시설별 시정 명령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최승철, 이해경, 양정환, 이진숙, 김지혜, 최미선, 김지연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기업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보고서이다. 조사대상은 장애인기업 2,500개소이고,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를 병행하여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기업은 규모별 소상공인(90.6%), 소기업(7.9%), 중기업(1.5%)의 순으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4%), 도·소매업(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4.25명, 평균 장애인근로자 수는 1.38명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의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32.5%로 일반기업에 비해 장애인 고용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애인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32.3%),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24.1%),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15.0%) 등을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한 장애인기업 10곳 중 7곳은 창업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시 경영애로는 자금조달(42.6%), 매출부진(33.8%), 마케팅능력(8.6%), 인력관리(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경영실태를 보면, 평균자본금 168.1백만원, 순이익 75.2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자금사정은 곤란한 경우가 56.8%로 원활한 경우 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09) 20.0%, ('11) 34.5%, ('12) 41.0%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둘째, 장애인기업의 규모별·업종별 욕구에 따른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요구되며, 넷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직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타 기관(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섯째, 동종업종간 또는 지역별 협의체 등을 통해 동종업종간 원자재 공동구매 등 장애인기업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 및 표본설계를 위한 후속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I.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보고서임.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 ‘장애인기업 정밀실태조사’를 기초 조사로 시작하게 됨. 이후 2007년부터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네 번째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따라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설계

1) 조사설계 개요

-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기업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표 1>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장애인이 대표자인 장애인기업
표본수	2,500개 장애인기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업종별 다단층화표본추출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원칙(전화/이메일/팩스조사 병행)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처리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기초분석 테이블 작성
조사기간	2013년 9월 16일 ~ 2013년 10월 31일
조사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2) 실사설계

- 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장애인이 대표자인 장애인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조사전문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해) 진행되었음. 조사가 20%정도 완료된 시점인 9월 4째 주에 전체 데이터 확인 및 중간점검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였음

3)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자료처리 단계에서의 발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전담 연구원을 투입하여 관리하였으며 3단계 검증 과정(1차 조사표 검증 - 2차 입력 검증 - 3차 전산 검증)을 통해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유지하였음

3. 표본설계

1)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

-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의 일반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모집단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장애인기업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이에 2013년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 확보된 장애인기업 리스트 및 창업 장애인기업 수를 토대로 등록 장애인 인구 비율을 이용한 비조정 및 응답률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기업 수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장애인기업은 약 34,761개로 추정됨
- 2013년 추정된 전국 장애인기업 수는 34,761개이며, 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0.6%, 소기업 7.9%, 중기업 1.5%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조업 42.4%, 도/소매업 22.6%, 숙박/음식점업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6.6%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0%, 부산 7.4%, 전남과 경남 각각 7.1%, 경북 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과 2013년도 추정된 장애인기업 수를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2011년에 비하여 24.2% 높아진 반면, 제조업을 제외한 타 업종은 2011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음

2) 표본추출의 한계

- 2011년 실태조사의 장애인기업 수 추정수와 비교했을 경우, 2013년 실태조사의 전체 모집단 포함률은 22.8%임(2011년 추정 장애인기업 수 32,685개소, 2013년 확인된 장애인기업 수 7,436개소).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모집단 포함률이 40.2%이고,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모집단 포함률이 3.5%로 나타나, 제조업의 모집단 포함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1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2,500개의 표본기업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리스트 1,065개 중 455개가 포함(18.2%)되었으나 2013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2,500개 표본기업 중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리스트 1,755개 중 830개가 포함(33.2%)되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의 포함률이 15%p 상승하였음
- 결국, 2011년에 비해 실태조사 표본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애인기업 리스트의 활용률이 약 15%p 상승하였고, 장애인기업 추정에서도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II. 조사결과

1. 기업 일반사항

1) 일반적 현황

- (응답기업 특성) 규모별로는 소상공인(90.6%), 소기업(7.9%), 중기업(1.5%) 순으로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4%), 도/소매업(22.6%), 기타(15.2%), 숙박/음식점업(10.3%), 개인서비스업(9.5%) 순이고, 지역별로는 경기(17.4%), 서울(15.8%), 경북(9.9%) 등의 순임

- (기업형태) 개인사업체(76.9%), 회사법인(22.4%), 회사 외 법인(0.6%) 순임
- (사업체 유형) 단독사업체(94.0%), 공장/지사/영업소(3.4%), 본사/본점/본부(2.5%) 순임
- (기업인증 유형) 10개 유형 중 어느 것도 아닌 경우가 85.2%로 가장 많고, ISO 인증기업(8.2%), 벤처기업(6.3%) 등의 순임
- (설립연도) 2001년~2010년에 설립된 기업이 40.6%로 가장 많고, 1991년~2000년(29.5%), 1981년~1990년(12.7%)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의 60% 가량은 업력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2) 인력 현황

- (현 종사자 수) 평균 현 종사자 수는 4.25명, 평균 현 장애인근로자 수는 1.38명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의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32.5%로 나타남
- (신규채용) 최근 1년간 신규채용 여부는 신규채용을 한 경우(21.8%),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78.2%)로 나타남. 신규채용 인원수는 평균 3.03명이고, 이 중 장애인근로자는 0.44명(14.6%)으로 조사됨
- (채용의향) 향후 1년간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23.3%),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76.7%)로 나타남

3) 대표자 현황

- (성별 및 연령, 장애유형) 대표자 성별은 남성(82.5%), 여성(17.5%), 평균 연령은 55.6세로 50대 이상이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76.2%), 시각장애(11.0%), 청각장애(5.2%), 신장장애(2.5%) 등의 순임
- (경영 형태) 창업(91.7%), 기업인수(5.1%), 가업계승(1.8%) 순임
- (최초 창업 연령) 40대가 36.8%로 가장 많고, 30대(31.9%), 50대 이상(22.4%), 20대 이하(8.9%) 순임
- (창업 후 지속기간) 현 기업 창업 후 지속기간은 5년 미만 23.6%로 가장 많고, 10년~15년 미만(19.9%), 5년~10년 미만(15.9%), 25년 이상(15.8%), 20년~25년 미만(13.0%), 15년~20년 미만(11.8%) 순임

2. 재무 관련 현황

- (자본금) 2011년 162.4백만원에서 2012년 168.1백만원으로 3.5% 증가함
- (매출액) 2011년 664.1백만원에서 2012년 668.2백만원으로 3.6% 증가함
- (순이익) 2011년 75.3백만원에서 2012년 75.2백만원으로 0.1% 감소함
- (부채액) 2011년 186.7백만원에서 2012년 195.7백만원으로 4.8% 증가함
- (자금조달방법) 자기자본조달(65.7%), 금융기관 대출(20.1%), 정부정책자금(7.0%), 기타(4.7%), 개인사채(2.6%) 등의 순임
- (자금사정) 자금사정이 원활한 경우 6.3%(매우 원활 0.3% + 다소 원활 6.0%), 곤란한 경우 56.8%(매우 곤란 18.2% + 다소 곤란 38.6%)로 나타남

3. 창업 관련 현황

1) 창업 전 업종 및 동기, 소요시간

- (창업 전 업종) 전 업종과 현 업종간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65.8%(매우 연관 있음 33.5% + 연관성 있는 편 32.3%),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26.0%(전혀 연관 없음 16.1% + 연관성 없는 편 9.9%)로 나타남
- (창업 동기)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32.3%),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24.1%),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져서(15.0%),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져서(11.3%) 등의 순임
- (창업 소요 기간) 창업/인수 결심 후 창업까지 걸린 기간은 0.5년 이내인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0.5년~1년(30.0%), 3년 이상(11.6%) 등의 순임. 장애인기업 10개 중 7개 정도는 창업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창업지원기관 활용도 및 자금조달방법

- (창업지원기관 인지도 및 활용)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44.2%이며, 창업 시 활용한 기관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5.9%), 소상공인진흥원(24.7%), 중소기업진흥공단(20.3%), 한국장애경제인협회(9.2%) 등의 순임
- (도움 정도 및 내용) 창업지원기관별 도움 정도는 기타 창업지원기관(장애인고

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나들가게 등)이 4.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3.90점), 소상공인진흥원(3.83점), 중소기업진흥공단(3.8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지원기관의 도움 내용은 자금지원(53.7%), 상세한 상담 및 컨설팅(25.1%), 단순 정보제공(11.9%), 교육 및 행사(7.2%) 등의 순임

- (창업 시 자금조달경로) 자기자본조달(67.2%), 금융기관 대출(14.6%), 기타(8.4%), 정부 정책자금(6.0%), 개인사채(3.9%) 순임

3) 창업의 애로사항 및 주요사항

- (애로사항) 창업 후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42.6%), 매출부진(33.8%), 마케팅능력(8.6%), 인력관리(5.3%), 시장환경 등 정보 수집능력 미흡(4.4%) 등의 순임
- (창업 중요요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금조달능력(37.6%)경영 및 마케팅능력(32.5%), 입지선정(11.4%), 제품의 품질(8.9%), 아이템(6.9%) 등의 순임
- (필요한 정부 지원)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은 창업자금 지원(71.1%), 세금지원 확대(10.6%), 컨설팅 지원(7.3%), 시장정보 제공(5.4%), 창업절차 개선(2.3%) 등의 순임

4. 기업 경영 활동

1) 판매 및 마케팅

- (납품 경험)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기업의 비율은 28.8%임. 납품계약 형태는 일반경쟁(60.9%), 수의계약(60.1%), 지역 제한 경쟁(29.4%) 순으로 나타났고 납품 시 계약형태별 유리한 정도는 수의계약(3.27점), 지역 제한 경쟁(3.06점), 일반경쟁(2.92점) 순임
- (납품 미경험)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기업의 비율은 71.2%임.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는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할 여력이 없어서(25.0%),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20.2%) 순임
- (마케팅 취약분야 및 정부지원 영역) 마케팅능력 중 취약분야는 판매망 및 유통채널 관리능력(24.3%), 시장정보 수집능력(16.4%), 홍보 및 광고능력(12.3%),

제품개발 및 디자인능력(9.6%), 가격결정능력(5.2%) 등의 순이며, 취약분야가 없다(26.9%)는 기업도 있음

- (정보획득 경로) 개인적인 연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음(34.6%), 관련 업종 단체나 협회를 통해 얻음(21.1%), 시장정보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얻음(7.4%), 내부자료와 외부보고서를 통해 얻음(6.2%) 등의 순이며, 시장정보 수집경험이 없다(23.8%)는 기업도 있음
- (시장정보 수집 시 애로사항) 소비자 관련 정보가 구체적이지 못함(19.2%),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함(10.2%), 정보가 유료로 제공되어 수집비용이 부담(9.0%), 조사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움(7.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장정보 수집경험이 없는 경우 33.8%와 애로사항이 없는 경우도 19.6%로 나타남

2) 사업 확대

- (사업 확대 및 경쟁력) 사업 확대 경험이 있는 장애인기업의 비율은 32.6%이고, 이들 기업 중 사업 확대 시 가진 경쟁력으로는 제품 품질 우위(40.5%), 우수한 기술력(20.4%), 가격 경쟁력 우위(14.2%), 제품유통망 및 판매채널 확보(10.2%) 등의 순임
- (사업 확대 못한 이유) 사업 확대 경험이 없는 장애인기업의 비율은 67.4%임.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금부족(32.8%), 제품유통망 및 판매채널 부족(6.3%),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능력 열위(5.6%) 등의 순임

3) 기업 운영의 차별성 및 애로사항

- (서비스 및 제품의 경쟁력 수준) 장애인기업의 29.6%는 서비스 및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4.3%가 열악하다고 응답함
- (경영상 어려운 점) 자금조달(44.4%),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31.5%), 인력 확보 등 인사관리(6.1%), 기술개발(3.3%),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2.7%), 각종 행정규제(1.5%) 등의 순임
- (금융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담보부족(31.6%), 대출한도부족(20.3%), 고금리(17.0%), 신용보증기준의 엄격함(13.3%),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낮은 신용도(4.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13.0%로 나타남

4) 향후 경영활동 계획

- (경영상 중점 부분) 시장개척(39.3%), 원가절감(11.5%), 신제품 개발(11.2%), 기존제품의 고급화(7.2%), 작업환경의 개선(3.7%), 광고선전(3.6%), 디자인 개발(3.6%) 순임
- (기업정보 획득 경로) 동료 기업주(33.1%), 소비자(23.5%), 유통 및 판매업자(17.5%), 신문(9.3%) 등의 순임

5. 정부 지원정책

- (기업활동 지원정책)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39.5%임. 지원정책별 이용 여부는 자금지원제도(38.0%), 교육지원제도(14.1%), 컨설팅 정보제공(12.1%), 판로지원제도(10.1%), 세제지원제도(9.7%), 정보화지원제도(6.9%) 순임
-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 정부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41.0%임. 정책별 이용 여부는 자금지원(28.9%), 창업교육(16.3%), 창업컨설팅(11.2%), 판로지원(10.8%), 기업컨설팅(9.5%), 기업교육(8.7%) 순임
- (필요한 지원정책) 장애경제인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이 4.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제지원(4.25점), 장애인기업 홍보지원(4.08점), 행정절차 간소화(3.83점) 순임

Ⅲ. 결 론

- 장애인이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거나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창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
- 창업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68.6%에 달하고 있어 창업을 위한 교육과 창업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 있음

- 장애인기업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재정적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임.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 재정지원인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장애인기업은 전체 모집단 수가 확실하지 않고, 2년마다의 실태조사를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조사에서는 통계개발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 연구를 별도로 수행하여 모수추정방법에 대한 개선과정을 거쳤으나 향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표본설계를 위해 모집단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이나 시간적 제약과 비용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타 기업체 조사에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둘째, 장애인기업의 규모별·업종별 욕구에 따른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셋째, 장애인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요구되며, 넷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직원역량 강화가 필요함. 다섯째,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타 기관(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섯째, 동종업종 간 또는 지역별 협의체 등을 통해 동종업종 간 원자재 공동구매 등 장애인기업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 및 표본설계를 위한 후속 연구 수행이 요구됨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

서해정, 김동기, 김돌순, 현근식, 간기현, 박지연

요약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실행, 평가 과정 등에 장애주류화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장애평등, 장애형평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주류화, 장애인지예산제도, 장애인 예산, 영향평가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장애인지예산 분석에서는 장애 평등적 기준 등을 논의하고자 OECD 국가들 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장애영향분석의 사례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 및 주거 등의 영역에서 국민연금제도, 건강검진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장애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선 장애인지예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정책의 절대적 우선성으로 중앙정부의 장애인예산은 2013년 복지재정의 1.7% 수준(1조 6925억원)이며, 이는 GDP 대비 약 0.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우선성으로 보건복지부 분야별 예산 중 장애인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며 노인과 보육 및 여성에 이어 3순위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영향분석 대상인 국민연금제도에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 기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가입률이 3.3%~4.6%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가입의 경우 매월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데, 그만큼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에서는 2012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모집단) 대비 일반건강검진가입자의 비율에 있어 전체 31.6%에 비해 장애인은 36.2%로 비장애인 31.4%보다 높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혜의 불평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건강검진 사업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수검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628개소이며 유급 근로자 수는 15,990명 중 취약계층은 9,440명(59.3%)이고, 취약계층 중 장애인 근로자 수는 2,765명으로 총 근로자의 17.3%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근로자들은 단순업무, 일자리제공형에 치중하여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의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인 가구주는 24.3%로 비교적 양호한 수혜가 주어졌으며, 국민임대는 취약계층 10%의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는 2013년 기준 4.5%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대비 장애유무별 공급률을 살펴보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률이 약 1/6수준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에서 장애주류화란 용어는 학계나 장애계에서 아직 낯선 개념으로 이에 대한 개념 합의 및 구체적인 전략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본 원에서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장애주류화와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로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 예산 분석 및 장애구분통계 생산을 시도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일반정책에서의 중앙정부 정책 결정, 실행, 평가 과정 등에 장애주류화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장애 평등, 장애형평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장애영향분석의 핵심적인 분석 틀 중 하나인 장애구분통계를 활용하여 향후 일반정책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 지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함
- 또한 국민연금제도, 건강검진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장애영향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장애주류화, 장애인지예산제도, 장애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용어와 개념정의 및 분석틀, 장애정책예산의 장애평등적 기준을 제시함
- 2차 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공문발송 후 장애구분통계를 취합함. 자료는 장애영향분석 중 '정책결과 수혜 및 영향의 장애 평등성' 분석 및 각 사업별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의 장애구분통계표 활용에 제시함
- 장애인지 예산분석 : 장애정책(세입, 세출 수준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정책예산) 과 일반정책(개별정책 예산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장애영향분석 : 국민연금, 건강검진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4 가지 일반정책 사업에서의 장애영향분석을 실시함
- F.G.I 및 심층면접 : 각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F.G.I를 2회 실시함
- 자문회의 :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에게 자문을 2회 실시함

II. 문헌 고찰

1.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전략 개념

- 장애주류화 개념 : 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계획, 평가,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정책의 과정에 장애주류화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것(권선진, 2012).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개발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 분배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시키는 장애인참여보장 정책 및 가이드라인
- 장애주류화 접근방법 : 이중트랙접근 방법 사용함. 우선 포괄적 접근(inclusive approach)은 보편적 개발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이고, 장애중심적 접근(disability-specific approach)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중트랙 접근을 사용함
- 장애주류화 목적 : 장애인 개인의 기능적 역할의 수행정도를 강조한 개인적인 측면과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구조나 사회신념 등이 장애인이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측면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기능될 때 달성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삶을 의미한 '사회통합'이 장애주류화의 목적임

2. 장애인지 예산의 개념 및 필요성

- 장애인지예산제도의 개념 : 장애·비장애 간 평등한 예산배분 및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예산제도로, 적절한 예산분배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실현될 수 없음

-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장애인과 장애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혜적·동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인 자립생활모델, 사회적 모델, 정상화 등과 그 지향점이 같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 또는 배제 없이 비장애인처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3. 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논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배경 : 새 정부정책의 의사결정·법령제정·서비스가 성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 기회, 성주류화 확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모든 정부정책 및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주체 및 대상정책
 - 평가주체 : 자체평가는 공무원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하여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함
 - 대상정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정책, 향후 발생우려가 있는 정책 중 수혜대상이 넓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선정함

Ⅲ. 장애인지예산분석

1. 중앙정부 장애정책예산의 우선성 분석

-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의 규모
 - 2013년 1조 6,925억원으로 복지재정(약97조 4,000억원)의 1.7%임
 - 성질별로 나눠보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일반회계이고 그 다

음 16%가 각종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방송발전기금, 복권기금, 영화기금 등)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2012년 9,812억원에서 2013년 본예산 기준, 1조 2,087억원으로 2,276억원이 늘어 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특히, 활동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7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이 많은 증액을 보였음

○ 보건복지부 분야별 예산 비율

- 노인(42.5%), 보육 및 여성(41.3%), 장애인(12.0%), 아동(2.4%), 보건 (1.9%) 등의 순임

○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의 행정부처별 비율과 내용

- 보건복지부(71.5%)가 장애인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고용노동부(11.9%), 국토해양부(6.8%), 문화체육관광부(3.6%), 교육과학기술부(3.0%), 기획재정부(1.4%) 등의 순이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0.1%나 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냄

2. 장애정책예산의 적절성 분석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적절성 분석

○ 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3,829억원 임

- 서비스 단가인 8,550원은 유사서비스의 단가와 비교하여도 부족한 실정으로 최소 약 9,500원 이상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대부분 또는 거의 필요한 대상자가 약 19.8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2013년 지원대상인 52,000명은 지속적으로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김동기 외(2012)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별 추가 필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약 31시간으로 2013년 지원시간인 약 86.4시간(월평균 73.0만원)은 더 증가되어야 할 것임

- 2013년 활동지원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은 약 4,89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됨

2) 장애인연금제도의 적절성 분석

- 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 예산은 3,440억원임
- 지원대상은 32.7만명(전체 장애인의 약 23%)이나 장애인연금제도가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성격의 급여라면,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인연금제도로, 그리고 4~6급은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함
- 장애인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평균 16.1만원으로 현재 부가급여의 경우, 월 최대 8만원밖에 지급되어 지원액이 보다 증액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애인연금제도 예산도 대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IV. 일반정책의 장애영향분석

1. 사례선정

- 장애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은 장애인실태조사(2011) 결과 욕구가 높게 나타난 소득·의료·고용·주거보장의 영역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애여부 통계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상이 넓고 파급효과 큰 사업을 선정함
 - 소득보장(국민연금), 의료보장(건강검진사업), 고용보장(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주거보장(보금자리주택사업)

2. 사례분석

1) 소득보장 : 국민연금

- 장애영향평가분석들은 정책개요, 정책의 장애인 관련성, 장애구분 통계의 생산·활용, 장애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과정, 정책의 접근성, 정책결과 수혜 및 영향의 장애평등성,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7가지로 구분하였음. 여기서는 장애구분통계를 활용한 정책결과 수혜 및 영향의 장애평등성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자 함
- 2008년 기준 장애인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비율이 3.8%(비장애인 96.2%)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5%보다 약 1.2%p 낮고, 가입대상자 대비 가입자 수 역시 비장애인(60.3%)보다 4.6%p 낮은 55.7%에 불과함
- 국민연금을 가입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3.5%, 96.5%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비율이 2.5%, 지역가입자는 4.5%, 임의가입자 8.0%, 임의계속가입자 8.4% 등으로 비장애인의 직장가입자 가입비율보다 약 2배 이상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비율이 높음
- 즉,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률이 낮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비율이 직장가입자 보다 비율보다 높으며,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급여가 낮음

2) 의료지원 : 건강검진사업

- 2012년 기준 장애인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건강보험가입자 비율은 4.2%(비장애인 95.8%)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5%보다 약 0.8%p 낮고,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대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비율은 36.1%로 비장애인 31.4%보다는 높게 나타남
- 일반건강검진 : 전체 수검률 72.6%에 비해 장애인 1차 수검률(1차 수검자 4.4%)은 66.4%로 비장애인 73.2%(1차 수검자 95.6%)보다 낮으며, 2차 수검률은 30.6%로 1차 수검률의 절반도 못 미치며 비장애인보다는 약 7%가량 낮음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수검자 수의 비율에서 장애인 2%, 비장애인은 98%로 장애인 비율이 일반건강검진 비율(4.4 : 95.6)보다 현저히 낮으며, 만40세 장애

인의 1차 수검률은 63.1%로 비장애인(69.9%)보다 낮고, 1차 수검자 중 2차 수검인원은 27%로 비장애인과 유사함. 만66세는 장애인, 비장애인 비율이 10대 90정도로 장애인 수검자 비율이 증가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76.7%)보다 다소 낮은 74.2%를 보이고 있음

- 암검진 : 장애인 수검자 비율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검진에서 각각 6.6%, 8.9%, 7.5%로 나타났으나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장애여성의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장애여성이나 장애남성보다 수검률이 매우 낮아, 장애여성의 암 발생 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전체 대상자 중 장애인은 0.2%에 불과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자 및 수검자가 증가함. 수검률은 장애인 32.5%, 비장애인 58.4%로 장애인의 수검률이 낮음
- 이와 같이 장애인의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검진 기관 접근성, 장애친화적이지 못한 검진과정 및 검진항목 등에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3) 일자리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2011년 기준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장애인인구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17.3%이고,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4.4%로 본 정책에 대한 장애평등성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사회적기업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한기간 없는 근로자 고용비율이 비장애인보다 10%p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들의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 복지관련 일자리제공형이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사회적 목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6.8명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이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0.8명), 지역사회공헌형(1.0명), 혼합형(0.6명) 등으로 평균 1.0명 이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남. 즉,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는 성과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단순업무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음

4) 주거지원 : 보금자리주택

- 영구임대주택 중 장애인 가구주는 24.3%로 비교적 양호한 수혜가 주어졌으며, 국민임대는 취약계층 10%의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는 2013년 기준 4.5%를 공급하였음. 그러나 저소득가구 대비 장애유무별 공급률을 살펴보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률이 약 1/6수준이 불과함
- 그 이유는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리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에는 거의 공급되지 않고, 경기도 지역에 약 40%가량 집중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장애인들이 입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과거에 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 장애인을 고려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인의 입주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개선사항이 많음

V. 결론 및 제언

- 정책의 영향분석 및 인지에산분석 등이 정책주류화를 위한 핵심도구로 사용되면서 장애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본 연구에서의 장애인지에산분석은 장애정책으로 한정하여 절대적 및 상대적 우선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 사례 성격으로 일반정책에서의 사후장애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음
- 장애영향분석은 장애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검진사업, 보금자리주택,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각 사업별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특이성 반영 필요, 장애유무 따른 장애형평성 추구, 서비스 접근성 및 홍보방법 개선 필요, 장애형평성 또는 장애주류화 증진방안 위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정책의 장애영향분석과 장애인지분석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 전담센터 지정·운영 및 체계적 분석시스템 마련 : 장애영향평가 및 인지에산분석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장애영향분석 및 장애인지에산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구분통계 구축 : 장애영향분석 및 장애인지에산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정책에서의 장애구분 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예산배분 및 편성조정을 위해 반드시 장애구분통계가 마련되어야 함
- 각종 위원회 위원 장애인 현황 및 활동내역서 공개 : 일반정책 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욕구 및 경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장애인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정책의 장애영향분석 분석틀 및 지표개발 :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을 근거로 장애영향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각 사업별 장애구분통계의 형태와 내용은 차이가 있음. 향후 정책 및 사업유형별 큰 틀에서의 장애영향분석 방법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예산의 장애평등적·형평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예산 DB 구축 : 장애평등적·형평적 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구분통계가 필수적이므로 일반정책,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구분 DB구축의 무화
- 장애인지에산 및 장애영향분석 결과 정책반영 : 일반정책에서의 장애형평성에 대한 공론화, 간담회, 공청회 실시, 사업담당자의 장애인지적 관점 교육, 정책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하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

Ⅱ.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최복천, 이미정, 윤은호, 조윤경, 백정연, 장지용

요약

본 연구는 자조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조집단의 운영과 원칙, 내용과 목표, 조력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지원하는 조력자들의 자조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조집단 지원 시 참고가 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조력자들의 업무 수월성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조집단의 역사, 정의, 효과와 관련한 문헌 분석을 수행했고, 해외 선진 자조집단의 당사자 또는 조력자를 위한 매뉴얼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현재 자조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자조집단에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부모와 조력자에 대한 FGI를 통해 자조집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제62회 전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 대회”(2013. 11. 8. ~ 11. 10) 등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이에 본 매뉴얼은 해외 자조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의식을 가진 집단이며 자조집단의 목적은 모임의 구성원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결정에 토대함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매뉴얼은 자조집단 조력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매뉴얼에서는 정보제공자,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자, 자기결정 능력 배양자, 임파워먼트 독려자, 자원동원자, 그룹 유지자로서의 조력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해하기, 인내와 기다림, 경청하기, 평등한 관계 맺기, 실수에 대한 허용, 자기노출과 관련한 조력자의 자세를 제안했다. 또한 자조집단 지원시 조력자의 개입시점, 자조집단 일 외의 요청사항에 대한 대처, 권위적 관계 형성으로 인한 어려움, 조력자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와 같은 조력자의 딜레마에 대한 참조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본 매뉴얼은 자조집단을 지원할 때 필요한 실천 전략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본 매뉴얼에서는 자조집단의 시작에 필요한 절차와 문제에 직면하기, 즐거운 일 계획하기, 경험 공유 등과 관련한 자조집단 정체성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매뉴얼은 리더의 선출과 역할, 의사결정 및 안건 지원, 재정 지원에 대한 참조점 제시하였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인은 장애영역의 특성상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주로 가족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음. 발달장애인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회적 통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역량, 잠재력,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회까지도 박탈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기존의 장애정책이 장애인의 사회적 분리와 배제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을 장애인의 '독립생활 (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Barnes&Mercer: 2010). 국내에서도 자립생활 패러다임 아래서 장애인당사자주의, 자조집단을 통한 동료상담, 권리옹호 활동이 강조되어 왔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조집단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 가족의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매뉴얼은 한국적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해외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당사자, 조력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자조집단의 역사, 조력자의 역할 및 자세, 자조집단 운영의 실천적 전략, 협력적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를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조력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II.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관련 문헌수집 및 분석과 더불어 자기결정과 관련한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 및 동향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
- 본 연구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여 매뉴얼 내용에 당사자들의 욕구와 상황이 투영되도록 노력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조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참여하여 당

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 심층 인터뷰와 자조집단을 지원하고 있는 조력자 및 가족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조집단의 유형 및 내용, 자조집단의 구성 및 운영, 자조집단의 동학, 자조집단 조력자의 역할과 자조집단 활성화 방안, 매뉴얼의 내용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음
- 본 연구는 자조집단에 대한 3차례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음.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2013년 11월 8일 ~ 10일에 걸쳐 개최된 “제62회 전일본(全日本) 손을 잡는 육성회 전국대회”, 2013년 8월 10일 ~ 11일에 걸쳐 개최된 “제1회 전국발달장애인 자조그룹 대회”, 아스퍼거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estas”의 2013년 9월 13일 2차 모임에서 참관 및 참여관찰을 수행했음
- 매뉴얼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회의와 자문위원들의 최종평가를 거친 후 매뉴얼이 완성되었음

III.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이해

1. 자조집단의 개념과 기능

- 선행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임의 주체가 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며, 목표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의식을 가진 집단이라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조집단의 기능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는 동시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들며, 자기선택과 결정과정을 통해 자아성취감 높일 수 있고 상호 조인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임

2. 자조집단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북유럽인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전반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캐나다, 미국 등 북미로 전파되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임. 각각의 자조집단은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이 명확한 사회적 이념과 원칙아래 성립되었다는 점임. 스웨덴은 노말라이제이션, 미국과 뉴질랜드는 자기옹호, 일본은 노말라이제이션과 자기옹호가 장애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
- 둘째,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권력관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매개공간이 존재했다는 점임
- 셋째,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모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모임이나 시민권운동단체의 지원과 지지아래 활동을 시작하지만 자조집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모나 시민권운동단체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발전했음
- 넷째,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다섯째, 자조집단의 형태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스웨덴의 경우 초기에는 부모모임 산하에서 시작하여 조직이 발전하면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이 독자적으로 자금 및 조직을 운영하는 자치형으로 발전해왔으며 미국은 시민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다른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연합형, 뉴질랜드는 부모조직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부문형으로 발전했음. 또한, 가족중심의 동양문화권인 일본은 스웨덴과 미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피플퍼스트는 연합형, 본인회는 부문형의 형태로 공존하고 있음

Ⅲ. 매뉴얼 내용

1. 자조집단 조력자의 역할과 자세

1) 조력자의 역할

- 조력자의 근본적인 역할은 무기력하고 자기 의문에 쌓여 있는 당사자들을 임파워먼트 하는 것임. 발달장애인은 성장과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고, 고립되고, 무시받고, 학대받은 경험을 종종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조력자들은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임파워먼트 할 필요가

있음

- 자조집단에서 조력자는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조력자는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자조집단의 구성원들이 풍부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조력자는 자조집단을 운영하기 위해 자기 결정, 자기 옹호와 같은 전문 용어를 당사자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도우미가 되어야 함. 또한 조력자는 기초적으로는 글자 습득, 수셈 방법 교수에서부터 그룹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훈련, 그룹매너까지를 제공하여 자조집단이 유지·발전 할수록 도와야 함
- 조력자는 자조집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단 유지의 기초 기술을 지원해야 함. 자조집단의 초기과정에서 조력자는 모임 일정을 확인하는 일, 공간을 구하는 일, 다과를 가져오는 일, 연락망을 만드는 일과 같은 모임 운영에서 기초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조력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자조집단 운영·유지·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잘 알고 또한 지역사회와 결연할 수 있어야 함

2) 조력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

- 조력자가 당사자들에게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는 회원들을 이해하는 것임. 조력자는 당사자들의 특수한 삶의 경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회원들의 강점을 독려하면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구축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조력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과정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음. 결정과정은 결정의 결과만큼 중요함. 조력자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모임을 주도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력자와 구성원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발생하게 됨
- 조력자는 자조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다음 일정, 회원의 신변상의 변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이러한 관심은 자조집단에 헌신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며, 자조집단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 조력자와 당사자 관계가 힘의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력자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문과 성찰이 필요함

-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음 (West Virginia People First, 2013: 35).
- 조력자의 개인사가 공유되지 않을 때 당사자들과의 친밀도나 신뢰도는 낮아지게 됨. 따라서 조력자들은 자조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써 구성원들과 일상의 일들을 공유하여 구성원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구성원들의 관계망에서도 배제되지 않으면서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음

3) 조력자의 딜레마

- 조력자들은 최소한의 개입과 개입 시점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함. 개별 사례에 따라 개입 상황은 매우 다양화되겠지만 구성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사자에게 해가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때 조력자는 개입할 수 있음
- 구성원들은 조력자와 자조집단 일 외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할 수 있음. 조력자가 시간과 에너지가 풍부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조집단 구성원과의 개인적 관계로 인해 자조집단의 모임 운영과 자신의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개별 옹호를 위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옹호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임(Worrell, 1998: 57)
- 자조집단 구성원들과 권위적 관계가 만들어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조력자가 구성원들의 약점만을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지원을 할 때 문제는 발생하게 됨.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조력자가 구성원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의존성과 불평등한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조력자들은 자조집단 운영을 통해 자기성장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지만 자조집단 이외의 일에 도전하고 싶을 때도 있음. 조력자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 다만, 조력자가 바뀌게 될 때 당사자들은 혼선을 경험하기 때문에 조력자는 자조집단에서 탈퇴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조력자의 자격

-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의사소통과 목표관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결정과 자기 옹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집단 상담과 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정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 조력자는 인권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조력자에게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감정을 파악하는 세밀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조력자가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관계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인권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조력자의 자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부모가 조력자가 될 수 있는가'임.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있는 자조집단의 조력자가 되는 것은 지양하되, 부모가 아닌 조력자 개인으로서 자조집단의 조력자가 될 수 방안이 고려될만 함

2.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실천적 전략

1) 자조집단 구성 지원

(1) 자조집단 시작하기

- 자조집단을 시작할 때 자조집단을 이미 구성하여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조집단을 견학하거나 이들에게 시작단계나 진행방법을 문의하면 선경험에 기초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음
- 자조집단의 구성원은 유사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가진 당사자로 구성되되 보다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 자조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함
- 시작 단계에서는 모임을 발의한 구성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적극성을 유발하는 것이 필요함
- 조력자는 자조집단의 시작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함. 자조집단을 홍보하고 구성원들을 모으는 일에는 조력자의 지원이 필요함. 복지관이나 부모단체에 자조집단에 대해 홍보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조집단의

- 시작을 알리고 문의자에게 친절히 대응하여 문의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
- 시작 단계에서 자조집단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셋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 목표는 1년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는 3-6개월 정도로 분류될 수 있음
- 자조집단을 초기에 지원할 때는 자조집단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누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모임은 어떠한 주기로 개최되는지, 회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회의 과정에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무엇인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규칙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2) 자조집단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략

- 자조집단의 초기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임. 조력자는 구성원들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더불어 자조집단은 재미가 있어야 함. 자조집단은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조력자와 구성원 모두가 재미있지 않으면 모임이 유지되기 힘들. 자조집단의 안전과 활동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재미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함
- 그룹이 유지되고 그룹의 정체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함.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신뢰, 연대, 친밀감은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조력자와 구성원들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과 경험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자기결정의 핵심은 당사자들의 권리 증진과 역량강화에 놓임. 그러나 자기결정은 당사자를 둘러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개념은 개인에 대한 자율성과 동시에 관계성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타자에 대한 관계성은 책임성을 수반함. 당사자들에게 권리옹호가 자기에 대한 주장만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력자는 권리뿐만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책임은 권리를 위한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음

2) 역할 정하기와 역할 독려하기

- 자조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

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함. 그러나 자조집단에서 리더의 유무는 자조집단 구성원들 안에서 결정될 사안임

- 자조집단을 유지하는 동안 조력자는 리더와 함께 별도의 모임을 가져야 함. 리더 모임은 회원 모임 2~3일 전에 길게는 일주일 전에 진행되어야 함. 리더모임에서는 자조집단이 부드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안건과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 있음. 리더 모임에는 조력자가 참석하여 리더들의 회의를 지원함

3) 자조집단 운영 지원

- 조력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자조집단의 활동을 위해서는 매번 모임을 이끌어 가는 안건이 필요함. 안건은 자조집단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조집단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주요 주제가 됨
- 안건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어야 함. 더불어 안건은 구성원들의 내적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함
- 자조집단에서는 안건을 구성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안건 구성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함. 회의 절차는 구성원들이 안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구조를 형성함
- 자조집단의 유형에 따라 재원 확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관이나 단체의 프로그램 성격으로 자조집단이 운영될 경우, 재원은 기관의 사업비로 이는 국가나 지자체 등 정부지원금으로 마련되어질 것임. 정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기관 차원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모금을 할 수도 있음. 다른 장애인관련 단체와 연합형태로 운영되는 연합형의 경우, 모금이 주축을 이루고 필요에 따라 회원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직접운영하거나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자치형의 경우 회원회비가 주축을 이루며 필요에 따라 모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자조집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발달장애인들이 만날 수 있는 일본의 청년학급과 같은 매개공간이 모색되어야 함. 이러한 매개공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사와 학생, 종사자와 이용자라는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음. 둘째, 조력자를 위한 전문 조력자 과정의 개설, 조력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자조집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고려되어야 함. 셋째, 자조집단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발달장애인 맞춤형 정보 제공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넷째, 발달장애인의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홍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성관계의 의미와 실제

최복천, 김유리, 조윤경, 백정연

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가족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들도 그들 나름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냄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부여하는 이성교제의 의미와 그들의 경험을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성교육 등 관련 문헌조사, 이성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심층 인터뷰, 자녀가 이성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FGI, 발달장애인 이성관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깊은 종사자(사회복지사, 특수교사)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첫째, 발달장애인 이성관계의 경험은 만남의 기회, 이성친구의 선택의 기준, 애정 표현, 데이트, 애정표현 방식에서 발달장애라는 특수한 경험이 작용하고 있었고 주변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이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발달장애인은 이성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 보호, 지지, 책임감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들을 구성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를 지원하고,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이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가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발달장애인의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이성교제에 대해 거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연령이 높은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편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그 동안 이성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주로 가족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러한 의존성과 종속성은 이들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사회에서 성담론이 증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이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보수적 유교관념과 장애인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으로 활발히 수행되지 못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도 그들 나름의 이성관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부여하는 이성교제의 의미와 그들의 경험을 고찰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이성관계에 대한 의미와 실재를 분석하는 것임. 개인들이 이성관계에서 어떤 경험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표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찾으려는 양적 방법론 보다 대상의 의미와 본질에 접근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함(Berg, 1998: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총 6명의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함.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를 보조 정보제공자로서 선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보조 정보제공자인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이성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음

2) 연구절차

- 공동연구진은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이들과 비슷한 기능 수준에 있는 발달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pilot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질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질문하는 방법과 용어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었음
- 파일럿 인터뷰 경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이성관계의 의미와 실제로 양분되는 적절한 하위 질문으로 구성되는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음

3) 자료분석

- 인터뷰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take(1995)가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으로 소개한 범주합산 혹은 직접해석방법(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을 사용하였음.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을 사용하여 의미단위를 추출하였음. 더불어 동료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독단을 방지했고 이들로부터 연구의 방향에 귀중한 조언을 받았음

4) 반성적 회고

- 질적 방법론에서는 인터뷰의 대부분은 피면담자가 채워가도록 면담자가 유도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진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담자가 조력자로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사이의 대화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발달장애인은 진실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로서 간주되지 못해왔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진술을 ‘참’과 ‘거짓’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정보제공자는 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정보제공자를 둘러싼 사회적 실재를 제대로 재현(representation)하고자 했음
-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기법과 관련한 방법론적 성찰을 시도했음. 인터뷰 시 발달장애인이 기억 회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질문을 이끌어 갔음. 또한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

하도록 했고 면접대상자가 힘들어 할 때면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을 두어 당사자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했음. 더 나아가 연구자는 평소에 말하는 속도보다 말의 속도를 훨씬 늦추어서 면접 대상자의 이해를 도왔음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 발달장애인의 성(Sexuality)을 둘러싼 관점
 - 성(Sexuality)은 계속되는 논쟁의 영역이며, 발달장애인의 성은 그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19세기 우생학 운동(Eugenics Movement)은 발달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며, 결혼과 부모가 갖는 법적 책임감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녀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강화시킴.
 - 1970년대에 Wolfenceberger의 정상화 운동(normalization movement)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주장함
-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 최근 UN,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에 관심을 보이며 그들이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2002년 세계 성 건강 연합(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이 발표한 성 권리 선언문에 따르면 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한 부분으로 성의 발달은 다른 사람과의 애정, 감정표현, 사랑과 같은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함. 또한 성적 권리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 존엄,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적 권리임을 명시함
 - UN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권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제 23조 「가정과 가족을 위한 존중」에서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배우자의 동의하에 결혼을 하고 가

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 발달장애인의 주변에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족, 교사, 복지사 등이 지니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성 관련 의사결정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임신, 강간, 성폭력 등 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성교제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수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그들이 발달장애인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몇몇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적표현,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제공되는 성 관련 정보와 성교육은 제한적임
 - 2013년 현재까지 발표된 성교육 관련 문헌은 국내논문 총 4편, 국외논문 총 18편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성교육 관련 논문은 소수임
 - 또한 국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성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고 연구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반에 2편, 2010년 이후 2편으로 성교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 총 22편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몸의 주인의식, 신체 발달, 위생, 임신과 출산, 성학대 예방, 이성관계라는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해외사례

- 미국은 Real Education for Healthy Youth Act(2013)에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청소년과 대학생 을 위한 종합 성교육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강조함. 또한 교육기관(유치원-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교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다양한 성 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함
- 영국의 Brighton & Hove시 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성관련 정책을 보면, 모든 장애인은 관계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성적 표현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 아일랜드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과정평가원(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에서 건강 교육 프로그램(Social and Personal Health Education)을 통해 관계와 성교육 정책(Relationship and Sexuality Education: RSH)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호주의 빅토리아 주는 성에 대한 표현, 성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을 위한 관계와 성, 성 건강에 관한 정책과 가이드를 개발함

Ⅲ. 연구결과

1.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경험

-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동안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졸업 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업 및 일상생활 프로그램,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하루 일과를 보냄으로 대부분의 이성관계는 그 안에서 형성됨
- 발달장애인은 호감이 가는 이성친구에게 다가가는데 상대방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외모에 주로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선택 하는데 있어 외모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기준은 상대방의 장애로

서로의 동질감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는 한 명이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한 후 발전하는데 '사귀자'와 같은 직설적인 언어 표현을 통한 고백이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남
- 발달장애인은 전화로 데이트 약속을 정한 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면서 이성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줌. 일상적인 데이트와 함께 발달장애인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기념일을 챙기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함을 발전시켜 나감.
- 발달장애인의 애정표현은 '사랑해', '좋아해'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손잡기', '뽀뽀하기', '안기' 등 다양한 신체적 접촉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성과의 만남에서 신체적 표현의 허용 범위를 나름대로 규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임
- 가족이 이성친구와의 만남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와 데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가족과 자연스럽게 상의하고 상담 받는 모습을 보임
-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로부터 데이트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부모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특별히 토로하지는 않음. 하지만 부모가 이성친구와의 데이트에 함께 참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도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의미

-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사귀에 대해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함
- 이성친구와 사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기술과 선택기술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기도 함
- 발달장애인은 이성친구에게 배려받기 원하고 상대방이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을 표현할 때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애정표현을 기대하는 마음이 두드러짐

- 발달장애인이 이성관계를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충실함으로 언급됨. 다시 말해서, 다른 이성에게 결눈질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드러냄. 이와 함께 그들은 책임감을 관계 유지에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감은 남녀가 행해야 하는 성 역할로 규정하는 모습을 나타냄

3.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지원

-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장애인이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듯 발달장애인이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도 발달의 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음. 그러나 부모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냄
- 부모들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 배우자의 장애여부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였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냄
- 발달장애인의 이성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즉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면 그들의 성과 이성관계에 대해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수교사, 복지사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나 장애인 관련 기관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표현, 성적 행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지원하는데 있어 자신들이 조력자,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음을 언급함

IV. 결론 및 제언

- 발달장애인은 주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이성친구를 만나는 데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수는 제한적이며 비슷한 또래의 장애인인 경

우가 많음. 이에 다양한 만남의 기회 제공을 위한 여러 유형의 모임과 활동을 조직하고 구성해줄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이성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없다 하더라도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연인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은 그들의 친밀함을 더해 가는데 중요하며 그러한 사생활의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복감,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향상되기도 함.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소통 기술, 자기결정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함. 이러한 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무조건 금지하고 제한하기보다 인정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발달장애인의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이성교제에 대해 거부적인 모습을 보임.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연령이 높은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부모는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과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이 또 다른 양육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모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가정을 꾸리게 될 경우 그들의 독립적인 가정생활과 부모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실제적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이 올바른 성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와 상담하고자 할 때 그들이 상담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태도 변화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와 기관의 실제적인 지침의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실제적인

-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인식개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 발달 및 이성교제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모임과 활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성교제가 결혼, 자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셋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뿐만 아니라 부모, 특수교사, 복지사들에게 성관련 이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넷째, 부모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실제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발달장애인 이성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Ⅲ. 장애아동 및 가족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이복실, 박주영, 이윤희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 부담과 어려움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외에 전국 16개 시도의 22개 기관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486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주돌봄자인 어머니,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베이 결과, 성인 발달장애인 주돌봄자는 대부분 부모이며(89.7%), 수급대상 아님(77.7%)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주돌봄자가 인식하는 가족부담 및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비장애자녀에 대한 미안함, 사회적 편견, 주돌봄자의 건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주돌봄자가 장애에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자녀 돌봄, 생활비, 건강, 주거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장애자녀를 키우면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어려운 상황의 대처능력, 가족 결속력, 장애관련 지식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교육, 정서, 사회, 의료건강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적 지원, 의료건강지원, 사회적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적조사 결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지원 시스템과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총괄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었다. 또한 초점집단면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엇보다 현재의 돌봄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말과 응급상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도화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어머니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돌봄참여 및 부부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요청되었고, 성인기 자녀에 과업인 자기결정, 자립, 지역사회 활동 등을 부모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대한 교육이 제공될 것을 중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방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가족지원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욕구를 구분하지 않고 연장선상에서 시행될 것과 가능한 가족지원은 사전 예방에 원칙에 기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 영역, 심리정서 영역, 의료건강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족은 가장 중요한 1차적 환경으로 가족 구성원은 내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음.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에 걸쳐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음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식적 서비스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돌봄이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상당함
- 가족지원은 통합적 포괄적 관점에서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 가족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시함.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부담과 어려움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과 내용

- 문헌조사
 -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의 국내외 제공서비스 현황 파악. 특히 지원정책 및 가족지원 관련 법률과 서비스 현황을 제시함
- 설문조사
 - 조사대상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주돌봄자임. 전국 16개 시도의 22개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성인발달장애인 주돌봄자의 일반사항, 가족부담 및 어려움,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개선방안 등을 조사함
- 초점집단면담
 - 성인 발달장애인 주돌봄자인 어머니 5명,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5명 총 10명 대상으로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부담 및 서비스 욕구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Ⅱ.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현황

1. 국내

1) 발달장애인인구 실태

- 2012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에 따른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183,336명임. 이 중 지적장애인 167,479명(91.4%), 자폐성장애인 15,857명(8.6%)을 차지함
- 연령별 발달장애인 0~9세 11,677명, 10~19세 45,406명, 20~29세 39,988명, 30~39세 31,902명, 40~49세 26,330명, 50~59세 18,115명, 60세 이상 9,917명으로 전체 등록 발달장애인 중 20대 21.8%, 30대 17.4%, 40대 이상은 29.7%로 나타남

2)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 돌봄사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등록 1, 2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상으로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티케어 보조, 이동 보조를 함
 - 민간의 돌봄사업 중 장애인 부모와 가족 대상으로 일시적인 대체 돌봄 서비스와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경우 재가방문 일시보호, 외출지원, 온라인상담시, 기관정보 제공, 주·단기 보호센터 기관연계, 가족여가·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욕구과약, 서비스 연속성 보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가족기능의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일환으로 실시되는 부모교육사업은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 부모역할 및 관계증진, 진학(진로), 정신건강, 성교육, 장애인 복지정책 등이 주요 내용임. 장애인복지관의 돌봄서비스는 양육지원사업, 교육사업, 가사지원, 여가·문화지원, 보건위생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이 포함됨
- 사회·정서적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터 시행.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지원, 지원규모는 총 2천명, 국비 1,279백만원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가족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상담, 가족집단상담 등을 실시함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 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사례관리, 위기가정 집중 심리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가족 역량강화와 휴식제공을 위한 가족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장애인부모단체를 통한 활동 참여 및 자조집단 지원은 유용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지지체계 구축의 역할을 함. 장애인 관련 법률 무료·전문 상담 지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과 자기권리옹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권리옹호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음

2. 국외

1) 미국

○ 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지원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비스 계획수립, 정책개발, 시행, 평가에 있어 가족이 주도권을 갖도록 배려, 가족지원 서비스의 가용성, 자금확보, 접근성 및 제공을 증대함
- 「랜터만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주정부/지역센터/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정책협의 및 감시기구 설치·운영 절차, 지역센터와 서비스제공자들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절차, 서비스와 지원들의 종류와 제공절차와 원칙, IPP(개별화지원계획)의 작성 및 절차,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제시함

○ 지원체계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발달장애인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에서 '건강 및 인간서비스 기관(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가짐. 발달장애인 서비스 부서는 아동 및 성인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발달장

애인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주의 58개 카운티(County)를 총 21개소 지역센터가 분류하여 지원함(2012. 7월 기준)

2) 영국

○ 지원서비스

- 장애생계수당(DLA)은 1992년에 도입된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임.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며, 장애인 요양수당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임
- 보호자수당은 16세 이상의 장애인이나 지속적인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자산조사 없이 주급이나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2명까지 보호자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3) 호주

○ 지원서비스

- PASS 프로그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외 장애, 만성 및 중증질환, 섭식장애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개인(0-25세)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운슬링 및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임
- 주택임대지원 프로그램은 사적임대주택(private rental costs)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호주의 전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4) 일본

○ 법률 및 지원 체계

- 「발달장애자지원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제정되었음
- 「지적장애자복지법」은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용 절차

를 자세히 안내함. 발달장애인 당사자대상 취업지원, 지역에서의 생활지원, 권리옹호,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음

- 광역시장에 의해 지정·운영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임, 발달장애인 가족의 직접 지원서비스로 일상생활 상담, 기관 연계, 주변관계 정비 등을 제공함. 지원자에게는 장애인 대응방안, 소통, 과제정리 방안 등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함

Ⅲ.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실태분석

1. 조사개요

○ 서베이 조사

- 조사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돌봄자 대상으로 실시
- 수도권 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주간보호센터 각 1개소 등 전국 16개 시도 총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조사기간 및 방법 : 2013. 5. 1. ~ 5. 31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됨. 최종 486부 분석함
- 조사내용 : 주돌봄자의 일반사항(가족,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및 어려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서비스 개선방안 제안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됨

○ 초점집단면담(F.G.I.)

- 조사대상 : 성인발달장애인 어머니 5명, 제공기관 실무자 5명 총 10명
- 조사내용 :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및 욕구 파악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2시간씩 실시, 녹취내용 토대로 내용분석

2. 양적조사 결과

○ 주돌봄자 일반사항

- 성별 및 연령은 여성 405명(85.6%), 남성 68명(14.4%)으로 나타남. 50대 234명(50.9%), 40대 124명(27.0%), 60대이상 73명(15.9%), 30대 29명(6.3%) 순으로 나

- 타남. 학력은 대졸이하 212명(45.4%), 고졸이하 179명(38.3%), 중졸이하 55명(11.8%), 대학원이상 21명(4.5%)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는 부모 434명(89.7%), 형제자매 19명(3.9%), 기타 12명(2.5%), 친인척 10명(2.1%), 조부모 9명(1.9%) 순으로 나타남
 - 직업유무 및 유형의 경우, '직업 있음' 234명(49.3%), '직업 없음' 241명(50.7%)으로 나타남. 직업유형은 전일제 94명(50.3%), 비상근 61명(32.6%), 기타 34명(18.1%) 순으로 나타남
 - 수급자 여부는 수급대상아님 331명(77.7%), 일반수급가구 61명(14.3%), 조건부수급가구 25명(5.9%), 의료교육자활특례 9명(2.1%) 순으로 나타남
- 주돌봄자가 인식하는 가족부담 및 어려움
- 주돌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중복응답)은 경제적 부담 213명(22.8%), 주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 184명(19.7%), 비장애자녀에 대한 미안함 149명(16.0%), 사회적 편견(이해부족) 127명(13.6%), 주돌봄자의 건강문제 122명(13.1%), 주돌봄자의 직업(사회)문제 83명(8.9%), 부부갈등문제 43명(4.6%), 기타 13명(1.4%) 순으로 나타남
 - 주돌봄자의 장래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자녀돌봄 210명(44.6%), 생활비 123명(26.1%), 건강 105명(22.3%), 주거 21명(4.5%), 기타 12명(2.5%) 순으로 나타남
 -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209명(44.9%),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136명(29.2%), 가족의 결속력 78명(16.8%), 장애 관련 지식과 전문성 31명(6.7%), 기타 11명(2.4%)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 교육적 지원 필요도는 발달장애인 자립향상 교육(M=3.56), 발달장애인자녀 자기결정 교육 (M=3.45), 부모역량강화 교육(M=3.40), 장애관련 법률지식 교육 (M=3.34)의 순으로 나타남
 - 정서적 지원 필요도는 가족문화·여가생활 지원(M=3.36), 가족휴식 지원 (M=3.34), 가족스트레스·감정다스리기(M=3.28), 심리상담(M=3.12), 가족갈등조정 및 해결(M=3.05)의 순으로 나타남
 - 의료·건강 지원 필요도는 주돌봄자 건강검진(M=3.39)이 가장 높았고, 주돌봄자 마음건강 상담(M=3.37)과 신체건강 상담(M=3.37)이 같은 수준의 필요도를 나타냄

- 사회적 지원 필요도는 노후설계지원(M=3.67), 장애에 대한 인식 바꾸기(M=3.61), 기관 및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M=3.56), 기관 간 서비스 연계(M=3.52), 부모조직화(M=3.30)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 필요도는 장애인연금(M=3.76), 세금감면(M=3.75), 생활요금감면(M=3.75), 장애수당(M=3.74), 주택지원(M=3.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5개 영역 중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 332명(36.0%), 의료·건강 지원 207명(22.4%), 사회적 지원 196명(21.2%), 정서적 지원 102(11.1%), 교육적 지원 86명 9.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비스 개선방안 제안
-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국가나 사회가 지원할 사항
 - : 부모사후지원 197명(21.2%), 소득보장지원 188명(20.2%), 의료·건강지원 133명(14.3%), 장애자녀 평생교육 132명(14.2%), 생활/주거시설 다양화 120명(12.9%), 성년후견지원 79명(8.5%), 권리보장지원 27명(2.9%), 기타 2명(0.2%) 등으로 제시됨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제안사항
 - : 주거시설 다양화 및 확대, 주간보호, 관련센터 등 시설확충 필요, 단기그룹홈 체험(가족과 분리경험), 의료보장, 장애연금 대폭인상, 무기여 연금 지급, 안정된 직업제공, 여가활동을 위해 휴양지 할인혜택, 평생교육 시설 확충 및 연계, 성인기가 되어도 아동기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생명, 상해보험 가입확대방안 마련, 부모사후 생활지원 방안 마련 등.

3. 질적조사 결과

1) 보호자 면담 결과

<표 1> 보호자 면담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가족이 경험하는 부담 및 어려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니 이성문제가 가장 신경 쓰임 - 성장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격이 변함, 신체 변화와 폭력성이 생겨남
	제도권 서비스 종료에 직면하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 성인기가 되면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야 함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한테 이해를 못 받아요. 계속 나눔이 줄어감 - 애가 난리를 치면 오히려 더 화를 냄
서비스 제공 관련 욕구	부모의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남 - 노후생활을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건강이 중요함 - 내가 아프거나 기력이 다하면 어떡할지가 고민
	심리적 정서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줄 수 있는 교육 -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상태가 다 환자임 - 어딘가에 쏟아내고 싶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함
	엄마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으로 구성원으로 욕구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힐링 됨 - 노후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보내고 싶음
서비스 및 제도 개선방안	일시 돌봄 서비스의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강력한 바람은 급할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있는 것 - 주말, 급할 때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중요함
	성인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가족의 손을 떠나야 함. 가족이 지침 - 지역 내에서 가족과 가까이 있으면 시설이여도 상관없음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게는 너무도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자질을 높여주어야 함

2) 서비스제공자 면담 결과

<표 2> 서비스제공자 면담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가족이 경험하는 부담 및 어려움	제도권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찾아야 함	- 제도권 보호를 벗어나면 성인기에는 알아서 해야 함 - 본인이 뭔가를 해야 함. 정보도 진로도 설계도 모두 - 정보력이 부족한 부모님들은 그냥 끼고 살아야 함
	부모의 노화와 사후 문제	- 연세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사후문제 고민함 - 사후대책소리만 들어도 가슴에 돌이 없어짐. 답이 없음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시급	-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단기보호, 단기돌봄이 필요함 - 부모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하기, 일시보호 서비스 - 분리를 원함, 복지관은 낮 시간이 보장되므로 선호함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직업생활준비 프로그램	- 성인기로 가면 가장 많이 요청되는 프로그램에 해당됨 -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가족을 위한 것임
	성인 자녀 특성 고려한 교육	- 반복적인 부모교육 아닌 성인자녀 성문제 위한 교육 필요 - 성인자녀의 선택과 자기결정 위한 교육
	부모님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 부모님을 위한 소자본 창업 교육 -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바로 씬 - 부부갈등을 위한 상담이나 전문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제도 개선방안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서비스	- 돌봄, 주거, 진로 등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기능요구 - 정보를 제공받아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미흡 -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총괄 네트워크 체계 필요함
	일시돌봄서비스 욕구 가장 큼	-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씬이 요구됨 - 기본적으로 자녀가 갈 데가, 보낼 데가 있으면 좋겠다.
	가족지원 평가시스템과 전달체계 마련	- 가족평가를 통해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계획수립하기 -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공급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지원시스템과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총괄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 초점집단면담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재검토하고 주말과 응급상황 시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한 제도화를 강조함
- 주요 돌봄자인 어머니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돌봄 참여 및 부부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적극 모색되어야 함

-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기인 자녀가 달성해야 할 과업인 자기결정, 자립,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IV.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1. 기본원칙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가족지원은 일상 내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
-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욕구를 구분하지 않고 연장선상에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
- 가족지원의 방향은 가족의 기능강화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원칙에 기반하여야 함

2.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

1) 교육 영역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성인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문제, 대인관계, 미래계획,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심리·정서 영역

-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위한 쉼 및 일시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부부 갈등 및 돌봄 부담 경감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도 필요함
- 장단기 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 및 현행 제공되는 제도의 효과적인 질관리가 요구됨

3) 의료 · 건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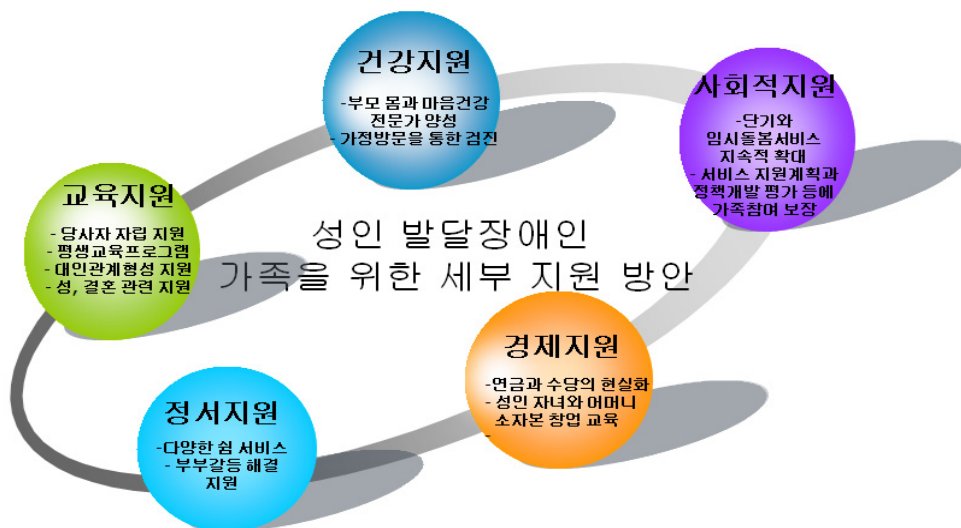
-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돌봄자 특히 어머니의 몸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가 양성
성이 시급함
- 가정방문을 통한 주 돌봄자의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사회적 영역

-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시행 평가 등에 가족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함
-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의 노후설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부모의 사후준비이자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통합을 위한 차
원에서 거주시설 스펙트럼의 다양화가 요구됨

5) 경제 영역

-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요구됨
- 자녀의 취업기회를 보장, 어머니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자본 창업 등
이 검토되어야 함



[그림 1]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영역별 지원 도식화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가족은 가족 내 상호관계와 생태학적인 맥락에서 이해되므로, 가족구성원들 중 한명인 자녀가 장애를 지녔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가족 전체의 구조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본 연구결과,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준비 부족이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성인기의 과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인 발달장애인의 가족복지서비스는 당사자 지원이라는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돌봄자인 부모의 노후 및 사후를 대비한 지원체계가 제시되어야 함
- 서비스 욕구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영역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가족이 어떻게 지원할지가, 심리정서영역은 가족의 여가 및 휴식지원서비스가, 의료건강영역은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사회지원영역은 노후설계가 그리고 경제영역은 연금이나 수당 및 각종 감면에 대해 실질적인 인상이 요청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 제언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기능 재검토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단기 또는 일시돌봄서비스 욕구를 강력히 표출함. 따라서 현재 돌봄서비스 기능의 재정립과 더불어 단기보호시설이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재조직되어야 함
 - 주간보호서비스 야간 이용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 제시
- 서비스 신설 및 총량 확대
 - 성인기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적용

- 평생교육과 평생지원 차원에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자립, 선택과 결정, 지역사회 참여 등)
- 성인발달장애인 부모의 특성 고려한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 당사자와 가족육구 기반한 포괄적 사정 및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 관련 포괄적 사정 및 정보제공
 - 가족지원 서비스 총량의 확대와 연동한 기관연계
 - 세부영역별(교육, 심리·정서, 의료·건강, 사회, 경제영역) 지원방안 다각화

정책제안 및 반영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의 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성인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단기 또는 일시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현재 돌봄서비스 기능의 재정립과 더불어 단기보호시설이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둘째, 서비스 신설 및 서비스 총량의 확대되어야 함. 현재 아동기 이후 미흡한 성인기까지의 발달 재활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및 평생교육과 평생지원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부합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인 자립, 직업,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의 제도권 서비스에 대한 신설되어야 함. 특히 주돌봄자인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 서비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셋째, 당사자와 가족육구에 부합한 포괄적 사정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개인적 특성과 가족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정 및 이에 기초한 정보가 정보되어야 하며 세부영역별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최복천, 이명희, 임수경, 조혜희

요약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중복으로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뇌병변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가족들은 장애와 관련한 일상적인 돌봄의 부담, 재활 및 교육의 부담, 양육비용 등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과 가족의 어려움과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 22세 미만의 중증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52명이 연구대상에 최종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외에도 부모,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발견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시설 및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교육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주 돌봄자인 어머니들은 평일 및 주말 평균 14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고 있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돌봄 지원 서비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료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다섯째, 재활치료 이용에 대해 서비스 이용기간의 제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조기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는 서비스 조정자의 배치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보호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 돌봄인력 양성,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수당 지급확대, 의료비지원 대상범위 확대, 무상·의무교육 지원범위 확대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선정과 함께 지원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 외에 다양한 어려움을 중복으로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뇌병변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특히 신체적 기능이 미숙한 유아기의 뇌병변 장애의 발생은 장애로 인한 발달의 지연뿐만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은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가족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일상적 돌봄 행위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박은혜 외, 2010; 이명희 외 2012).
-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과 가족의 실태를 분석하여, 다양한 지원 욕구에 기초한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뇌성마비의 개념과 특성, 뇌성마비 장애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 국내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 지원정책의 문제를 짚어봄.
- 설문조사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 및 실태파악을 위해 뇌병변 장애 1급~2급(중복장애 포함)의 장애아동 부모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초점집단인터뷰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 국내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 전문가 및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3회기 동안 실시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1. 뇌성마비의 개념 및 특성

-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운동, 자세 및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의해 근육마비, 근육 약화, 협응성 장애, 기타 운동장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뇌성마비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달장애’라고도 하며, 외적 운동기능 손상을 동반하므로 영유아기 초기에 발달을 평가하여 가장 먼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발달장애 중의 하나임
-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중이나 출생 후 몇 년 내에 일어나는 뇌손상에 의해 생기는데, 크게 뇌의 비정상적 발달(발달성 기형)과 뇌 발달과정 중 일어나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나누어짐.
- 뇌성마비 아동은 운동장애 이외에도 발달 및 학습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 긴장이나 불수의 운동에 관련된 뇌손상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이러한 영향은 의료적 관심과 치료, 학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함

2. 뇌성마비 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

- 뇌성마비 아동은 신체적인 기능상실로 인한 문제와 사회로부터의 차별이나 편견에 의한 심리적인 부적응, 사회참여 기회의 불균등 부여 등 심리적·사회적인 문제 등을 지니게 됨(양경희, 2001). 이러한 문제들은 뇌성마비 아동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통합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든다. 뇌성마비 아동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 아동들보다 훨씬 더 빨리 공식적인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김세주 외, 2005).
- 중증 뇌성마비 아동은 이들의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는 가족의 양육부담으로 나타나는데,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일상생활 수행능력, 돌봄지원 여부, 돌봄시간 등이 있음(백은령·이명희·유영준·최복천·김기룡, 2010; 이명희·유영준·백은령·최복천, 2011). 즉, 같은 장애유형 안에서도

아동의 다루기 힘든정도나 의존정도 등이 양육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이지수, 2008), 중증·중복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은 일반 자녀나 경증장애 자녀의 양육과는 다른 많은 문제를 갖게 됨

3. 국내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현황

1) 뇌병변 장애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자료를 기초로 뇌병변 장애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등록 장애인은 현재 2백5십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0~17세 장애아동의 수는 78,186명으로 전체등록 장애인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은 10.3%(260,718명)이며, 전체 장애아동 중 뇌병변 장애아동은 16.8%(13,099명)로 나타났음

2)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관련 정책 현황 및 내용

- 우리나라는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각종 세제상 감면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양육·돌봄영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의 돌봄 지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거주 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사업,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영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장애영아 교육지원, 치료지원, 통합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재활치료영역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적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Ⅲ.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은 만 22세 미만(전공과 포함)의 중증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였음. 서울·경기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특수학교의 협조를 얻어 비확률 할당표집을 하였음
- 회수된 설문지는 352부(80.1%)로 이중 설문 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 24부를 제외 한 총 328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설문지는 7개 영역(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장애아동의 일반적 사항, 돌봄 및 양육, 경제적 어려움, 건강 및 의료, 재활치료, 보육 및 교육)으로 구성하였음

2.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결과

- 장애진단 및 조기교육
 - 장애발견에서부터 진단까지 평균 12.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장애를 발견하고 진단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1년 이하가 71.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장애진단 후 재활치료와 조기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받은 경우는 60.6%로 드러났으며, 39.4%는 여전히 적절한 조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 및 양육
 - 주 돌봄자의 84.1%는 어머니, 4.6%는 아버지로 여전히 장애아동의 주돌봄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장애자녀의 돌봄 시간은 평일 평균 14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을 돌보는 과정 중 신변처리와 이동하기 영역에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육부담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이 높게 나타났음
 - 주간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대해 16.7%만이 이용경험이 있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동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으로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
 - 뇌병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특수교육과 재활치료비가 월

평균 328,434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월 평균 974,524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었음. 보조기구의 경우 1년 동안 자세유지보조기구 553,264원, 특수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구 498,494원이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고 있었고,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연 평균 1,314,936원을 소요하고 있었음

- 특히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95%의 응답자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보조기구 지원급여 비용의 인상', '지원품목의 확대', '개인에게 맞는 보조기구의 상담 및 안내'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 또한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기저귀, 영양식과 같은 일상생활용품 구입하는데 월 평균 188,536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아동에게 맞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고, 구입 가능한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어 구매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 건강 및 의료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64%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세유지관리, 흡인(가래 빨아내기), 통증관리 등의 의료적 처치를 일상적으로 해주어야 해서 돌봄의 강도가 매우 높았음. 수술 경험 역시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 까지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수술비용 역시 1회 최소 284만원에서 최대 1,112만원까지 소요되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재활치료

- 중증 뇌병변 장애자녀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대부분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활치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등록 후 평균 7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재활치료 이용 시 매월 14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활치료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시간의 부족, 긴 대기기간,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IV.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결과

1. 조사개요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양상과 지원욕

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음

- 집단인터뷰는 뇌병변 장애아동 부모 2집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약 6주에 걸쳐 이루어졌음

2. 조사결과

- 경제적 어려움
 -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컸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었음.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치료비, 교육비, 의료비, 보조기기 등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음
- 돌봄 및 양육의 어려움
 - 자녀의 중증, 중복적 장애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뇌병변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돌봄의 고충을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겪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인 소진뿐만 아니라 극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휴식지원서비스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보장기구 지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기구 지원은 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이고, 지원 품목도 매우 한정적이며,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성장기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뇌병변 장애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근거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적절한 보조기구가 지원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 두 명 이상의 뇌성마비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취약가정의 경우 서비스 지원의 부족, 장애등급에 의한 선별적 지원,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기피 현상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중복·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주단기보호시설의 확충,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활치료 지원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이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치료시설이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만 맞추어져 있어 뇌병변 장애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특성 상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바우처)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표출됨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뇌병변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은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중복장애가 많을 뿐 아니라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증 장애아동의 검사 및 진단, 의료처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장애발견 초기단계부터 전생애에 걸쳐 의료, 교육, 보육,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뇌병변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팀에 의한 다면적 평가와 지원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였음.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문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음

V. 결론 및 제언

-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서비스조정자의 배치가 필요하며,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
 -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보호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돌봄 인력 양성,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비, 보장구 구입 및 교체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 이에 장애아동 수당지급 확대, 의료비지원 대상 범위 확대, 무상·의무교육 지원 범위 확대 등과 같은 실제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활 및 의료적 지원 강화
 - 치료기관이 부족할 뿐 아니라 치료대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장애아동에게만 맞추어져 있어 의료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을 성인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
 - 뇌병변 장애아동의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품목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조기구 대여 및 임대사업 지원체계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은 첫째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는 서비스 조정자가 필요하며,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보호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 돌봄 인력양성,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셋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아동 수당 확대, 의료비지원 대상범위 확대, 무상·의무교육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치료바우처 제공이 필요하며, 전생애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바우처 제공의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품목을 확대가 필요하며, 보조기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조기구 대여 및 임대사업 지원체계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최복천, 김유리, 장화정, 김경희, 임수경

요약

장애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국내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 및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장애아동의 학대 현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아동 학대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입과 학대예방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2012년까지 3년 동안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국가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학대 실태를 분석하였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장 전문가 총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대 피해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장애아동의 경우도 초등학교에 가장 학대의 위험이 높았고, 학대 장소는 대부분 아동의 집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대 피해 아동의 가구 특성을 보면, 한부모 가정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은 월 평균 100만원 이하가 51.6%를 차지하였다. 넷째, 장애아동 학대 신고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에서도 교사에 의한 신고는 5.9%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대부분의 치료 서비스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전담 보호시설의 설치 비율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장애전담 보호시설의 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는 장애아동 입소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아동 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아동의 학대 및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학대 가해자로 만들기도 함
- 국외문헌들을 보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대상황에 더 높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3.4배나 더 많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국내연구는 그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 및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장애아동의 학대 현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아동 학대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입과 학대예방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장애와 아동학대의 개념적 고찰, 장애아동 학대특성,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학대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해외의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시스템의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함
- 국내 장애아동 학대 실태 분석
 - 2010년~2012년까지 3년 동안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국가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장애아동 사례를 대상으로, 7개 영역(장애아동 학대현황,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 학대행위자의 특성, 학대신고 및 조사현황, 장애아동 학대사례 조치결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현황, 재학대 신고사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초점집단인터뷰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3개 권역(서울·경기, 충청·호남, 영남)의 현장 전문가 총 9명을 대상으로 3회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 장애와 아동학대의 개념적 고찰

- 아동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모든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 학대행위와 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김유리, 201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

- 장애아동의 약 4%에서 50%까지가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대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도 장애아동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됨을 보고하고 있어 장애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아동 학대의 특성

- 장애아동의 연령과 아동학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마다 장애아동이 학대의 높은 위험성에 놓이는 연령대에 관해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학대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성비율을 검토한 연구들은 대체로 남아가 여아보다 아동학대를 두 배 이상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반대로 성학대의 경우는 여가가 남아보다 약 4배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하여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장애유형과 아동학대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은 특정 장애아동이 다른 장애아동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불이익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장애아동의 가정은 일반아동의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Ottman 외, 2012).

- 학대가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학대는 장애아동의 발달(학업성취, 사회성 발달,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일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음
- 장애아동 학대의 위험요소
 - 장애아동의 학대는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의존성(Dependency), 과잉순응(Overcompliance), 제한된 의사소통 기술, 제한된 사회성 기술, 성지식의 부족을 포함함

2.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 1973년에 통과된 「아동학대예방조치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은 연방정부의 역할, 주 정책에 대한 지침, 아동보호 관련 정책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미국의 학대아동 보호체계는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부서(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지역사회 민간기관(community agencies)들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짐.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는 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부모-아동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아동가족칭(ACF)의 가족 집중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안전프로그램인 Every Child Special-Every Child Safe,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장애아동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Observe, Understand, & Respond이 있음

2) 영국

- 1989년 제정된 「아동법」(The Children Acts)은 1991년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아동보호부터 입양까지 아동보호에 대한 모든 양상을 다루고 있음. 2004년 일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의 학대아동 보호체계는 중앙정부(사회서비스감독관과 아동안전국), 실질적

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사회서비스국, 지역동아동보호국,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팀)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짐.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는 지적장애아동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Ann Craft Trust(ACT)와 장애아동과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하는 베르나드로(Barnardo's UK)가 있음

3) 호주

- 「아동청소년 감독과 보호에 관한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감독과 보호에 관한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호주 아동보호체계의 초석을 마련함
- 호주의 학대아동 보호체계는 연방정부(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주정부(DoCS(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협력체계에 의해 이루어짐.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는 학대 위험성을 가진 장애아동을 위한 주거제공 프로그램인 The Family Options Program, 지적장애아동 부모 대상의 보편적 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The Signposts for Building Better Behaviour Program, 사례관리와 가족집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Referral for Active Intervention Service가 있음

Ⅲ. 장애아동 학대 실태 및 질적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실태조사
 - 2010년~2012년까지 3년 동안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장애아동 사례를 대상으로 7개영역(장애

아동 학대 현황,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 학대행위자의 특성, 학대신고 및 조사현황, 장애아동 학대 사례 조치결과,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현황, 재학대 신고사례)으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보았음

○ 질적조사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장애아동 학대 사례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9명을 대상으로 전국 3개 권역(서울·경기, 충남·호남, 영남)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2. 조사 결과

○ 학대 발생 건수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아동 중 등록 장애아동이 0.8%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로 장애아동의 아동학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줌
- 장애아동의 학대 발생 건수를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아동학대는 장애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복학대는 그 후유증이 더 복잡적이고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대 유형

- 장애아동의 중복학대 건수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방임으로 드러남.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의 특성 상 독립적인 신변처리, 이동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 양육자가 아동의 신체적, 의료적 요구 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일상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방임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물론 전체 등록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도 지적장애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지적장애 아동이 학대에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함. 따라서 지적장애 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됨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성별
 - 여아가 남아보다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성학대를 제외하고 장애남아가 장애여아보다 더 많이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해외연구와는 다른 결과임. 이에 후속연구는 장애아동의 성별과 학대 사이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장애여아의 학대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
 - 비장애아동도 역시 초등학령기(7-12세, 52.4%)에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안동현 외, 2003)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의 경우도 초등학령기(7세-12세)에 가장 학대의 위험이 높고 취학 전과 고등학교 시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정상분포 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모든 연령대의 장애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함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가족유형
 - 한부모 가정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은 월 평균 100만원 이하가 51.6%를 차지하여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장애아동이 아동학대에 취약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의 가정을 위한 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학대 장소
 -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그들의 집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장애특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학대 신고자
 - 장애아동 학대 신고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에서도 교사에 의한 신고는 5.9%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임을 고려할 때 교사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고의무와 절차 조항(아동복지법 제25조)에 신고의무자들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시수, 교육 후 이수 현황보고, 신고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모호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현황
 -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대부분의 치료 서비스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함. 이에 장애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학대 신고건수
 - 장애아동의 재학대 신고건수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재학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한정적임을 지적함. 이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제를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IV. 결론 및 제언

-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즉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서비스 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함. 장애아동의 경우 분리보호가 결정되어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소수여서 대부분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 따라서 장애전담 보호시설의 설치 비율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장애전담 보호시설의 수를 확보하여야 함.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아동 입소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고 모든 시설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입소시설이 없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아동 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행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사례처럼 수석상담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아

- 동 학대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이 일반 상담원에게 자문과 훈련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의 학대 및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함. 특히 학대력을 지닌 부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임
 - 아동의 안전보다 부모의 친권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는 아동학대 예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누구에게나 그 정보가 개방되어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데 제한이 따름. 이에 격리 보호된 아동의 모든 정보가 비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 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은 첫째,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서비스 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둘째, 장애전담 보호시설의 설치 비율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장애전담 보호시설의 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입소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여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장애아동의 학대 및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대력이 있는 부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임

넷째,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석상담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아동 학대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이 일반 상담원에게 자문과 훈련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김정희, 박주영, 조윤경, 심창호, 이의정

요약

발달재활서비스는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8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는 기존명칭이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013년 5월 현재 1,448개소로 2009년 546개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공기관의 절차, 지정기관 운영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시행령 부재로 인해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지역과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심지어는 서비스 단가를 책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실정므로, 이용자 및 제공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발달재활서비스 단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치료유형별 제공인력의 최저자격기준 수립, 서비스 적정단가 책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을 대상으로(제공기관 1,156개소, 발급기관 663개소) 제공인력 및 자격증 발급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리운동, 행동, 언어, 음악, 미술, 재활심리, 놀이분야의 학회 및 협회를 선정하여 3차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한 후 2개의 자격기준(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현행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인력 부분의 내용을 유지하되 교육 및 현장실습시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고, 2안은 교과목 중심으로 진행하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의 신규진입을 금지하고 5년의 유예기간 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 개편과 관련해서는 가격 현황 파악을 위해 2013. 2.~2013. 7. 사이에 적용된 서비스유형별 평균가격으로 집계하였고, 이를 서비스유형별·입지별·제공기관 유형별로 파악한 결과 평균 회당 서비스가격이 기관방문형 32,615원, 재가방문형 43,972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증평가 실시, 발달재활서비스 내용의 구체화와 일원화,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달체계상 연동가능성, [(가칭)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위원회]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 등에 관해 제안하였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발달재활서비스는 2012년 8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동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013년 5월 현재 1,448개소로 2009년 546개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공기관의 절차, 지정기관 운영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시행령 부재로 인해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 이용자 및 제공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발달재활서비스 단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치료유형별 제공인력의 최저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 적정단가 책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발달재활서비스의 이해

1.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어야 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기준).
-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체계,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 636개 제공기관이 지정되었고, 2013년 현재 1,448개소(보건복지부, 2013. 6)로 5년 동안 2배 정도로 증가하였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국가 자격증 소지자에서부터 치료관련학과 전공자, 민간자격증 소지자까지 폭 넓게 제시되어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내용 결정이 모두 이용자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대상자 선정을 신청하고, 자격이 결정되면 카드를 지급받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면 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쟁점

-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자격 등에 관한 일원화 검토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관련 구체화와 일원화의 필요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평가 실시의 필요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강화의 필요성
- 서비스 결정과 시행 전달체계의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

Ⅲ. 발달재활서비스 현황 파악

1. 조사개요

- 전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트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증 발급기관은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함
- 제공기관은 1,448개 기관 중 1,156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9.8%의 회수율을 나타냈고, 자격증 발급기관은 166개 기관 중 63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38.0%의 회수율을 나타냄.
- 인터넷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전문업체에서 메일 발송, 수거, 자료 코딩을 실시

하였으며, 기관 사정으로 인터넷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 파일 설문지 이메일 발송 후 이메일로 수거하는 방식도 병행하였음

2.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실태조사

1) 일반사항

-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46개소(30.7%), 경기권(경기, 인천) 268개소(22.8%), 서울권(서울) 208개소(18.4%),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144개소(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권(117개소, 10.4%), 강원권(33개소, 2.9%), 제주권(12개소, 1.1%)은 10% 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큼
- 입지별 분포는 대도시 629개소(56.0%), 중소도시 339개소(30.2%), 농어촌/도농복합도시 155개소(13.8%) 순으로, 중소도시의 1.8배, 농어촌/도농복합도시의 4배 이상의 규모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은 개인사업자 702개소(62.3%), 사회복지법인 146개소(13.0%), 비영리기관 113개소(10.0%), 장애인복지관 86개소(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는 개인운영 720개소(63.9%), 법인운영이 319개소(32.6%)로 나타남
- 설립년도는 2006년~2009년 440개소(39.7%), 2011년 이후 255개소(23.0%), 2000년~2005년 199개소(17.9%), 1990년~1999년 170개소(15.3%) 순으로 나타남
- 제공조직 형태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담당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479개소(42.9%),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 312개소(28.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부서(과, 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관' 226개소(20.3%) 순으로 나타남

2) 발달재활서비스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누적 총 이용자 수는 2012.02~2013.01 기간에는 바우처 521.5명, 비바우처 926.7명으로 비바우처가 많았으며, 2013.02~2013.07 기간에도 바우처 275.2명, 비바우처 477.9명으로 비바우처 누적 이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재활서비스 누적 수입액은 2012.02~2013.01 기간에는 바우처 59,452,118.3원, 비바우처 105,492,761.9원으로 비바우처가 많았으며, 2013.02~2013.07 기간에

도 바우처 31,419,828.9원, 비바우처 55,489,585.5원으로 비바우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재활서비스의 1회 서비스 단가 및 치료인원, 치료사 수는 2012.02~2013.01 기간에는 개인치료의 기관방문은 2,409개소 실시, 1회당 단가는 32,437.6원, 재가방문은 993개소 실시, 1회당 단가는 43,815.0원임. 집단치료의 기관방문은 458개소 실시, 1회당 단가는 36,052.3원, 치료인원은 8.4명, 치료사 수는 1.4명이고, 재가방문은 185개소 실시, 1회당 단가는 45,578.7원, 치료인원 6.0명, 치료사 수는 1.3명이었음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바우처 전담인력, 비바우처 전담인력, 중복담당 인력으로 나누어 살펴봄. 2013.02~2013.07 기간 동안의 바우처 전담인력은 총 22.3명, 비바우처 전담인력은 17.6명, 중복담당 인력은 26.0명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총인원수) 은 바우처 전담인력은 종합사회복지관 47.3명, 대학 46.8명, 장애인단체 42.8명, 영리법인 34.8명 순으로 나타났고, 비바우처 전담인력은 종합사회복지관 33.0명, 대학 26.0명, 장애인복지관 18.9명, 사회복지법인 18.3명 순으로 나타남. 중복인력은 대학 59.1명, 영리법인 46.7명, 종합사회복지관 35.6명, 개인사업자 26.1명 순으로 나타남
- 입지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총인원수)은 바우처 전담인력은 대도시 24.8명, 중소도시 20.9명, 농어촌/도농복합 17.8명 순으로, 비바우처 전담인력은 대도시와 농어촌/도농복합 각각 19.5명, 중소도시 14.1명 순으로 나타났음. 중복인력은 대도시 28.4명, 농어촌/도농복합 23.6명, 중소도시 21.7명 순으로 나타남
- 치료유형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2012.02~2013.01 기간에는 언어치료 20.3명, 심리·운동 15.1명, 행동치료 13.5명, 놀이치료 13.4명, 인지치료 12.7명, 미술치료 12.1명, 음악치료 10.6명 순으로, 2013.02~2013.07 기간에는 언어치료 12.4명, 행동치료 9.1명, 심리·운동 8.7명, 인지치료 7.6명,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7.5명, 음악치료 6.4명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경력 및 급여는 2012.02~2013.01 기간에는 해당치료분야 총 경력은 평균 5.4년, 현 기관 근속기간은 3.0년, 평균 하루 치료횟수는 4.5회, 월 평균 급여는 월급제는 156.9만원, 시간제는 91.7만원임. 2013.02~2013.07 기간에는 해당치료분야 총 경력은 평균 5.6년, 현 기관 근속기

간은 3.1년, 평균 하루 치료횟수는 4.4회, 월 평균 급여는 월급제는 156.3만원, 시간제는 86.6만원으로 나타남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실태조사

1) 기본현황

- 발급기관 기관유형은 비영리기관 31개소(49.5%), 개인사업자 14개소(22.2%), 기타 9개소(14.3%), 영리법인 3개소(4.8%), 대학(사이버포함) 4개소(6.3%), 사회복지법인 2개소(3.2%) 순으로 나타남
- 발급기관 운영주체는 법인운영(부설) 27개소(42.9%), 개인운영 22개소(34.9%), 기타 13개소(20.6%), 국공립직영(부설) 1개소(1.6%) 순으로 나타남
- 발급기관 조직형태는 '자격증 발급이 부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관' 20개소(32.3%), '자격증 발급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 19개소(30.6%), '자격증 발급이 담당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14개소(22.6%), '자격증 발급이 부설기관으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 9개소(14.5%) 순으로 나타남

2)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증 발급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증 수는 총 169개로, 1개 기관 평균 2.68개로 나타났음. 최소 자격증 수는 1개에서 최대 17개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83,011개의 자격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술치료 53,081개, 음악치료 5,311개, 심리·운동 4,238개, 행동치료 4,031개, 놀이치료 2,294개, 언어치료 2,056개, 인지치료 469개가 발급되었음

Ⅳ.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 개편 방안

1. 현행 자격기준

1) 법적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첫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

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둘째,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셋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함.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지침 :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이 중 ‘Ⅷ. 서비스 제공 인력’ 부분의 내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 것임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증 소지자는 ①국가자격증 소지자, ②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③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됨.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함.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제공인력 자격증 보유현황

- 수행기관을 통해 현재 제공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자격증 명칭을 기재하게 한 조사결과와 복지부 DB를 근거로 자격증 보유현황을 정리함
- 언어 관련 자격증은 25개이고, 발급기관은 14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8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 관련 자격증은 203개이고, 관리기관은 149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4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악 관련 자격증은 51개이고, 관리기관은 47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1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 관련 자격증은 18개이고, 관

리기관은 15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2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놀이 관련 자격증은 207개이고, 관리기관은 143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4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운동 관련 자격증은 125개이고, 관리기관은 104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2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지 관련 자격증은 41개이고, 관리기관은 27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5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격증은 82개이고, 관리기관은 69개로 나타나 1개 기관 당 평균 1.2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최종자격기준(안)

- 최저 자격기준 1안

<표 1> 최저 자격기준 1안

현행	최저 자격기준 1안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좌동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발급되는 자격증 소지자 ① 발달재활 관련 교육 135시간 이상 이수 - 3)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 ② 필기시험 : 평균 60점이상(과락 40점), 발달재활 관련 3과목 이상 ③ 현장실습 : 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시·군·구에 의해 발달재활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실습지도자 : 발달재활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준 미충족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3년후 미충족자는 제공인력 참여불가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3)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현행	최저 자격기준 1안
<p>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p> <p>-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p>	<p>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p> <p>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 최저 자격기준 2안

<표 2> 최저 자격기준 2안

현행	최저 자격기준 2안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좌동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신규진입 금지, 5년의 유예기간후 삭제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질 담보를 위해 자격기준(안)을 만들었으며, 3차에 걸친 협의체 의견수렴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두 가지 자격기준(안)을 제시함. 또한 향후 전담부서에서 발달재활서비스의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수립, 예산확보의 가능성, 현실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V.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금액 개편 방안

1. 발달재활서비스 가격 현황

1) 발달재활서비스 전체의 평균회당가격

- 기관방문형 발달재활서비스 전체의 회당 평균가격은 32,580원이며, 입지별로는 대도시 32,973원, 중소도시 32,413원, 농어촌 31,135원 순으로 나타남 기관유형별로는 영리법인 35,039원, 개인사업자 34,595원, 대학 33,233원 순으로 높았고, 장애인단체 28,094원, 장애인복지관 27,151원, 사회복지법인 29,177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재가방문형 발달재활서비스 전체의 회당 평균가격은 42,663원이며, 입지별로는 중소도시 44,086원, 대도시 42,592원, 농어촌 40,638원 순으로 나타남 기관유형별로는 영리법인 46,658원, 대학 44,200원, 개인사업자 43,825원 순으로 높았고, 종합사회복지관 32,150원, 장애인복지관 37,301원, 사회복지법인 38,811원 순으로 낮게 나타남

2) 서비스유형별 · 입지별 평균회당가격

- 기관방문형은 서비스유형별로 놀이치료 34,865원, 심리·운동치료 33,196원, 인지치료 32,615원 순으로 나타남
- 재가방문형은 서비스유형별로는 놀이치료 45,294원, 인지치료 43,972원, 음악치료 42,518원 순으로 나타남

3) 제공기관별 · 서비스유형별 평균회당가격

- 기관방문형은 놀이치료가 34,8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음악치료가 31,443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는 3,422원으로 약 10%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재가방문형 놀이치료가 45,294원으로 가장 높았고, 행동치료가 40,39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는 4,904원으로 약 11%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생비용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평균경력은 5.5년이며, 입지별로는 대도시 5.8년, 중소도시 5.2년, 농어촌 4.5년 순으로 나타남 기관유형별로는 대학(7.1년), 장애인단체(6.5년), 개인사업자(5.8년)가 평균경력 이상으로 나타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일 서비스제공 평균횟수는 4.4회이며, 입지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음. 제공기관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5.1회로 가장 높았고 대학이 2.7회로 가장 낮게 나타남. 치료유형별로는 언어치료가 4.8회로 가장 높았고, 미술치료가 3.6회로 가장 낮았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실제 발생비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더라도 비용을 용이하게 서비스별로 구분이 가능한 기관이면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의 무상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을 치료유형별, 입지별로 각각 5개 기관을 선택하여 발생비용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후, 오류를 수정한 후 집계하였음
- 조사기관 전체 연간 평균발생비용 : 이자비용, 이자수익 등의 영업외손익을 반영하기 전인 조사대상기관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약 14.5%이며, 회당수입액은 37,546원, 회당비용액은 32,110원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인 기관방문형 평균가격 32,615원과 재가방문형 평균가격 43,972원의 범위 내에서 회당수입액을 보이고 있음
- 사무실임차료가 발생하는 기관의 연간 평균비용 : 비용조사 전체 개수 중 사무실임차료가 발생하는 것만 집계한 결과, 사무실임차료의 매출액 대비율은 7.1%로 회당수입액 37,231원에 대비해 보면 회당 약 2,640원 상당액이 사무실임차료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금액(안)

1) 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금액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전자바우처로 차등지원함
- 2013년 및 2012년 서비스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월 치료횟수 8회에 회당 기준 금액 27,500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월 220,000원을 적용하고 있음
- 재가방문치료와 집단치료인 경우 서비스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 220,000원을 초과하는 서비스 구매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음

2) 회당 서비스가격

- 서비스 시간당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평균 회당 서비스가격은 기관방문형 32,615원, 재가방문형 43,972원으로 파악됨

3) 월 지원액 방안

-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표준화 문제는 서비스 비용책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것인지, 국가가 통제할 것인지를 문제임. 현재와 같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고수한다면 국가의 서비스 단가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용자가 현재 월 치료횟수 8회를 서비스 받으려면 평균 회당 서비스 가격이 37,500원임을 감안할 때, 약 300,000원의 자금이 소요됨으로 이상적인 월 지원액은 300,000원임
-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장애아동의 욕구에 부합한 적절한 횟수의 서비스지원이,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증평가 실시, 발달재활서비스 내용의 구체화와 일원화,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달체계상 연동가능성, [(가칭)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를 정책적으로 제안함

본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자문단회의가 개최됨.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를 거쳐 【201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비스 제공인력 지침 개정(안)이 반영됨

IV. 자립 및 활동지원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전환서비스를 중심으로 -

최성일, 심석순, 이선화, 간기현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를 파악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환과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전환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전환기에 필요한 전환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 방안 모색을 주목적으로 전문가 및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어려움, 성인기 전환서비스의 현황 및 한계점, 전환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성공적인 전환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3단계의 추진전략이 필요함. 즉 1단계 전환지원계획수립, 2단계 전환지원체계 구축, 3단계 전환지원 활성화이다.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 세부 추진방안으로 첫번째, 전환지원 기반 구축, 두번째, 자립생활 지원 전환서비스, 세번째, 고용 및 직업생활 지원 전환서비스, 네번째, 주거지원 전환서비스, 다섯번째, 소득지원 전환서비스 영역, 총 5개 영역의 19가지 추진 과제로 제안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하게 되는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밖에 없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전환서비스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전환교육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져 왔고, 실제 발달장애인이 평생 동안 자립생활을 이뤄나가야 할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미흡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를 파악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환과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과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전환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음
-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전환기에 필요한 전환서비스 및 자립생활지원 방안 모색을 주목적으로 전문가 및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어려움, 성인기 전환서비스의 현황 및 한계점, 전환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음

II. 이론적 고찰

1. 자립생활 일반개요

- 자립생활은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단지 장애인 운동 차원이 아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개념부터 서비스 내용과 체계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까지 장애인복지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초기 자립생활 운동이 전 영역의 장애를 포괄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이 주도가 되어 태동되었던 점, 더불어 지나치게 장애인당사자만의 독립적인 생활에 초점을 둔 것은 한계로 지적됨
-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위험 감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 및 적극적인 참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은 아무런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

2.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960년대 말 유럽에서 제기된 '정상화'와 '탈시설화' 이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음. 발달장애인으로서 자기권리옹호를 주장한 Nirie는 정상화를 모든 발달장애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정상으로써 치료가 아닌 생활조건의 정상화를 주장했으며, 울펜스버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지원의 강조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 자기권리옹호, 사회적 역할 가치화 등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음
- 최근 포괄적인 자립영역에서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음. 상대적 자립이란 완전한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전

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자립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임

-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보통 지원생활(supported living)을 의미하는데,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누구와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소득, 주택, 개인돌보미, 후견인, 권리옹호 제도 등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

3.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 IDEA에서는 전환서비스를 장애학생들을 위해 결과지향적인 과정으로 계획된, 즉 학교 활동에서 졸업 후 활동으로 전환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전환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전환서비스와 유사한 활동으로 본 법 제2조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교 및 관련기관, 부모, 개인 등을 참여시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결과지향적인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음. 특히,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기간은 가족과 학교가 아동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때로 보통 학령기 서비스가 종료되기 3년에서 5년 전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일컫음. 그러나 실제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한 합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졸업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인지력과 이해력, 사회성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의 특성 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음

Ⅲ. 국내·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의 전국 장애인 출현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2000년에서 2005년 간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2001년과 2005년 장애인 출현율은 0.01%로 변화가 없었다가 2005년 3,312명에서 2012년 16,9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3급이 61,019명(36.4%), 2급이 58,085명(34.7%), 1급이 48,371명(28.9%)으로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인은 1급이 8,072명(50.9%), 2급이 5,241명(33.1%), 3급이 2,544명(16.0%) 순으로 급수가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지적장애인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원인은 35.9%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후천적 원인은 21%에 불과하였고, 원인불명이 37.8%로 큰 차이를 보였음. 한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원인이 22.6%, 후천적 원인이 12.7%, 원인불명이 64.8%로 나타났음

2. 국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 국내에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없으나,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자립생활지원 조항,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제33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34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이와 함께 장애아동지원법 제25조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이 중 발달장애인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는 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지원법」의 조항을 들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다양하지 않으나, 교육서비스는 평생교육서비스, 대안학교, 대학입학특별전형제가 있으며, 고용서비스는 직업재활서비스, 지원고용,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있고, 사회참여지원서비스는 장애

인활동지원사업, 소득지원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급자등에 경제적 지원, 주거서비스는 주거지원, 장애인그룹홈,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는 성년후견인제도, 장애인신탁제도, 법률구조서비스가 있다.

-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자립생활체험홈 17개소, 자립생활가정 9개소, 지역사회자립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관(전환평가, 사회자립프로그램, 직업현장견학 및 실습, 방학특별활동, 학령기 이후 다양한 활동등), 청소년수련관, 특수교육기관(직업교육과정,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30개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 직업전환교실 운영, 직업전환교육 상담, 진로·직업능력평가,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등이 있다.
- 정부는 2012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금지 및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제공한 반면에 본 계획에서는 발달장애 유형을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3. 해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전담부서의 운영이나 발달장애인협의체 운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요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영국 사례의 경우 2005년 「정신능력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후견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조집단인 피플 퍼스트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현실과 차이가 있음
- 호주 사례의 경우 「지적장애인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종류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중심 보호 모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모델로 변환한 것이 특징적임

IV. 조사결과 분석

1.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자립지원 제도가 미비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자립생활 지원방안으로 경제생활 보장을 비롯하여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과 자립생활 지원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에 대한 동의 수준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 성인기 전환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전환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며 기관간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패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의 한계점으로 ‘개별특성 고려 없는 획일적 전환서비스 제공’, ‘제공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 ‘전환서비스 지원기간 부족’, ‘특수학교 전환준비 미흡’, ‘지역사회를 벗어난 현장성 없는 서비스 제공’, ‘전환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미흡’, ‘장애 정도에 따른 전환서비스 지원 부족’, ‘전환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부족’, ‘전환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제시되었음
-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전환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패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자립생활에 대비한 일상생활 훈련 및 자기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전환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예산 증액 및 확보’에 대한 의견에 대다수의 패널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고, 교육기관 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개별화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및 교육’과, ‘자립생활 교육 및 훈련, 자기의 사표현과 자기결정권 행사 훈련’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 패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서비스제공기관 영역에서 ‘장기적인 전환서비스 계획 수립 및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개발’과 ‘발달장애인 욕구에 따른 전환서비스 인프라 확충’하는 의견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전환서비스 목표 및 계획 설계’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 패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심층집단면접 조사결과 분석

1) 실무자의 심층집단면접결과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개인별 차이는 존재하나,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생활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장애인과 구별되게 상대적 자립을 강조하였음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자립준비와 도움을 통해 당사자의 전환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과 사회통합이 필수적임
-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주거훈련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주거시설 형태를 통해 당사자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에서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있어 개별화된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생애주기별 평생설계의 관점에서 전환 준비가 이뤄져야함
-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취업중심의 전환지원을 탈피하여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영역에서의 전환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환지원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인 부모의 심층집단면접결과

- 전환기 이전 단계부터 자립생활 준비를 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전환기 자립생활의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으나, 내실 있는 취업준비 및 전환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하여 직업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함
- 성인기 전환준비를 위해 주거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행 그룹홈 제도의 입소기준과 운영지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에 있어 학대 및 인권에 대한 안전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학교중심 전환준비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과정 수준의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전환준비를 할 수 있어야함
- 학교시스템에서 이뤄지는 전환교육의 실효성 부족으로 장애유형과 능력을 고려한 전환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환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전환지원을 해야 함

V.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 방안

1.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 기본방향

-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생활을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가족을 비롯한 조력자와의 관계형성과 자립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자립가능한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임
-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지원의 목표는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해 전환준비를 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일차적인 전환목표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역사회 내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 연계와 역할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의 성인 전환기 자립생활을 위해서 주거생활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성인기 전환준비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대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서는 성인기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부터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체계 구축방안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성공적인 전환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3단계의 추진전략이 필요함
 - 1단계 : 전환지원계획 수립
 - 2단계 : 전환지원체계 구축
 - 3단계 : 전환지원 활성화

3.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 추진방안

-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 세부 추진방안으로 5가지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9개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 첫번째, 전환지원 기반 구축 영역으로 개인별 전환계획수립, 발달장애인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인식개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인식개선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함
 - 두번째, 자립생활 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성인기 전환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화, 자기결정능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간보호센터 역할 전환을 통한 주간보호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적용 확대,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확대 운영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함
 - 세번째, 고용 및 직업생활 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발달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잡코치 제도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 취업정보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 보호고용시설 확충 및 선택제일자리 개발, 발달장애인 절대무고용제도 운영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함
 - 네번째, 주거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확대, 그룹홈 확대 및 입소 기준 체계화, 생활지원 서비스 실시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함
 - 다섯번째, 소득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전환기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자 수당 도입, 미취업 발달장애인 대상 실업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상품 확대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과정 지원 세부 추진방안으로 5가지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9개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첫번째, 전환지원 기반 구축 영역으로 개인별 전환계획수립, 발달장애인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인식개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인식개선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함. 두번째, 자립생활 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성인기 전환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화, 자기결정능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간보호센터 역할 전환을 통한 주간보호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적용 확대,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확대 운영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함. 세번째, 고용 및 직업생활 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발달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잡코치 제도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 취업정보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 보호고용시설 확충 및 선택제일자리 개발, 발달장애인 절대사무고용제도 운영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함. 네번째, 주거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확대, 그룹홈 확대 및 입소 기준 체계화, 생활지원 서비스 실시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함. 다섯번째, 소득지원 전환서비스 영역으로 전환기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자 수당 도입, 미취업 발달장애인 대상 실업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상품 확대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함

활동지원급여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 활동보조를 중심으로 -

이복실, 윤재영, 박찬오, 이윤희, 홍승연

요약

활동지원급여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는 현재 사회서비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인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품질에 관한 논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자질 및 지원방식이 중시되고 있으며 활동보조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활동보조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 교육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동보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동보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콘텐츠의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활동보조 교육과 관련하여 문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활동보조 교육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들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보조 관련 교육의 경우 일정한 지식과 기술 및 분명한 가치 등을 갖춘 인력에 의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가 요구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인력관리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현재 연 2회의 권고사항에 해당되므로 기관의 재량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서는 실시 중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교육 방법이나 내용 등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수교육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교육 전담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보수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공인력의 경우 교육, 관리, 후생 체계로 대해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 서 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 사회서비스의 주요 쟁점은 서비스 품질임. 대인서비스의 경우 공공성과 공공재 결합이라는 특성 상 서비스의 정책적 확대와 맞물려 품질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활동보조는 가장 핵심적인 대인서비스로 활동지원제도를 대표하는 서비스임. 활동보조서비스 품질에 관한 논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자질 및 지원방식이 중시됨
- 서비스 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활동보조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 주도의 연 2회 이상 보수교육 권고만으로는 의도한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 방식, 내용 등 제공기관 간 편차가 상당한 실정임
- 활동보조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교육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됨. 이용자교육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이라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활동보조 가치를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함. 또한 대인서비스의 특성 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관계형성과 소통 정도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요구됨

2. 연구결과 활용방안

- 교육콘텐츠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특성, 경력, 주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의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 특히 집체교육이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동영상 활용 :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동보조인과 서비스이용자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제작하여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활동지원제도 취지, 이용자 고려사항, 활동보조인 고려사항 및 양자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해 설명함. 중앙이나 지자체의 경우 활동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동보조 주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교육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소책자 활용 :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상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인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차원으로 일상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함

II. 이론적 고찰

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특성

-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체계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특정 지어짐. 최근 시장규제 완화, 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 감소, 전문가 양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서비스 품질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임
-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공급측과 수요측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공급측 변수는 서비스 자체의 특성, 조직의 가치와 목적,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개선의지, 공공의 규제 및 보상책, 고충처리에 대한 제도적 절차보장, 기타 지역적 특성이 있음. 수요측 변수는 이용자, 보호자의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과 지불용의, 이용자의 관심과 열의,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참여여부 등이 작용함
-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할이나 개별적 역량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나 역할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됨

2. 활동보조서비스의 품질 관리

1) 활동보조 질 관리와 교육

- 1970년대 말부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신공공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의 영향으로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책무성이 강조됨

-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일정한 지식과 기술, 분명한 가치와 윤리를 갖춘 인력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철저해야 함
- 현재 활동보조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은 보수교육에 그치고 있으나 교육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2) 국내 돌봄서비스 교육관리 현황

- 국내 유사돌봄서비스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양성과정은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됨
- 기본교육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는 공통과정(20시간), 전문과정(20시간)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되는 현장실습(10시간)으로 구성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사업의 경우 이론(80시간), 실기실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의 기본교육으로 구성되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기본교육(40시간), 심화과정(40시간) 총 8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됨
- 보수교육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는 연 2회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 한편, 노인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사업의 경우 상·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회 실시함. 산모신생아서비스의 경우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함

3) 국외 활동보조 관리 현황

- 영국
 - 영국 보건성은 2012년 6월 의회에 제출한 사회적 돌봄에 관한 백서에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함
 - 실행방안으로 효율성 제고의 실천은 이용자의 자립 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통제 강화 시스템의 마련임. 또한, 사회적 돌봄 원칙의 실현을 위해 케어인력 관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케어워커들의 행동강령과 최소훈련기준 마련, 사회적 협약 추진, 전문사회복지 실천의 대대적 개혁 및 수석사회복지사 임명, 양질의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케어 견습생 양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함

○ 미국

- 2013년 시행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에 의해 노인과 장애인의 장기 케어 및 서포트 서비스(LTSS)에 대한 전면적 혁신 대안 제시 계획 마련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규정되었음
- 납세자세금감면법에 근거한 장기케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케어통합, 보조공학 활용, 혁신적 인력 관리전략을 제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특히 가족의 보살핌에 주목함. 또한 안정적인 직접케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 인력의 경력 개발을 위한 통합 자격과정 마련이 요구되며, 최근 6개 주정부에서 진행한 PHCAST 시범사업은 체계적 자격과정과 교육훈련 최소 기준 마련 등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

- 일본은 1986년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함께 시작된 ‘장애인 개호지원’ 사업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되었음. 2003년 ‘장애인지원비제도’ 이후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2013년 시행된 ‘장애인복지지원법’에서 복지직원 및 개호직원 처우개선 등을 언급함. 인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돌봄인력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고용창출 및 실업개선의 역할 달성도 기대됨
- 활동보조인 자격 기준은 전문직 1급 외에 활동보조 자격 2급을 소지하여야 신체개호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기본교육 시간은 80시간이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활동보조 3급과 2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짐

Ⅲ. 활동보조 교육 관련 의견 수렴

1. 조사개요

- 포커스집단면접 전체 참여자의 구성은 5개 유형의 서비스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5명, 서비스이용자 5명, 전담인력 10명 등 총 20명임
- 활동보조인은 3년~6년 경력, 서비스 제공자 동시에 이용자(장애아동)인 어머니

3명 포함

- 이용자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6년 미만임. 남성 3명, 여성 2명 구성됨
- 전담인력은 1년 미만~8년 경력, 5개 유형의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임

2. 질적조사 결과

1) 활동보조인 면담 결과

<표 1> 활동보조인 심층면담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서비스제공 과정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이용자의 변화에 따른 보람 및 자부심	- 이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보람 느낌 - 서비스제공 전과 후에 이용자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느낌
	서비스제공내역 기록의 어려움	- 일지작성에 대한 필요성 공감 -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자세한 내용기록은 어려움
	이용자 및 이용자가족과의 불편한 관계	-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존중하지 않음 - 이용자 가족이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함 - 제3자로서 이용자에 대한 개입이 조심스러움
	서비스 제공기준 불분명	- 이용자에게만 한정된 서비스제공은 현실적으로 어 려움
활동지원 관련 정보제공		- 활동보조서비스 전반 이해 관한 정보제공 필요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응급상황 관련 정보 필요 -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서비스 및 제도 개선사항	이용자교육의 의무화	- 이용자의 권리만큼 의무도 강조되어야 함 - 이용자가족에 대한 교육 필요
	기본적인 의료교육 필요	-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본적인 의료교육 필요 - 의료교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급여가 인상되어야 함 - 활동보조인의 기본적인 복지혜택 필요
	형식적인 인정조사 개선	-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인정조사 시행 요망

2) 실무자 면담 결과

<표 2> 실무자 면담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태	보수교육 실시 과정의 어려움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커리큘럼 부재로 같은 교육을 반복함 - 보수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해야하는 어려움
	보수교육 콘텐츠의 요구사항	- 보수교육을 통해 직업의식 강화, 장애이해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도 실시함 - 직업의식 향상, 의료 케어, 장애유형별 특성, 급여내용과 제도 이해 등
이용자 대상의 교육 필요성	이용자 교육 중요성	-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 제도 이해, 지식 전달 등 이용자교 육 필요 - 제공기관이 가진 권한이 너무 적고 영향력 행사가 어려움
	이용자 교육 콘텐츠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교육 효과성 향상 방안	보수교육 전담기관 설치	- 보수교육 효과를 위해 교육 전담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연차별, 서비스 내용별 전문적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 어야 - 이용자는 수급 심사 기관에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활동보조인 자격 기준 마련	- 활동보조인 양성과정에서 최소한의 기준, 관리가 필요함
활동보조 업무의 어려움	복잡한 서류작성	- 통일된 규정, 필수작성 지침이 없어 기관별로 상이함 - 평가를 앞두고 서류 작성 및 보관범위 관련 혼선이 많음
	서비스 전달체계 과정의 어려움	- 주무부처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전달방식이 적절치 않음

3) 이용자 면담 결과

<표 3> 이용자 면담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활동보조에 관한 당사자 경험	내 삶에서 활동보조의 의미부여	-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임 -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과 같이 꼭 필요한 제도임
	서비스 이용 과정상의 어려움	- 활동보조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서비스를 요청 하게 됨 -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이용자 의 동의 없이 임의로 행동하기도 함
	활동보조인과의 갈등대처 방법	- 활동보조인과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됨 - 갈등해결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며 지냄 - 불이익을 우려되어 제공기관에는 가급적 얘기하지 않음
활동보조 갱신 개선 및 이용자 교육 필요성	활동보조 갱신 관련	- 간단한 질의형태로 확인하는 현행의 조사방법은 개선 필요함 - 조사 담당 인력이 총원이 요구되며 장애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함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	-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자세가 요구됨 - 이용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이용자교육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별 편차가 있음
활동보조 개선사항	이용자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함 - 직장인 이용자일 경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어야 함
	활동보조인 대상의 심층 교육 필요	- 부정수급과 관련된 교육이 요구됨 - 이용자의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스포츠를 활용 등 다양한 재활치료 콘텐츠가 있었으 면 함 - 활동보조인의 자존감 및 전문가로서의 인식 향상 교육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효 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활동보조인의 급여인상이 필요함

4) 조사결과의 시사점

- 현재 실시 중인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활동보
조인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보수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제

공 기관에 따라 커리큘럼, 운영방법, 강사섭외, 교육대상자 참여율 등에 편차가 발생하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제공기관 전담인력, 활동보조인, 이용자 모두 이용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함을 동의하며 그 범위가 가족까지 확대되어야만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용자 교육은 개인의 선택권과 주도권에 상치될 수 있으며 교육 담당 기관의 권한 문제, 교육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교육 방법, 교육 담당 기관 등 제도적 정비가 요청됨
- 활동보조인 대상 보수교육, 이용자 대상의 교육 등 활동보조 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수교육을 담당할 경우 교육 내용과 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활동보조인 자격의 최소 기준 마련과 활동보조 경력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활동보조 질 관리를 위해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 상호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짐.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활동보조는 관계형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주요 관련자들의 태도나 이해는 제도의 효과성과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강조되므로 해당 교육 내용과 체계가 검토되어야 함

IV. 활동보조 교육 콘텐츠 지원

1. 활동보조인 대상

1) 보수교육 매뉴얼 개요

-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에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와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역량을 유지·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개별성, 복합성, 생애 주기성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서비스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업무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성상 보수교육은 서비스 질 담보에 핵심적이라 할 것임

2) 보수교육 매뉴얼 구성

<표 4>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매뉴얼 구성

구분	과 목	주요 내용
1. 활동보조 이해	1_1. 활동보조에 대한 이해	1_1_1. 활동보조의 개념과 가치 1_1_2. 활동보조와 자립생활
	1_2. 활동보조인에 대한 이해	1_2_1. 활동보조인의 정의 1_2_2. 활동보조인의 자격 1_2_3. 활동보조인의 역할 1_2_4. 활동보조인의 권리 1_2_5. 활동보조인의 직업윤리
	1_3. 활동보조 업무에 대한 이해	1_3_1. 활동보조 급여내용 1_3_2.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범위
2. 서비스 이용자 이해	2_1.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2_1_1. 이용자의 권리 2_1_2.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2_1_3.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2_2. 장애인에 대한 이해	2_2_1. 장애인 바르게 대하기 2_2_2. 장애유형별 이해
3. 활동보조인 역량강화	3_1. 활동보조인의 자기 관리	3_1_1.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자기관리 3_1_2. 갈등관리 기법 3_1_3. 활동보조인 간담회 및 소모임 활동
	3_2. 활동보조인의 업무능력 향상	3_2_1. 슈퍼비전(supervision) 활용하기 3_2_2. 지식과 기술 개발
4. 인권침해 예방	4_1.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4_1_1. 차별적 대우에 대한 이해 4_1_2. 인권과 장애인 인권 4_1_3.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4_1_4. 활동보조 제공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2. 서비스 이용자 대상

1) 교육 매뉴얼 개요

- 활동보조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자 교육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배경에는 활동지원제도 철학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가 주도할 수 있으며 교육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대인서비스의 특성 상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는 서비스 품질과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됨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보조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활동보조인과의 관계형성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측면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구성함

2) 교육 매뉴얼 구성

<표 5> 이용자 교육 매뉴얼 구성

구 분	과 목	주요 내용
활동보조 개요	1-1. 활동보조의 이해	1-1-1. 활동보조의 개념 1-1-2. 활동보조의 목적 1-1-3.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범위
2. 활동보조인과의 관계형성	2-1. 활동보조인과의 소통	2-1-1.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기술 2-1-2. 상호인격권 존중 2-1-3. 서비스 요청 방법 2-1-4. 활동보조인의 근로환경 배려
	2-2.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조정	2-2-1.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및 해결 방안
3. 이용자 준수사항	3-1.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3-1-1.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3-1-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3-2. 서비스이용 관련 주요 정보	3-2-1. 바우처카드 사용 주의사항 3-2-2. 개인정보보호법 3-2-3. 성희롱예방교육 3-2-4. 응급상황 대처방안

V. 정책 제언

1. 인력 교육체계 보완

- 1단계 : 교육·훈련 최소기준 마련
 - 활동보조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기준에는 활동보조인 교육·훈련 커리큘럼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자격제도의 근간이 됨. 호주의 경우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10개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 인증체계의 기준으로 삼음
- 2단계 :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 1단계 최소기준을 토대로 이를 준거로 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의 직무와 근거하며 교육과정의 연계와 통합성과 유연성을 충족시켜야 함. 보조인의 경력, 수행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영국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최초 자격과정부터 연차별 보수교육이 연동되도록 함
- 3단계 : 교육 전담기관 설치
 -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양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현재 제공기관에 따른 교육내용과 강사수준의 편차가 상당하므로 교육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의 평준화와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함. 또한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되, 보조인의 교육내용과 주요 서비스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2. 인력 관리체계 강화

- 1단계 : 활동지원 인력 직무분석
 - 연차별, 대상별(연령, 장애) 활동보조인의 직무와 보조인의 전담인력에 대한 직무분석이 전제되고 이를 토대로 교육커리큘럼과 자격제도 정비의 근거로 활용함. 특히 각 서비스 영역의 활동보조인의 직무 난이도 조사도 필요함. 이러한 제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직무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2단계 : 자격제도 정비
 - 포괄적인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격제도를 정비해야 함. 자격제도의 정비

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음. 영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자격 제도를 구분하고 케어인력의 수직적 수평적 경로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활동보조인의 자격을 다양화하고 경력직 활동보조인의 특정교육을 통해 전담인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수직적 자격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 활동지원 인력 등록 D/B 구축

-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보호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의 신분은 명확해야 함. 활동보조인의 범죄기록, 교육 배경, 실무경력, 직무 평가 등에 관한 자료 구축 및 공개가 요구됨. 이와 같은 보조인의 관련 정보가 이용자와 기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인력 후생체계 정비

○ 1단계 : 활동지원인력 근로실태 조사

- 활동보조인력의 복리후생 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것이며 돌봄인력의 직업적 전망을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실태 파악이 선행되고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 방안을 실증적으로 마련해야 함

○ 2단계 : 수가 및 단가 조정

- 활동보조인은 향후 확대 전망이 높은 일자리 창출분야이나 현재 저임금 일시적 고용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가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을 통해 차츰 해결해나아가야 함. 바람직한 서비스 수가 인상은 현행 국내 돌봄 노동의 표준화된 수가에 근거하여 서비스 특성에 맞는 표준단가가 설정되어야 함

○ 3단계 : 후생복지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재 활동보조인의 후생복지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량으로 맡겨지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근로자의 최소환경 기준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법적 제도적 개정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법 제도 정비 이후 전담기관이 준수할 가이드라인이 요청됨

4. 이용자 교육체계 수립

-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활동보조에서 강조되는 선택권과 결정권에 기반한 이용자 주도의 서비스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철학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에 해당됨. 미국의 경우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함.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큼. 따라서 활동보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활동지원급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의 교육 효과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서비스 제공인력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함

첫째, 제공인력의 교육 체계에 대한 보완으로 교육, 훈련 등의 최소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교육이나 훈련 커리큘럼이 개발되며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임. 둘째, 제공인력의 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연차별, 대상별, 서비스 내용별 활동보조인의 직무 분석을 토대로 교육커리큘럼과 자격제도 등이 정비되고 활동지원인력 등록 D.B. 구축을 고려되어야 함. 셋째, 제공인력의 후생체계의 정비임.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원인력의 근로실태가 파악되고 근로환경 개선방안이 실증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넷째,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서비스 이용자가 활동보조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이 요구됨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전동일, 유경민

요약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난청인 관련 지원제도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고, 난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FGI)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데시벨(dB)을 이용한 청력 측정에 의해 정의하지 않고 사용언어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난청인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난청인과 농인의 '소속 집단에 대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의이다.

난청인의 의사소통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였다. 난청인은 구화의 능숙도와 활용도가 필담, 수화, 보조기구에 비해 높았다. 전체 난청인 중 53.2%가 보청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4.85년 사용하였다. 문자통역서비스는 연 7.77회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7.8%가 정당한 편의라고 생각하였고, 87.8%가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요청 경험이 있었다. 의사소통지원제도 중 청능검사에 대한 인지율(65.8%)이 가장 높고, 이용경험률(53.3%)도 높았다. 향후 이용 의향률은 의사소통 보조기구(86.4%)가 높았다.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가 서비스는 문자통역서비스(35.2%)가 가장 높았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문자통역 대중화 위한 제도정비'(33.5%)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난청인의 의사소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난청인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난청인들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적극적인 R&D 투자, 문자통역서비스 확대 및 체계적 제공, 문자통역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보청기 내구연한 축소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도 개선 방안은 현행 보청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문자통역서비스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문자통역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난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특허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R&D)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는 생활 전반의 문제로 직결됨
- 이에 정부는 청각장애 관련 정책은 보조기구 지원이나 인공와우 등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연구로 확대되어 왔으나 수화통역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 수화통역서비스 중심의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정책은 난청인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음
- 기존의 난청인 의사소통 지원제도는 보청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보청기만의 지원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난청인의 언어생활과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난청인의 정책 수요를 선제적인 대응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난청인의 언어생활과 지원제도를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책 수요 파악하고 나아가 난청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분석을 통해 난청인에 대한 정의와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난청인의 일반현황, 삶의 만족도, 사회적 특성 등을 2차 분석
- 난청인의 언어생활 실태와 의사소통보조기구의 사용 양태, 의사소통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
- 난청인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난청인의 의사소통 현황 및 지원제도 등 문제점 분석

II. 문헌 고찰

1. 난청의 개념

- 난청 관련 주요 개념
 - 청각장애는 기능 손실된 부위에 따라 청력장애와 평형장애로 나누어지고, 청력장애는 듣기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나누짐
 - 난청은 잘 들리지 않는 청력기능이 잔존하는 청력장애를 말하며, 난청이란 청력기능이 난청인 장애인을 일컫는 말임
 - 농은 청력기능이 미약하거나 소실되어 듣는 기능이 유효하지 않은 청력장애로 정의되며, 농이란 청력 기능이 사실상 소실된 장애인을 말함
- 난청의 정의
 - WHO는 청력에 따라 난청(90dB 이하)과 농(90dB 이상)으로 구분함. 이 정의에 따르면 청각장애 3급 이하가 난청으로 분류됨
 - 김성희 외(2011)는 난청(hard-of-hearing)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보통은 35~69dB)로 정의함. 이 정의는 청각장애 중 5, 6급이 난청에 해당됨
 - 본 연구는 데시벨(dB)에 의한 청력 측정을 기준으로 난청과 농을 나누지 않고, 사용언어를 기준으로 정의함. 즉, 난청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함. 이 정의는 난청인이나 농인이 갖는 정체성과의 일치성을 높일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난청인 의사소통 지원제도

-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지원제도 현황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품목의 구입 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함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 난청인 관련 서비스로는 방송수신기 무료보급과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난청인의 언어생활과 복지서비스 지원
 - 청각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복지용구 지원 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산재보조기구지급사업, 보철구지급사업,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등이 있음
 - 장애인보장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음

Ⅲ. 난청인의 일상생활

1. 개요

- 분석 자료
 - 난청인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 2008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음

2. 분석 결과

- 난청인 규모
 - 2000년 난청인 규모는 186,961명, 2005년 280,062명, 2011년 295,897명임
 - 재가청각장애인의 2000년 96.1%, 2005년 93.3%, 2011년 94.8% 수준임
 - 난청인의 장애등록률은 2000년 37.7%, 2005년 60.5%였으나, 2011년은 전체장애인 장애등록률과 비슷한 93.1%를 차지하였음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난청인들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32.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4.3%) 순으로 나타남
 - 보청기 사용자 추정 규모는 2005년 청각장애인의 45.2%인 122,603명이었음. 이후 2011년 청각장애인의 62.1%인 183,644명으로 증가하였음
- 일반 특성
 - 2005년 65세 이상 난청인 인구는 59.2%였으며, 2011년 60.2%로 1%p 증가
 - 2011년을 전체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포를 비교하면, 1, 6급을 제외하면 나머지 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난청인의 교육연수는 전체 장애인에 비해 약 1년 정도 낮은 수준
 - 난청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중퇴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72.8%)와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4.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7.0%로, 2008년의 19.1%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010년 12월 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1%에 비해 약 5.5배 높음
- 신체적 특성
- 난청인의 장애발생원인 중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2005년 88.6%, 2011년 92.3%로 나타났음
 - 난청인이 일상생활 도움필요율은 2005년 35.0%에서 2011년 20.7%로 감소하였다. 2011년을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볼 때 6.8%p 낮은 수치임
 -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4.2%였으며,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사회적 특성
- 난청인의 결혼 상태는 전체 장애인에 비해 사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난청인은 전체장애인에 비해 사별은 9.0%p 많고, 미혼은 7.0%p 적었음
 - 난청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71.2%로 가장 많았고, 주 1~3회 외출은 18.2%, 월 1~3회 외출은 7.3%의 순이었음
 - 난청인 중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집단(매우 만족 + 약간 만족)이 55.6%인데 반해 전체장애인(53.2%) 보다 더 긍정적임
 - 2011년도 난청인의 생활만족도 긍정 비율은 42.3%이었으나 전체장애인은 39.5%로 전체장애인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적 특성
- 난청인 가구소득은 1,896천원으로 전국가구 대비 51.1% 수준이었으며, 가구지출은 1,522천원으로 전국가구 대비 50.7% 수준이었음
 -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36.4%), 일용근로자(30.4%), 상용 근로자(16.7%), 임시근로자(11.8%), 무급가족종사자(4.7%)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 불안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한 난청인의 임금은 2005년 81.9만원, 2011년 123.5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 있으나, 전국 상용근로자의 2005년 34.1%, 2011년 39.7% 수준이었음
- 난청인의 자가용 보유율은 46.5%로, 전체장애인 52.7% 보다 낮았음
- 복지서비스 수요
-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복지혜택에 대한 난청인의 2011년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38.2%) 보다 부정적인 평가(61.9%)가 더 많았음
 - 난청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35.8%), 소득보장(35.8%), 고용보장(7.8%), 주거보장(7.1%) 순이었음

IV. 난청인 언어 생활과 복지서비스 이용

1. 개요

- 분석 자료
-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난청인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행하였음

2. 분석 결과

- 언어생활
- 난청인이거나 농인인 자녀와의 의사표현이 가장 원활(2.94점)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청인 부모(2.92점), 건청인 배우자(2.91점) 순이었음
 - 정보통신 이용할 때(43.5%) 의사소통이나 언어문제로 인한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TV 시청 중 자막방송 시간은 0시간(44.3%)이 가장 많았고 '5시간 이하'(31.8%), '10시간 이하'(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TV 시청 방법은 '소리를 크게 틀면 TV 시청 가능'이 53.5%로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간 혼자서 병원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구화(말)(72.4%)가 가장 많았고 38.7%가 병원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음

○ 의사소통 보조기구

- 난청인은 구화의 능숙도와 활용도가 필담, 수화, 보조기구에 비해 높았음
- 보조기구 사용률은 핸드폰 영상 전자문자가 77.1%로 가장 높았고 인공와우의 구입비용은 평균 888.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보청기 256.7만원으로 나타났다음
- 스마트폰 이용률은 63.0%로 구입비용은 평균 58.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지비용은 45.26만원이었음. 통신요금의 장애인 할인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78.2%가 적용받고 있었음
- 보청기 사용률은 80.2%였으며, 보청기 구입 가격은 166.9만원이었음. 또한 평균 4.85년 사용하였음
- 최근 사용한 3개의 보청기 구입 동기는 노후화에 인한 교체(39.9%)가 가장 많고, 199.6만원에 구매하였고, 24.6만원을 지원받았음
- 문자통역서비스는 연 7.77회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만족도는 5점 중 3.25점이었음. 문자통역서비스는 87.8%가 정당한 편의라고 생각하였고 87.8%가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요청 경험이 있다고 밝혔음
- 22.4%가 대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으며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63.9%)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대필서비스 이용 의향자는 40.7% 수준이었음

○ 의사소통 지원제도

- 인지율은 청능검사가 68.5%, 의사소통 보조기구는 61.4% 순이었음
- 난청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율은 청능검사(53.3%), 의사소통 보조기구(45.0%), 보청기 착용훈련(18.3%), 청능훈련(9.7%), 인공와우 상담, 수술(8.3%) 순으로 높았음
- 의사소통 보조기구가 86.4%라는 가장 높은 향후 이용 의향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공와우 상담, 수술'이 36.2%로 가장 낮았음
-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지원확대가 필요한 서비스는 문자통역서비스(35.2%)와 '의사소통 보조기구 등 확대'(29.6%)가 가장 높았음
-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필요량은 '보청기와 문자통역서비스가 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7.5%)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제도적인 기반은 '문자통역 대중화 위한 제도정비'(33.5%),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한도액 상향'(30.6%), '기술개발사업 투자확대'(21.5%) 순이었음

V. 의사소통 증진 방안에 대한 난청인의 의견

1. 개요

- 분석 자료
 - 참여자는 본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이에 동의하는 난청인 5명과 총 2회(1차: 2013.7.9, 2차: 2013.9.27)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음
 -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음

2. 분석 결과

- 의사소통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연구 참여자는 소속된 학교나 기관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전화기 사용의 불편함이나 긴급상황 대처가 어려웠음
 - 현행 의사소통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정부의 지원방식이나 그 지원범위 등이 혼란스러웠음. 특히, 수화통역만 지원되고 문자통역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음
- 의사소통 지원 제도 개선 방안
 - 정부 지원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 필요
 - 국내 보청기 제조회사들이 수입 의존도가 높는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R&D 지원 필요
 - 텔레비전 등의 방송 이외에 난청인을 위해 자막방송이 필요하며, 문자서비스 등이 일상화되는 체계로 변화가 필요
 - 수화통역센터의 기능에 문자통역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홍보하여 농인과 난청인 모두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보청기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보청기 지원금을 상향조정이 요구됨

Ⅵ. 난청인 의사소통 증진 제도 개선 방안

- 보청기 지원액 증액
 - 보청기 지원금의 규모가 독일과 유사하고, 스위스는 약 2배가량 지원금이 많은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약 20% 정도 많음
 - 점진적으로 약 20% 정도 향상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7만원 인상이 필요함
 - 외국은 양쪽 보청기 지원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쪽 보청기가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지급해야 함
- 문자통역서비스 확대
 -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편의'에 속함
 - 그러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로 이용 수준이 낮고, 현장에서 문자통역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함
- 보청기 및 의사소통서비스에 대한 R&D 투자
 - 난청인은 기술개발(R&D)사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집단 중 하나임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영역의 선도적 기술개발(R&D)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확보가 바람직함
 - 특히 보청기의 가격 저렴화와 문자통역서비스의 개별화 서비스 등에 기여할 것이며,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난청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 문자통역서비스를 포함한 청각장애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나, 청각장애 내부 논의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 제1안은 수화통역센터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문자통역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 제2안은 수화통역센터 내부에 문자통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3안은 청각장애서비스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내부에 수화통역팀, 문자통역팀,

- 청각장애서비스팀, 사업지원부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 별도의 전문 인력 양성 보다 이들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VII. 결 론

- 보청기의 지원 단가의 단계적 상향
 - 점진적으로 약 20% 정도 향상 조정이 필요함
 - 양쪽 보청기 사용이 편익을 증진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요 예산은 50% 추가재원이 필요함
- 문자통역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공공기관 등(제2항)은 문자통역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정당한 편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이나 안내 책자를 통해 문자통역이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물에 포함시켜야 함
-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문자통역이 개별 서비스화
 - 음성인식기술은 난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필요
 - 이를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R&D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대음성인식기술, 보청기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저렴하게 상용화해야 함
-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마련
 - 난청인의 의사소통 제도 마련을 계기로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와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문자통역센터 독자 설치안, 수화통역센터 내 문자통역센터 설치안, 청각장애서비스종합센터로의 확대개편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난청인과 농인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보청기 착용 훈련 서비스 확대
 - 보청기 착용훈련은 이용경험률이 낮은 반면(18.3%), 향후 이용의향(57.4%)은

높았음

- 보청기 착용훈련 서비스는 새로운 보청기 착용 후, 어음 식별을 위해 이루어지는 보청기 적응훈련임
- 보청기 판매업체에서 보청기 착용훈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안내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보청기의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7만원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추가적으로 한쪽 보청기 지원 원칙에서 탈피하여 양쪽 보청기 지원으로 확대하면 소요 예산의 약 50%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문자통역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이나 안내 책자를 통해 문자통역이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물에 포함시켜야 됨

셋째,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문자통역이 개별 서비스화 되어야 함. 공성이 강한 기술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공공재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난청인의 의사소통 제도 마련을 계기로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와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다섯째, 난청인복지서비스 중 보청기 착용훈련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특히, 보청기 판매업체에서 보청기 착용훈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안내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최성일, 노승현, 이의정

요약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는 장애인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노년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 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장애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2011 장애인 실태조사”자료 및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당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장애인은 성별에 따라 경제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고 50대 이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수준이 감소하고 의료나 간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욕구에 있어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걱정거리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많고 경제적 준비정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결과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노후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적 욕구를 고려한 노후생활 설계를 제안하였다. 노후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득 및 재무, 건강의료, 문화여가, 주거 4분야로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지원제도와 노인지원 제도간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여가분화활동 지원, 생애설계 지원, 노후대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중고령 장애인 노후대비 지원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사회는 의료보건 환경 개선 및 과학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영양)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이슈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 문제와 노인의 문제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령화 문제나 일반 장애인복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음
- 우리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부나 학계, 실천현장에서조차도 크지 않았던 것 같음.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수행된 학술 및 정책연구는 여타 장애인 대상 연구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음
- 장애인은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노년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 대비가 중요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방법과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장애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장애인을 포함한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노후대비에 대한 개념 및 방향성을 검토하였음.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음

-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노후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노후생활 및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및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패널자료들을 활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장애인당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노후대비 현황 및 어려움, 노후대비 관련 프로그램, 노후대비 지원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음

II. 이론적 고찰

1. 장애노인의 개념

- 1980년대 이후 노화와 장애관련 연구는 “노인의 장애(disability with aging, aging into disability)”와 “장애인의 노화(aging with disability)”로 구분되어 이뤄짐. “노인의 장애”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노화과정에서 장애인이 되는데 이러한 장애노인을 노인성 장애인(lated-long disabled elderly)이라 하고, “장애인의 노화”는 장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되는 경우로 편의상 고령 장애인(person with long-term disability)이라 함
- 과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낮은 생존율(척추손상)을 보였으며, 조기사망(발달장애)과 연관되기도 했으나 의료·보건환경 개선, 재활기술의 발전은 장애인들의 생존율과 수명을 증가시켰으며, 고령 장애인들은 주로 장애인복지의 주요 관심 영역이 되어왔음
- 노화와 장애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영역과 노인복지영역의 고령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엄격히 구분되기 보다는 연속체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함
- 장애 노인 문제는 장애인복지 영역과 노인복지영역의 구분된 영역이 만나는

지점임. 즉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라는 측면에서 '공유영역'(common ground)을 구성함(Campbell, 1997) 공유영역에 중심을 두었을 때 장애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장애인복지영역과 노인영역의 서비스 연계노력을 통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고령 장애인 서비스가 노인이라는 연령 상의 정의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진행될 때, 노인영역과 장애영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함
- 고령 장애인 서비스가 노인이라는 연령 상의 정의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진행될 때, 노인영역과 장애영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기간이 15년-20년 이상이 되거나, 40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의료적, 기능적,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조기노화라 함. 조기노화는 중년에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0대, 혹은 장애를 얻은 후 10년 후에 진행되기도 하며, 이러한 장애노인의 기능감퇴는 비장애인 보다 15-20년 빨리 나타나는 것임

2. 장애인의 노후준비

- 최근 중년층 인구의 증가와 조기퇴직 증가, 노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중년기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었음. 선행연구의 경우 노후준비 영역 중 경제적 노후준비 영역에 한정된 연구도 있으나 많은 연구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포괄하여 진행된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장애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 연구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국한하고 있어 노후준비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장애인구가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장애인의 경우 퇴직연령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임금수준은 낮고, 공적연금 가입율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노후준비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진행되었음. 직접적으로 노후준비에 관하여 다루는 연구는 여성장애인 노후준비 영향요인(민병윤, 2009)

에 관한 서베이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노후준비 관련 문항을 포함하면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음(조정아, 2010; 최희진, 2011; 송미영, 2012). 간접적으로 노후준비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 장애인의 저축수준에 관한 연구(윤상용·김태완, 2012)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장애인의 노후준비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 중 지적장애인의 평생계획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음

Ⅲ.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1) 실태조사

-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수집한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2011년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자료 중 중고령 장애인 자료를 분석함

2) 면접조사

-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후대비 관련 민간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5명, 실무자 5명을 선정함
- 장애인 당사자는 신체장애인이 4명, 발달장애인이 1명이었으며, 실무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실무자 3명, 노인종합복지관 실무자 1명, 노후대비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 1명임

2. 실태분석

1) 중고령 장애인의 실태

- 중고령 장애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과반수 이상이었음. 가구유형은 부부, 부부+자녀, 독거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월평균 개인소득은 75.8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음. 월평균 가구소득은 185.2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음. 월평균 추가비용은 평균 11.3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추가비용이 더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고령 장애인은 성별에 따라 경제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은 경제적 수준과 소득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고, 50대 이후로 연령이 증가함에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반면 의료나 보호간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가활동 참여의 경우 TV 시청 이외에 여가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도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70.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 복지욕구에 있어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종합해볼 때 중고령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함

2)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

-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노후인식과 관련하여 노후시기 이전과 이후 인식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후시기 이전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
- 노후시기에 희망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미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하게 근로활동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후 걱정거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경제적 걱정

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특히 생활자금 마련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거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있었음

- 정서적·사회적 걱정거리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이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의 관계변화로 인한 소외감 순으로 나타났음.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에 비해 역할상실로 인한 무력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체적 걱정거리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인성 질환 등의 발병과 신체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후와 관련한 걱정거리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중고령 장애인의 걱정거리가 많고 경제적 준비정도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역할 상실에 대한 정서적 걱정거리가 많고 이에 대한 준비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담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체계 구축 및 개인별 사례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나가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신체적 준비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이 장애인에게 이차적 장애 발생의 위험에 노출해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준비를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함

3)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생활실태

-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생활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와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유의미하게 노후생활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고 생활비, 교육비 등 더 시급하게 쓸데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기준 164만원, 개인기준 100만원이었음

- 노후 자녀동거 및 거주형태와 관련하여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동거를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는 각자의 독립된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생활상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노후를 보내고 싶은 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형태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노후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로 본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가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대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개인과 사회 차원 모두에서 경제적 문제와 건강/의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상태, 여가 및 건강, 복지상태 등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 및 삶의 만족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차원에서 다양한 걱정거리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준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장애인의 생애주기 차원에서 중장년기부터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경제 영역, 심리사회 영역, 건강의료 영역 등 종합적인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진단과 개인차원, 기관차원,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제도적 접근을 강구해야 함

3. 면접조사

1) 1차 심층집단면접결과

- 실무자의 심층집단면접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노후대비를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개인적 욕구를 고려하여 취미나 여가생활 및 경제생활 등의 노후생활을 설계해나갈 수 있어야 함
- 둘째, 장애 유형에 따른 노후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노후대비를 구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노후대비 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 소득 및 재무, 건강의료, 문화여가, 주거 네 가지를 대표적인 지원분야로 꼽았으며, 소득이나 주거의 경우는 공적 부

문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반면에 문화여가나 건강의료에 대한 서비스는 지역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함

- 넷째, 장애인 지원제도와 노인지원 제도 간의 단절과 전달체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함. 장애인노인이 장애인 분야와 노인 분야 양 영역에서 중첩되면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함
- 다섯째 소비 및 재무설계 준비를 통해 노후대비가 필요함.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경우 소비 및 재무설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컨설팅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함
- 마지막으로 노후대비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대부분의 장애인이 노후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 주도적으로 노후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2) 2차 심층집단면접결과

- 장애인 당사자의 심층집단면접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후준비는 중장년 이전이 20대, 30대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40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성공적 노후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건강을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을 비롯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자원봉사를 통한 삶의 보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과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외 신체적 어려움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은 순차적으로 사회적 관련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 주거에 대한 문제도 지적됨
- 넷째, 노후대비 지원욕구에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지원에 대한 욕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이동지원기구나 보조도구의 지원, 활동지원의 강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IV.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지원방안

- 첫째,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은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신체적 건강 및 의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노후준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노후대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개인별 상황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중고령 장애인 노후대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장애유형별로는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구분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 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장애인과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을 구분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소득보장, 건강, 여가, 생활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다섯째, 여성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섯째,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분리된 환경 속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설계 지원을 통한 노후대비가 필요함. 이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사안이지는 하나, 특히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으로 대변되는 정신적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평생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평생계획 수립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함

정책제안 및 반영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으로 6가지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24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첫째, 중고령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에서는 중고령 장애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한 ‘경증 중고령 장애인 직업훈련 전용반’ 운영, 중증 중고령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사업 확대, 중고령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중고령 장애인 중심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함

둘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지원 영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지원,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함

셋째,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중고령 장애인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중고령 장애인 다빈도 질환 관리체계 구축, 중고령 장애인 대상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중고령 장애인 다빈도 질환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노화고령사회 연구센터 설치가 필요함

넷째, 여가문화활동지원 영역에서는 중고령 장애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바우처 및 문화시설 이용 요금 감면 확대, 장애인 전용 문화 공간 설치, 중고령 장애인 자원봉사단 운영을 제안함

다섯째, 생애설계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생애설계 매뉴얼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생애설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생애설계 전문가 양성, 장애인 노후대비 인식개선이 필요함

여섯째, 노후대비 지원체계 구축 영역에서는 장애인 노후대비 법적 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 장애인 노후대비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지역사회 중심 노후대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고령 장애인 대상 노후육구 파악 및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함

V. 주거복지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

이복실, 전미자, 김창식, 이의정, 간기현

요약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거주시설의 개념과 기능이 재정립되었으며,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되고 있으며 거주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기능보강 등의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적 요소가 산재해 있으며 거주시설 주요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배치, 거주인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인과 구성요소 등에 대한 지침이나 참고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거주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공간배치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주시설은 전체 1,246개이다. 이 중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490개소 거주인원은 25,3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주시설 환경인식, 거주환경 문제점, 거주시설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거주시설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제공될 것과 기능보강 예산을 산정할 것 그리고 거주시설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적 요소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 거주시설 운영과 설치 등과 관련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기관방문 및 실무자 의견수렴, 문헌검토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유니트별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를 제안하였다. 복지디자인은 복지분야에 디자인을 접목시킨 것으로 복지시설 이용자나 거주인의 욕구와 감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디자인은 기존의 배리어 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물리적 요소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이미지나 감성이 미치는 측면까지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주시설 모형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다양, 삶의 기본적 질을 유지한 공간확보, 기존의 공간구성보다 퀄리티 높은 공간과 형태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는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장애인복지법(2012) 개정으로 거주시설의 개념과 기능이 재정립되었으며,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었음. 한편,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기능보강 등의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전히 시설적 요소가 산재해 있음. 거주환경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설 관련자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공간배치, 거주인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인과 구성요소 등에 대한 지침이나 참고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는 거주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거주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공간배치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모형을 설계하고자 함. 다양한 거주유형에 적합한 평면도를 제시함으로써 거주시설 주요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연구방법과 내용

- 문헌조사 : 장애인 거주시설 및 거주인 현황을 파악한 후, 환경의 영향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거주시설의 서비스 제공원칙을 제시함
- 기관방문 : 장애인 거주시설의 내·외부 환경실태 파악을 위해 거주유형별로 살펴봄. 특히 최근에 신축된 소규모 시설 중, 거주인의 특성과 복지시설에 디자인을 접목시킨 시설을 중심으로 방문함
- 초점집단면접(F.G.I.) : 장애인 및 거주유형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호남권과 수도권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함

II. 이론적 고찰

1. 장애인 등록 및 거주시설 현황

○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은 총 2,519,241명임.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나타남.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장애인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1>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2011)

(단위 : 명)

장애유형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	등록장애인 수
지 체	1,333,409	신 장	60,110
시 각	251,258	심 장	9,542
청 각	261,067	호흡기	14,671
언 어	17,463	간	8,145
지 적	167,479	장루·요루	13,098
뇌병변	260,718	안 면	2,715
자 폐	15,857	간 질	8,950
정 신	94,739	합 계	2,519,241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 58호 재구성.

○ 거주시설 현황

-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분류됨.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246개소 25,345명 이용

<표 2>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유형	시설수	이용인원
합계	1,246	25,345
지체장애	39	2,102
시각장애	15	787
청각장애	9	361
지적장애	226	10,788
중증장애	191	10,798
장애영유아	10	509
단기보호시설	119	-
공동생활가정	637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2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재구성.

2.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원칙

1) 정상화 이론과 집단거주서비스

- 정상화이론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양식과 조건을 주류사회의 규범과 양식에 가깝게 하는 것을 추구함. 이러한 정상화이론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적용시킬 경우 집단거주서비스는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환경 5요건
 - 거주서비스는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거주자는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함
 -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사회 내 거주와 마찬가지로 거주와 간호기능이 분리되어야 함
 - '전문화'를 통해 이질적 집단을 분리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서로 다른 거주 단위 간, 거주와 간호를 함께 또는 분리해서 제공하는 거주단위 간에 기능적 연속성이 있어야 함

2) 소규모 지향의 거주시설 서비스

- 거주서비스의 원칙 :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함
 - 이용자의 자유와 자기결정이 보장되어야 함
 - 보통의 집과 유사한 거주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연속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생애주기별 거주서비스
 - 아동을 위한 거주서비스 : 일반주택 및 아파트에서 양육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학교 통학으로 또래 아동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성인을 위한 거주서비스 : 거주공간에서 생산적이고 보수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중심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야 함
 - 고령장애인을 위한 거주서비스 : 거주인들의 원가정이 있는 지역사회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인들을 위한 가정으로 통합되어야 함
- 생애주기형 거주공간
 -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거주시설에 barrier-free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생애주기형 거주공간의 디자인 16가지 특성을 가짐
 - : 넓은 주차공간, 집과 주차장의 거리 최소화, 완만한 경사로, 접근용이한 문턱, 아파트단지 내 편리한 접근, 휠체어용 넓이 확보, 휠체어 회전가능한 공간 확보, 출입구에 거실과 간이침대 배치, 화장실 출입구 위치 고려, 개조가 가능한 내벽, 계단용 리프트, 안전한 이동통로, 충분한 화장실 내부공간 확보, 낮은 창틀, 안전한 높이의 소켓과 통제 등

3)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원칙

<표 3> 장애인의 적절한 주거 기준 9가지

적절한 주거원칙	의미
점유 안정성	▪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해야 함
안전	▪ 시설구조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함
시설 확보	▪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함
접근가능성	▪ 가격에 부담이 없고,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쾌적성	▪ 적절한 거주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온도·습도·채광·방풍 등이 적절해야 함
비차별성	▪ 장애유형,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다양성 보장	▪ 장애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사생활보장	▪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사회통합	▪ 지역사회 내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Malone, A.(2003). Breaking Down the Barriers-Social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urope.

3.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의 중요성

○ 건물의 의미

: 건물은 대중이 서비스나 이용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기능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매개물로서 계획되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은 가장 거주인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설계되어야 함
- 외진 곳에 자리한 시설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거주인과 가족에게 불편함을 주며 직원들의 전문적, 과학적 고립을 초래함
- 거주인의 생활공간을 최대한 한 눈에 볼 수 있으면서, 직원들의 쉼을 위한 공간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함

○ 환경이 미치는 영향

- 건물은 거주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
- 건물의 외관은 객관적이지만 건물을 인식하는 것은 주관적이어서 관계자나 지

역주민들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음

- 적당한 온도와 환기, 색채 장식, 유해한 냄새제거, 불필요한 소음제거 등 환경요인을 조성하여 거주인의 적응력과 신체성장, 개별화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
- 상담실, 화장실, 거실 등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대기실은 커튼, 미술품, 화분 등으로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표 4> 서비스 최저기준 : 7영역 환경

기 준	원 칙
기준 25. 시설과 설비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
기준 26. 개인침실 ; 공간요구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준 27. 개인침실 ; 가구와 시설물	이용자는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와 부속품이 있는 침실을 제공받음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이용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화장실과 욕실을 제공받음
기준 29. 공용 공간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함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음
기준 31. 위생과 감염 예방	이용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함

Ⅲ.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에 관한 의견수렴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실무자 총 10명, 호남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실시
- 조사방법 : 거주환경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G.I.) 실시
- 조사내용 : 거주시설 환경실태에 대한 실무자 이해나 인식정도,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의 문제점, 거주시설의 제도개선에 관한 견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

2. 실무자 면담결과

<표 5> 면담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거주시설 환경 인식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 현실적 한계	- 가정과 같은 공간이 중요함에 동의하나 어려움 산재함 -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무진의 부담
	거주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주인 반응	- 개인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의 변화 - 정서적 안정감이 생겨나고 문제행동이 감소함 - 현관문을 본인이 버튼기 누르고 들어오거나 각 방에 문 패다는 것 만족
거주환경 문제점	산재한 시설적인 요소	- 복도식 배치, 창살 있는 창문, 외곽에 위치, 큰 표지판 - 규모가 큼, 락스 냄새, 초대형 신발장 -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창 - 모든 방의 가구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작된 것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존중할 공간 부족	-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릴 공간이 필요함 -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 필요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
	거주 환경에 대한 공무원 이해부족	- 거주인의 특성과 무관한 시설 배치 및 전환 - 전체를 보기보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인식하는 경향
거주시설의 제도개선 사항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 지역사회에 위치한 경우 굳이 시설임을 드러내지 않아 야함 - 건축단가가 현실적으로 미흡함. 표준건축비에서도 차이남 - 불필요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초기 예산 추계시 디자인 비용을 반영	-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이중 작업을 줄이기 위한 방법임 - 거주인의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고려할 것이 요구됨
	신축이나 리모델링시 고려할 표준 지침 마련	- 노인시설처럼 시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함 - 시설을 건축할 때부터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함 - 지침서 제공으로 예산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음
	시설 이해 위한 담당 공무원 기관방문	- 탁상공론이 아닌 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요구됨 - 시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기타 의견	거주인의 눈높이로 환경의 중요성 깨달음	- 거주인의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보니 다르게 보임. 거주 환경 인식이 중요 - 1인실 필요 : 폭력적인 사람도 방안의 구조나 환경에 따 라 변화가 생겨남
	거주시설 환경개선예 영향을 미치는 대상	- 담당공무원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큼 - 1순위 기관장, 2순위 공무원
	집과 같은 시설이란	- 거실이 있고 각 방이 나뉘어져 있고 복도식이 아닌 것 - 거주인이 선택하거나 원함에 따라 할 수 있는 공간 - 전형적인 시설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것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제 공되어야 함
- 기능보강 예산을 산정할 때 예산활용도를 높이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이 디자인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함
- 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커리큘럼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거주시설에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시설적인 요소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거주시설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모색되어야 함

IV. 복지디자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1. 복지디자인의 이해

- 복지디자인이란 복지 분야에 디자인을 접목시킨 것으로 여가, 의료, 주거 등 복지시설 이용자나 거주인의 욕구와 감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는 것
- 복지디자인의 적용은 이미지나 감성이 미치는 측면까지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 므로 물리적 환경을 주로 다룬 기존의 barrier-free나 유니버설디자인과 차별됨
- 거주시설의 환경분석에 기초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함
 - 기구나 설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
 - 거주인의 이용권과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
 - 거주인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
- 복지디자인 주요 원칙
 - 약자를 위한 디자인 : 조기 고령화에 대한 장애인구의 급증
 - 통합 디자인 : 다양한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디자인 필요
 -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용소

- 장애인 거주시설 설계시 고려사항
 - 거주인의 건강과 안락함을 위한 환경 조성
 - 비상시에도 안전한 환경 확보
 -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최대화
 - 장애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
 - 지역사회 연계 및 교류 활성화

2.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

- 모형 개발 방향
 - 이용의 편의성 확보 : 유니트를 조합하면서 시설의 기본 질을 확보한 기본도면의 완성
 - 시설에 들어가야 할 각 용도의 실들을 유니트화하여 기본형태를 개발
 - 각 실들의 기본형태 치수를 공통화 할 수 있는 모듈 개발
 - 관리 및 배치를 위한 각 유니트를 조합한 기본거주단위 개발
 - 삶의 기본적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각 유니트의 기본적 크기 제시
 -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 유니트 조합
 - 가정적 분위기의 공간구성
 - 필요 기능을 충족 할 수 있는 최소 공간 확보
 - 질적 향상을 위한 모형제시 : 좀 더 높은 퀄리티의 공간 및 형태 제시
- 모형 활용 방법
 - 이용의 다양성 확보 : 여러 조합의 예를 응용하면 다양한 부지에 배치 가능
 - 부지 형태에 따른 유니트 조합의 예 제시
 - 부지 형태에 따른 기본주거단위 조합의 예 제시
 - 시설의 성격에 따른 거주 부분과 관리 부분의 조합의 예 제시
 - 부지의 크기에 따른 저층형, 고층형, 조합의 예 제시

- 변화에 적응 가능한 건축구조 확보 : 향후 증축, 리모델링 등이 용이한 구조를 제시
 - 향후 요구의 변화 등에 적응 가능한 건축구조인 라멘 구조(기둥, 보, 슬라브로 구성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제시
 - 제시한 건축구조에 의한 유니트 및 주거단위 조합의 예 제시
 - 제시한 구조에 의하고 설비 등의 필요에 의한 건축물의 기본 높이 제시
 - 제시된 기본평면, 단면을 기본으로 한 입면 제시
 - 제시된 평면과 단면을 적용한 입면의 예 제시
 - 제시된 입면을 바탕으로 외부 기본 Sketch 제시
- (*unit별 평면도, 조합평면도, 기본단면도, 전체평면도, 입면도 등 세부 내용은 연구보고서 참고)

V. 결론 및 제언

- 거주서비스 원칙, 거주환경 중요성 등 공유와 심층적 논의 정례화
 - 그동안 안전과 보호 기능에만 치중했던 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공간 구성 및 배치, 색깔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거주시설 관련자들이 거주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기능보강 예산을 산정할 때 디자인 비용에 대한 예산추계
 - 기능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기능보강을 실시한 경우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등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거주환경의 변화는 거주인의 정서와 심리 안정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
- 거주시설 담당공무원 대상의 거주환경 중요성 교육 이수
 - 담당공무원은 거주환경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침. 공무원의 이해 수준에 따라 거주시설 환경변화를 기대하거나 업무 수행이 효율적일 것임. 따라서 거주시설의 환경 개선과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요구됨

정책제안 및 반영

거주환경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복지디자인을 적용하고 장애유형별 모형을 설계한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거주환경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공유하고 거주서비스의 주요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주요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함. 거주환경의 변화는 시설만의 노력만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수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거주인의 주거권에 근거하여 기존의 안전과 보호의 기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둘째, 기능보강 예산의 산정시 일정 금액이 디자인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함.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설계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경우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변경하는 비효율적 사례들이 다수 발생함. 따라서 공사 전에 거주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복지디자인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셋째, 거주시설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거주환경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 담당공무원은 거주환경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실천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Ⅵ. 고용 및 직업재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혜경, 이진숙, 송창근

요약

본 연구는 취업과 취업 이후에 특별하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에서 직업재활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현황과 동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평가 내용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외국의 직무보조인 지원사업과 직무보조인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 직무보조인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근로지원인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양적조사로는 사업수행기관, 직무보조인,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욕구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질적조사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직무보조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대부분이며, 직무보조인은 20대(60.9%)인 여성(85.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의 60.0%에서는 직무보조인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은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직무보조인, 사업수행기관 등 모든 사업의 참여자들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 유지와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유로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업수행기관과 이용자 측면인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측면에서 모두 동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업의 지속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사업예산의 부족과 사업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직무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직무보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관련 경험이 없는 직무보조인을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무보조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핵심업무와 그 외 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직업재활전문가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직무보조인 모집, 선발, 교육 및 배치에 이르기까지의 양성 및 관리 체계를 본원 중심으로 구축하고, 지역의 재활학과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직무보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바, 예산확대를 통해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점차 늘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해 취업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 초기에 직장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보조인에 의해 특별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 직무보조인을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체 현장에 배치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유지 이외에 고용주와 동료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임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유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의 한 방법이며,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테두리 안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므로, 사업시작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적 중심의 평가로 장애인과 직무보조인 등 당사자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해 본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실태와 사업 참여자들의 욕구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사업의 확대와 지속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중증장애인의 고용현황과 특성 분석,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고, 직무보조인 지원사업과 유사 서비스 및 사업 현황을 비교·분석함
- 설문조사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직무보조인, 장애인근로자, 그리고 장애인을

- 채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자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포커스그룹인터뷰
 - 직무보조 지원사업의 주최인 수행기관 사업담당자, 직무보조인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또는 참여 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토론
 - 자문회의
 -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 및 제언의 적절성 등 연구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학계, 관련 전문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2회 실시함

II. 중증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1.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및 특성

- 장애인의 실업률은 2011년도 7.8%이며,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중증장애인은 16.3%, 경증장애인은 41.4%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더 낮음
- 장애인 취업자 중 경증장애인의 비율은 83.4%이고, 중증장애인은 16.6%로, 장애정도가 장애인의 취업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침. 또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업종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4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9%, 사무종사자 12.1% 등의 순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이 안정된 고용인 취업을 통해 가족 및 사회 내에서 생산적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8가지로 정리·제시함
 - 직업상담 :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직업재활 전 과정에 기초가 되는 단계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수집, 재활계획 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 상담활동
- 직업(능력)평가 :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및 제한점, 잠재능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 및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 직업적응훈련 : 장애인이 실제적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 대인관계, 출퇴근 등 개인 및 사회생활, 직업인식과 탐색, 직무수행과 직무환경적응, 직무능력향상 및 직무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훈련업종을 선택하여 훈련
- 취업알선 : 장애인의 흥미, 욕구, 직업적 능력, 직무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고 배치하는 서비스
-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고용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유상적 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취업 후 적응지원 : 취업된 이후 직장생활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취업상태를 지속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사례관리 : 취업욕구가 우선인 대상자에게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상담 및 평가,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조정하여 사업체 배치와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활동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업재활전문가는 재활상담, 사례 발굴 및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취업지원, 장애인식개선, 정보활용, 직업평가, 직업지도 및 직무개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함

Ⅲ.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현황

1.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개요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취업 이후에도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직장적응에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2012년 9월부터 본원에서 시작된 사업임
-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 취업 초기에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보조인에 의한 취업 후 적응지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도모하는데 있음
 - 직무보조인은 수행기관 1개소에 2인 이내로 배치하며, 직무보조인 1인당 중증장애인 최소 50명(월기준 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후 6개월 이내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2012년 9월 1차 수행기관 15개소를 시작으로 동년 11월 8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013년 6월 기준, 총 23개소에서 수행중이며, 본원에서는 23개소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음
 - 사업평가 결과,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수행한 6개월간의 취업인원은 전년 동기 기간 취업 장애인 수보다 평균 7.1명이 많아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는 138일로, 전년 동기 기간의 장애인근로자 평균 근무일수인 139일보다는 1일 적게 나타남

2. 직무보조인의 역할

- 일반적인 직무보조인의 역할은 ① 장애인을 고용주와 동료들에게 인사시키기, ② 어떻게 직무를 하는지 가르치거나 슈퍼바이저가 장애인을 가르치는 것을 관찰하기, ③ 추후에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이 동료들과 supervisor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관찰하기, ④ 생산성이 중요한 경우라면, 몰래 시간을 측정하기, ⑤ 장애인이 불가능한 기준선을 정하지 않도록 동료들의 생산수준을 관찰하기, ⑥ 장애인이 동료들과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직장 내 공동 문화 관찰하고, 적절한 시간에 담배를 피고 휴식을 취하며, 농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등과 같이 관찰한 것에 대해 장애인과 함께 논의하기, ⑦ 장애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지시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⑧ 지원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직무를 조직화하고 기억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 원조하기, ⑨ 필요한 경우 동료들 혹은 고용주와의 의견 차이를 중재하거나 장애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⑩ 지원을 점차 줄여가기가 포함됨

3. 유사 사업 현황

○ 근로지원인 제도

-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 중인 장애인근로자 등임.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성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주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하며,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며, 장애유형별로 구분을 달리하여 지원함
- 근로지원인에게 지원하는 단가는 시간당 6천원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은 시간당 9천원임
- 근로지원인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자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서비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2급 장애인,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함.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입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신청자의 지원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에게 등급을 구분하여 지원함. 1등급 919천원(약 107시간), 2등급 738천원(약 83시간), 3등급 556천원(약 65시간), 4등급 374천원(약 43시간)임
- 서비스 내용은 활동보조(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의 업무)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임
-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8,550원이고 심야(22시~06시), 공휴일의 경우 10,260원임
- 활동보조인의 자격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등 전문이수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임

○ 외국의 유사제도

-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에서 1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배려는 근로관련 원조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호서비스 형태의 직장내 활동보조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미국 내 직무지도인(job coaches)이 제도화 된 것은 1984년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과 취업후 적응지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임. 재활서비스국(RSA)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직무보조인 또는 직무지도인이라고 불리는 job coaches를 고용전문가(employment specialists), 때로는 직무훈련 전문가(job training specialists), 직무개발 전문가(job development specialists) 등으로 부름
- 일본의 경우, 잡코치 제도는 '장애인, 사업주 및 해당 장애인의 가족에 대해 장애인의 직장적응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적응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잡코치의 종류는 ① 장애인직업센터 소속 잡코치 ②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잡코치(제1호 잡코치) ③ 장애인 고용 기업에 소속된 잡코치(제2호 잡코치)로 구분됨
-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어 주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을 해야 하며 근로지원인은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에 국한되는 점에서 기존 잡코치와 차별됨. 근로지원인 신청 자격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근로지원인 신청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에서 관할함. 근로지원인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사회법전」 제73조의 일자리여야 함

○ 소결

- 직무보조인의 역할범위에 있어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무보조인의 핵심업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기간에서 국내의 활동지원서비스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이용자 부담금이 있고 주단위 혹은 월단위의 최대 이용 시간을 정하고 있어 직무보조인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음
- 현장에서는 6개월의 사업기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무보

조인 고용을 통한 긍정적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사업운영 및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IV.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1. 수행기관 실태

○ 조사개요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를 35개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전자우편(e-mail)조사 병행 실시하여 회수율은 94.3%(33개소)임
- 조사내용은 기관일반현황 9문항, 직무보조인 인적자원 현황 14문항,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운영현황 20문항, 애로점 및 개선사항 7문항임

○ 일반현황

- '장애인복지관' 90.9%(30개소), '장애인단체' 9.1%(3개소)이고, 소재지역은 '서울' 45.5%(15개소), '경기관' 21.2%(7개소) 등의 순임
-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자 수는 '3인 이상~6인 미만' 48.5%(16개소)로 가장 많고, 평균 직업재활 담당자 수는 5.03명으로 조사됨. 기관당 평균 지원고용 담당자 수는 1.65명임

○ 직무보조인 인적자원 현황

- 기관당 평균 직무보조인 수는 1.24명이며, 여성이 85.4%(35명), 남성이 14.6%(6명)임. '20대'가 60.9%(25명)로 가장 많으며, 자격사항(복수응답가능)은 '사회복지사' 65.2%(30명), '직업재활사' 19.5%(9명) 순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6개월 미만'이 41.9%(13명)로 가장 높으며, 평균 1인당 담당하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8.35명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상~45시간 미만' 이 85.4%로 가장 많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15시간임
- 직무보조인 모집 및 선발방법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기관 자체 홍보를 통해'가 각각 33.3%(6개소)이며, 모집 및 선발시 어려움은 '직무보조인 지원자 부족'이 60.0%(9개소) 가장 높았음

○ 사업 운영현황

- 직무보조인 서비스 대상 장애인근로자 수는 '10인 이상~15인 미만'이 33.3%(11개소)로 가장 많으며, 기관 평균 장애인근로자 수는 11.8명임. 가장 많이 시행하는 지원서비스는 '핵심직무지도 지원'으로 23.2%(23개소)이며, '대인관계 및 직장적응 지원'은 18.2%(18개소)로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에 도움정도를 평균 8.00점,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정도는 평균 7.79점으로 전반적으로 직무보조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기관에서 느끼고 있음

○ 애로사항 및 개선점

-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은 '직무보조인의 모집 및 선발' 35.9%(23개소), '직무보조인의 서비스 지원 범위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 18.8%(12개소),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 동의 과정의 어려움' 12.5%(8개소) 등으로 나타남
-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지속적 지원' 31.6%(29개소),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예산확대' 28.3%(26개소), '개발원 중심의 직무보조인 교육실시 및 관리' 15.2%(14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직무보조인 실태

○ 조사개요

- 직무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총 45명을 대상으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조사를 실시함. 총 43명의 직무보조인이 조사에 응하여, 회수율은 95.6%임

○ 일반현황

- '여성'이 83.7%(36명), '30세 미만' 60.5%(26명), '대졸' 60.5%(26명)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사회복지' 60.5%(23개소), '직업재활' 20.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무현황

- 1인당 월평균 서비스 제공횟수는 '10~19회' 44.4%(16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총 서비스 제공횟수는 '40~59회' 41.2%(14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보조인 관련 교육 중 가장 필요한 교육은 '직무보조인 역할' 34.1%(30명),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27.3%(24명), ‘직무보조인 사업에 대한 개념’ 25.0%(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 직무보조인 업무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인당 월평균 서비스 제공 횟수		11.3회	
월평균 총 서비스 제공 횟수		77.2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월평균 서비스 제공 횟수		9.8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총 서비스 제공 횟수		46.5회	
교육시기	서비스 시작 전	39	95.1
교육시간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8	84.8
개발원 사전교육	교육 참석 여부	16	37.2
	교육 도움 정도	12	75.1

- 사업 수행시 어려움으로는 ‘업무관련 전문지식 부족’ 37.5%(18명), ‘사업주 및 직원과의 마찰’ 25.0%(12명), ‘장애인근로자 지원 이외의 행정업무’ 20.8%(10명) 등임
-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20.9%(27명), ‘대인관계 및 직장적응에 관한 지도’ 17.8%(23명), ‘작업태도에 관한 지도’ 17.1%(22명) 등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직무유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중증장애인의 직무유지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 직무보조인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개소, 점)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균
직무유지에 미치는 영향	16(37.2%)	24(55.8%)	3(7.0%)	-	-	3.95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25.6%)	29(67.4%)	3(7.0%)	-	-	4.15
사업주 인식개선	6(14.0%)	29(67.4%)	8(18.6%)	-	-	3.95

○ 애로사항 및 개선점

- 직무보조인의 임금 확대, 직무보조인 교육의 확대 및 실제 업무와 관련된 교육 필요,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근로자 직업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3. 장애인근로자 실태

○ 조사개요

- 직무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 175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147명이 조사에 응하여 회수율은 84.0%임

○ 일반현황

- '남성' 62.5%(90명), '20대' 58.3%로 절반 이상이 20대의 남성장애인임. 학력은 '고(졸)' 73.6%(106명), '대(졸)' 18.1%(26명)이며, 총 직장경험 개월 수는 '12개월 미만' 54.9%(45명)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현황

- 지원받는 서비스는 '직무수행에 관한 지도' 20.9%(27명), '대인관계 및 직장적응 지도' 17.8%(23명), '작업태도에 관한 지도' 17.1%(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횟수는 '월 10회 미만' 53.1%(68명), '10~19회' 32.1%(42명)로 월평균 10회로 조사됨
- 서비스 이용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직무보조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19.3%(26명),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 14.8%(20명), '직무보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11.9%(16명) 등으로 나타남

○ 사업 만족도

- 장애인근로자는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에 대해 취업유지와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3> 장애인근로자의 지원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개소,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균
취업유지 도움정도	59(41.0%)	71(49.3%)	-	-	-	4.29
직무보조인의 장애 및 직무이해도	54(37.5%)	64(44.4%)	25(17.4%)	1(0.7%)	-	4.19
직무보조인의 문제해결 정도	60(41.7%)	60(41.7%)	22(15.3%)	2(1.4%)	-	4.24
사업주 및 동료의 인식개선 정도	53(36.8%)	51(35.4%)	38(26.4%)	2(1.4%)	-	4.08
서비스 지속 욕구	79(54.9%)	48(33.3%)	16(11.1%)	1(0.7%)	-	4.44

○ 애로사항 및 개선점

- 직무보조인이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과 횟수를 늘리고, 업무시간 이외 상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욕구가 있음.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간 대화가 어려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의 직무지도원이 필요함

4. 장애인 고용 사업체 실태

○ 조사개요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35개소의 사업 담당자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14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반현황

- 사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75.7%(84개소)로 가장 많으며, 사업체 유형은 '서비스 업'이 61.3%(68개소), '생산·노무업' 27.0%(30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됨.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0인~30인 미만'이 33.3%(3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50인~100인 미만'이 27.0%(30개소)로 나타남

○ 직무보조인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특히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유지 도움정도'의 평균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직무보조인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개소,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정도	42(37.8%)	56(50.5%)	12(10.8%)	-	-	4.25
장애인근로자의 동료관계 향상정도	40(36.0%)	56(50.5%)	13(11.7%)	-	-	4.21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유지 도움정도	57(51.4%)	46(41.4%)	8(7.2%)	-	-	4.44
사업주 및 동료의 인식개선 정도	44(39.6%)	54(48.6%)	12(10.8%)	-	-	4.27
직무보조인 사업 지속 필요성	57(51.4%)	50(45.0%)	4(3.6%)	-	-	4.48

5. 포커스그룹인터뷰

○ 조사개요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8개소에서 사업담당자 4인, 직무보조인 4인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현황, 직무보조인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사항, 사업 개선 방향의 네 영역에 대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 조사결과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운영현황, 직무보조인 업무 관련, 직무보조인 교육 관련, 직무보조인과 장애인근로자의 관계,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효과,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개선방향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15개의 하위 범주들로 재구조화 함

<표 4-5>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결과

구 분	범주화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참여 인력 현황 직무보조인 모집 및 선발 과정 직무보조인 배치 과정 전반적인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운영과정
직무보조인 업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보조인의 업무수행과정 직무보조인의 역할 직무보조인의 주요 업무 이외의 부가 업무
직무보조인 교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보조인의 교육 욕구 교육 확대 필요성
직무보조인과 장애인근로자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근로자와의 라포형성 장애인근로자와의 마찰 경험 및 사례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방법 및 결과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으로 인한 변화 경험 및 사례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V. 결론 및 제언

1. 직무보조인의 역할 정립

- 현재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규정상 직무보조인의 역할을 광범위한 영역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직무보조인의 업무가 모호한 상태임. 또한 많은 업무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무보조인의 역할을 주요한 몇 가지로 한정되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직무보조인 역할을 핵심업무와 그 외 지원업무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직무현장과 직무현장 밖에서의 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사례회의에 직무보조인도 반드시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2. 직무보조인 사업 운영관리 측면 개선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낮은 수준의 임금, 단기고용의 계약직의 특성으로 직무보조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 사업주와의 트러블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직무보조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식, 돌발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등과 같이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및 직무보조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업운영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보조인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직무보조인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함.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에서는 직무보조인의 역할을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혼란스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약이 있어 핵심업무와 기타 지원업무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직업재활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둘째, 직무보조인 양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직무보조인 모집, 배치, 교육,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바, 본원에서 직무보조인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셋째, 사업의 예산확대 및 직무보조인 처우개선 필요.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효과성은 입증된 바, 예산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늘리고 수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보조인의 근무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와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전동일, 신현욱, 신숙경, 김성진, 최미선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대상과 방향, 외국의 장애인 스마트워크 사례의 시사점,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 마지막으로 적합 직종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대상은 신체적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고, ② 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장애인이어야 하며, ③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였거나 습득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즉, 외상장애인 등과 같이 이동의 제약이 심하나 자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장애인 스마트워크 방향은 일반적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승계받는 부분과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생성되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①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②유연한 근무형태(재택근무), ③자발적인 업무 수행으로 개념을 구성되고, 후자는 ①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들의 자신감 부여, ②다른 고용형태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 ③적합한 인력의 선발, 교육, 배치를 위한 지원체제로 개념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은 장애인 스마트워크 통해 장애인의 제약과 차별 편견을 제거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미국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는 장애인 원격근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알선, 직무배치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교육훈련 수행과 민간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모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으로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안전행정부의 추진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중 일부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센터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평가, 훈련, 고용계약, 고용 및 사후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고급 기술인력 배치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한다.

다섯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적합 직종과 인프라에 대한 살펴보았다. 장애인 적합직종은 시청률조사원, 인터넷소설가, 번역가가 제안되었으며,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안)'내에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보통신, 스마트 모바일 기술 등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이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사회적 현안을 ‘스마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자 2010년 7월에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스마트워크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면 장애인 스마트워크 논의의 출발점은 이동상의 제약을 극복하여 일자리 접근성 향상에 있음
- 장애인 스마트워크 연구의 첫 시작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스마트워크, 일명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을 제시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 스마트워크 대상은 누구인가
 - 둘째, 장애인 스마트워크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셋째, 외국의 장애인 스마트워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 넷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은 어떠해야 하는가
 - 다섯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적합 직종과 인프라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 스마트워크 연구 동향과 사례 조사를 위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음
- 장애인 스마트워크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음

- 장애인 적합형 스마트워크 직종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의 사결정모형(AHP)를 이용하여 분석함

II. 이론적 배경

1.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스마트워크와 비슷한 개념으로 혹은 하위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본 보고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무형태'로 정의하였음
- 스마트워크는 업무 공간을 기준으로 재택근무, 이동근무, 센터(사무실 이외의 제 3의 장소에 설치)근무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발표한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의 분류에 따름

2.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대상과 방향

- 일반적인 스마트워크와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개념상의 차이점
 - 일반적인 스마트워크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
 - 일반적인 스마트워크 개념의 근무형태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센터근무 등의 형태를 말하나, 장애인 스마트워크 개념은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주로 논의
 - 일반적인 스마트워크는 대면 보고 문화 등을 극복하여 지향해야 할 근무 형태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출근을 지향하나, 일부 중증장애인이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근무 형태로 이해
-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개념 구성 원칙
 -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특수한 사업의 한 형태

-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의 적용이 중심
-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적합한 인력의 선발, 교육, 배치도 고려
- 성과는 취업자 수가 아닌 취업자의 영향력으로 평가
- 장애인 스마트워크의 대상이 갖추어야 할 조건
 -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 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장애인이어야 함
 -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였거나 습득이 가능한 연령층이어야 함
- 장애인 스마트워크가 지향해야 할 방향 또는 개념적 구성요소
 - 일반적인 스마트워크 개념을 승계 받는 부분은 ①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②유연한 근무형태(재택근무), ③자발적인 업무 수행으로 구성
 -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부분은 ①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들의 자신감 부여, ②다른 고용형태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 ③적합한 인력의 선발, 교육, 배치를 위한 지원체계로 구성

Ⅲ. 스마트워크 근로장애인 및 실무자 대상 FGI

1. 조사 개요

- 스마트워크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장애인과 스마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한 달 동안 FGI를 대상 집단별로 실시
- 세 차례 진행된 FGI는 스마트워크 근로장애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스마트워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스마트워크 근로장애인 FGI 조사 결과

- 스마트워크 운영방식

- 근로장애인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 관리, 불법 사이트 감시, 모니터링에 집중되어 있음
 - 이들의 근무시간은 평균 4.8시간으로 최단 근무시간은 3시간부터 최장 근무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근무시간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회사에서 정해 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음
- 스마트워크 관리방식
- 재택근무 시 스마트워크를 위한 업무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 모두 스마트워크를 위한 매뉴얼은 없다고 하였고 일부 참여자는 일반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기존 직원이 신규 직원을 일정 기간 동안 멘토링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음
 -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교육은 업무 관련 교육과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 문서 작성 교육 필요
 - 출·퇴근 관리는 메신저에 로그인 하거나 카페에 댓글 남기기, 메일을 보내는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사소통은 전화나 인터넷(메신저, 메일)을 통해 이루어짐
- 스마트워크 적용 가능성
- 근로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기관차원의 고려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면 좋겠다는 의견과 장애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제공했다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장애인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비장애인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추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할 때 고려사항은 장애인 근무자들의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업무 환경의 제공
 - 또한 스마트워크 관리시스템과 정당한 임금 책정 필요
 - 스마트워크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 도입에 대해 예산 낭비라며 불필요하다는

- 의견과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자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
- 장애인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장애인 스마트워크를 수행해야 하며 정보통신 기기, 보조기구, 사용료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스마트워크를 위한 훈련 및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참여자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

3. 스마트워크 실무자 FGI 조사 결과

- 스마트워크 운영방식
 - 스마트워크(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그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업무 지시나 점검을 하고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업무 지시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택근무의 소득 수준은 최저 임금 수준 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스마트워크 관리방식
 - 대부분의 업체가 메일이나 전화로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장애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업무량으로 대체
 - 인력부재,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마트워크 근무 시 애로사항
 - 실무자들은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지시와 관리가 어렵고 이에 대한 근무 평가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워함
 - 실무자들은 근로장애인들의 근무시간이 기관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질문이 생겼을 때 혼자 처리하기가 힘들어한다고 인식
- 스마트워크 적용 가능성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적합 직종
 - 기초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인 문서 편집 및 교정, 웹 접근성 평가, 블로그

관리, 고객 상담원, 전산자료 입력, 텔레마케팅, 모니터링 등이 있었고 그 외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그래픽 작업, 앱 개발자 등

-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 스마트워크로 활용 가능한 직종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직종이 개발되었을 때 참여가 확대 가능
 - 스마트워크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 도입이 장기적으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는 장애인들의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임
- 장애인 스마트워크 적합 일자리의 요건
 -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여부
 - 일자리 선택 시 장애인의 이점 여부
 - '스마트'라는 용어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필요
 -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일자리 창출 필요
 - 일자리의 분류 필요
 - 기존 시설의 한계점 인식
- 장애인 스마트워크 전략 일자리
 - 전략 직종으로 선택된 일자리를 분류해 보면 상담직에 해당할 수 있는 전화고객 상담원, 사회보장민원처리 상담원, 행정민원상담사무원, 텔레마케터가 있고 조사원은 고객서비스만족도 조사원, 모니터요원, 시청률 조사원, 조사자료 처리원, 입력원이 있었음

IV. 스마트워크 장애인 적합 직종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스마트워크 장애인 적합 직종 도출은 가상적으로 장애인의 직업 배치를 설계해 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보고 대안 마련
- 조사 방법
 - 예비조사는 2013년 8월에 연구자나 실무자를 포함한 5명의 전문가로 대상으로

이루어짐

-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5명, 실무자 5명, 연구자 5명을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2011)에서 발간하는 '2012년 한국직업사전' 중 일부 직업을 추출하여 직업 목록으로 제시

○ 조사 내용

- 장애인 적합형 스마트워크 직종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확인: 쌍대 비교 방식으로 질문하였고 구성요소는 IT지식기반, 저 이동성, 독립 수행성, 재택근무 가능성 제시
- 직업에 대한 구성요소별 스마트워크 장애인 직종 적합성 파악: 5점 평점척도 방식으로 각 직업별로 구성요소별 적합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직업사전에서 1차 추출한 103개의 직업에 대해 4개 영역(IT지식기반, 저 이동성, 독립 수행성, 재택근무 가능성)을 1~5점으로 평가

2. 조사 결과

○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반영도

- 세 의사결정 집단인 장애인, 실무자, 연구자에게 세 집단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하여 다수의 의사결정자의 의사를 통합
- 의견 반영 중요도는 장애인(.573), 실무자(.281), 연구자(.146) 순임

○ 장애인 적합형 스마트워크 직종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재택 근무가능성'(.29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독립 수행성'(.274), 'IT·지식 기반'(.246), '저 이동성'(.184) 순

○ 직업에 대한 구성요소별 스마트워크 장애인 직종 적합성

- 1순위 '시청률조사원'(.726), 2순위 '인터넷소설가'(.723), 3순위 '번역가'(.701), 4순위 '웹디자이너'(.694), 5순위 '게임음악가'(.690), 6순위 '인터넷쇼핑몰운영자'(.690), 7순위 '게임그래픽디자이너'(.688), 8순위 '게임운영자'(.686), 9순위 '정보검색원'(.683), 10순위 '방송모니터요원'(.680) 순
- 적합 직종이 취업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여건과 개별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V.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형 및 기반 구축 방안

1.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형

- 장애인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 스마트워크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스마트워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센터를 말함
 - '장애인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는 IT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펀딩을 통해서 설립할 수 있고, 이후 운영은 장애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민간 의뢰기관, 공공 재활기관, 국가 보조금 등을 통한 자체 운영 체계를 구축함
- 장애인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
 -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고용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장애인 스마트워크 체계를 구축·활성화하고, 특히 IT 관련 업체의 고용주와 네트워크 형성
 -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의 경우 직업재활 및 IT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초기에 직업재활 전문가 및 IT 전문가를 각각 배치하여 운영한 뒤 전반적인 센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음
- 장애인 스마트워크 고용과정
 - 평가 단계: 적합한 장애인 발굴
 - 훈련 단계: 훈련은 전적으로 각각의 상황 및 장애인 능력에 맞게 진행
 - 고용계약 단계: 훈련 이후 장애인은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로부터 고용계약 단계에 들어가 6개월~1년 동안 일을 하게 됨
 - 고용 및 사후관리 단계: 이 단계에서 업체는 고도로 훈련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6~12개월 후에 업체에 완전한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업체에 취업이 이루어진 후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는 사후관리 체계를 통하여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모형 정착 방안
 - 첫째, 장애인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 둘째,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 셋째, 장애인에게 기본 교육과 특정 직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넷째, 인턴십이나 정식고용이전 훈련기간 설정
-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2. 기반 구축방안

- 법 정비 방안¹⁾
 - 목적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취지를 담아야 함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스마트워크 기본계획 수립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지위 보장이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도 필요
- 재정 확보 방안
 -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형에 따른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설립·운영과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재정 마련은 필수적임
 - 안정된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의 원격 근무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원격근무' 항을 추가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이 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방안 마련
- 사업 수행 방안
 - 장애인 스마트워크 추진에 있어 적합 직종에 대한 사례연구 필요
 - 적합 직종 적용을 위한 모형화 연구사업 체계가 필요함

3.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모델 정착을 위한 제언

- 장애인 측면
 - 소속감과 동기부여에 대한 지원체계 필요

1) 2011년 김정권 의원 대표로 발의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기준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

- 직무 숙지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 처리 지원 필요
- 재택근무 공간 및 보조기기 등의 편의 장비 지원 필요
- 직업훈련체계 개편 필요
- 사업체 측면
 - 스마트워크 관리자 지원 필요
 - 장애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필요
- 정부 측면
 - 스마트워크 법 제정과 노동 법률의 정비 필요
 -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스마트워크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 필요
 -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필요

VI. 결 론

1.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목적 달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의 개념, 국내외 사례,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모형과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살펴봄
 - 스마트워크는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행이 가능
 - 장애인 중심의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장애인 중심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스마트워크 코디네이터'가 장애인을 업무 환경 지원
 -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의 운영은 장애인 원격근무를 전담하는 기관인 미국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는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볼 수 있음

2. 합의

- 장애인 스마트워크는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논의되어왔음
-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정책 대상으로 정신적 장애인은 부적합함
- 소속감과 동기부여에 대한 지원체계가 고려되어야 함
- 직무 숙지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 처리 지원 필요
- 재택근무 공간 및 보조기기 등의 편의 장비 지원 필요
- 직업훈련체계 개편이 필요
- 스마트워크 관리자 지원이 필요
- 장애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필요
- 스마트워크 법 제정과 노동 법률 정비 필요
 - 목적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포함(제1조)
 -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포함(제3조, 제17조1)
 - 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참여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4조2)
 - 장애인의 지원 수단으로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의 설치(제22조2)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스마트워크 지원의 근거 마련 필요
-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스마트워크 일자리 시범 사업 필요
-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필요

3. 제언

-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법제도 환경이 정비되어야 함
- 스마트워크 관련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스마트워크는 만능이 아니며 스마트워크의 특성을 살리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첫째, 직무 숙지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 처리 지원이 필요함

둘째, 재택근무 공간 및 보조기기 등의 편의 장비 지원이 필요함

셋째, 직업훈련체계 개편이 필요함

넷째, 스마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다섯째, 장애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함

여섯째,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과 노동 법률 정비가 필요함

일곱째,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스마트워크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여덟째,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이혜경, 권재현, 이상춘, 김지혜, 송창근

요약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 수행 기관 중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로, 2012년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프로그램수행기관 수행기관에 대한 지표개선 연구의 후속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원칙은 첫째, 지역가중치에 대한 불합리성과 사업 실적에 있어서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둘째, 결과중심 및 양적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 평가지표를 과정 중심 및 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변별력이 없는 지표나 평가 시 세부평가치침이 없어 평가결과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경우, 총 58문항 중 수정된 문항 33개, 신규 추가된 문항 6개, 삭제된 문항 8개로 조정되었고, 수정 후 총 문항 수는 55개로 3문항 감소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총 64개 문항 중 수정된 문항 30개, 신규 추가된 문항 8개, 삭제된 문항 17개로 조정되었고 수정 후 총 문항 수는 50개로 14문항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 총 64문항 중 수정된 문항 24개, 신규 추가된 문항 5개, 삭제된 문항 7개로 조정되었고 수정 후 총 문항 수는 44개로 20문항 감소하였다.

또한 중증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중증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의 수정보완, 상설 평가위원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를 후속조치 및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업이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8년부터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원하게 되었음
- 중증지원사업은 운영체계나 예산지원에 있어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중증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직업재활사업의 성과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높으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기회 확대에 명백한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임
- 따라서 중증지원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대내외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임
- 이에 본 연구는 중증지원사업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2012년 수행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개선 연구'의 후속으로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장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기존 국고지원 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원 평가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훈련기관의 평가현황과 지표를 분석함
- 현장 의견조사 : 장애인단체 32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1개소, 직업재활시설·직업적응훈련기관 89개소 전체를 설문대상으로 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함
- 포커스그룹인터뷰 :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자

- 는 중증지원사업 유형별 수행기관의 평균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또는 팀장으로 구성함
- 자문회의 : 학계,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연구의 방향성 및 조사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절성 등에 관한 자문을 실시함
 - 공청회 : 해당 기관의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함

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개발

1. 조사개요

- 현장의견조사는 장애인단체 32개소, 직업재활시설·직업적응훈련기관 89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1개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함.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전에 유선을 통해 현장의견조사의 목적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장의견조사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함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현장의견조사를 통해 의문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하는 지표만을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함. 회기당 2~4명의 참여자와 4명의 내·외부연구진, 중증지원사업 담당자 1명, 총 10명이 참여함

2. 조사결과에 따른 지표수정

- 장애인단체는 직업재활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인력이 2명이라는 점, 모기관에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실적 및 평가지표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12년 직업재활센터 평가지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증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서 수정함
-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적응훈련을 중심 서

비스로 수행함. 현장 실무자들은 직업적응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증 지원사업 외적인 것은 평가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중증지원사업 자체가 기존의 사업에 부가적인 기능을 주고,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직업재활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모기관(시설)의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증지원사업 훈련생 이외 시설 전체 훈련생, 기존 시설의 사업, 실적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수정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중증지원사업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수행기관과 사업실적 및 사업관리 등 대부분의 지표를 유사하게 적용함. 다만, 평가지침 또는 평가자료에서 안마수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Ⅲ. 중증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안)

1. 개선방향

- 첫째,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한 평가방식을 도입함
- 둘째, 과정 및 질적 요소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을 하고자 하였음. 결과중심 및 양적평가 위주로 되어있는 평가지표를 과정 중심 및 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 셋째,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음. 변별력이 없는 지표나 평가 시 세부평가지침이 없어 평가결과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함

2. 세부지표 개선논의

○ 장애인단체

평가 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I.사업 실적 (35%)	14	A1. 직업상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연인원 1일 1건 인정 • 평가기준: 내관 및 방문상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차등반영 	
		A2. 사업체개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사업체 개발 및 관리]로 수정 • 평가기준: 유지업체, 신규업체(취업알선 이상), 고용연계업체로 구분됨, 고용연계업체의 경우 가중치 적용 	
		A3. 취업알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동일업체 취업알선은 1건 인정, 외부 일반고용 알선만 인정 	
		A 4. 취업	A41. 일반고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필수(1개월 미만 근로자에 한해 취업확인서로 확인 가능)
			A42. 재택고용	동일	-
			A43. 자영업 및 창업	동일	-
			A44. 지원고용(취업)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필수
			A45. 보호고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필수
			A46. 기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자기취업 불인정
		A5. 취업확정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A51. 취업유지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확정 지표와 동일 • 평가지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인정 	
		A52. 취업유지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확정 지표와 동일 • 평가지침: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인정 	
		A6. 취업 후 적응지원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내관 및 방문상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차등반영, 연인원 1일 1건 인정 	
		A7. 서비스의뢰 인원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완전 종결사례에 대해서만 인정, 직업평가 의뢰 인정 	
II.사업 관리 (45%)	17	가. 직업상담	B1. 직업상담 기록여부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직업상담에 초기면접지, 재활계획서, 상담기록지를 적절히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지침: 초기면접지, 재활계획서, 상담기록지에 들어가야 할 세부 내용 확인
			B2. 상담실 환경구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냉·난방기를 갖추고 있으며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 포함
II.사업 관리 (45%)	17	가. 직업상담	B3. 직업재활계획서의 수립과 반영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침: 당해년도 수정, 보완된 직업재활계획서 포함, 직업재활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 제시하여 기재
			B4. 이용인의 비밀보호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 파일과 프로그램의 보안유지를 위한 잠금장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여부,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
			B5.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인의 권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소개 및 구인·구직현황을 게재 여부, 서비스 시작 시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 및 중요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제공 포함

평가 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B6. 정기적 상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상담계획 수립여부, 계획에 따라 직업상담 실시여부, 직업상담 진행과정과 결과는 초기면접지와 상담기록지에 기록여부, 3개월에 1회씩 상담 여부 평가지침: 평가해당 연도에 신규 구직상담을 실시한 자에 한함 		
		B7. 사업체관리의 노력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고용주 조사, 기타 사업체 관리의 노력활동 포함 평가자료: 사업체관리대장 필수 		
		B8. 직무분석 실시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중증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기준으로 직무분석 과정을 평가기준에 포함 평가자료: 적응지원일지, 업무일지, 상담기록지 평가지침: 직무분석의 정의 포함 		
		B9. 신규업체개발 및 관리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9.신규업체개발 노력 정도]로 수정 평가기준: 신규업체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탐색, 사업체 조사, 구인업체 분석 등이 포함 평가지침: 적합 사업체 개발 노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 제시 		
		B8. 지역사회업체현황 자료보유 및 관리	삭제 -		
		B10. 취업알선의 적절성	동일 -		
		B11.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 실시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취업전 교육이 연간계획에 포함,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취업전 교육이 취업대상자 모두에게 실시여부 		
		B12.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비율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총 취업자 중 최저임금 이상 취업자 비율 100%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별파일 등 		
		B11. 사업체와 취업장애인의 적응지원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3. 취업 후 적응지원을 위한 현장평가의 노력성]지표 수정 평가지침: 취업 후 적응지원 대상자는 평가년도를 기준으로 1년 내의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B13. 취업 후 적응지원의 노력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4. 취업 후 적응지원의 다양성]으로 수정 평가기준: 4대 보험 가입가능한 곳에 취업, 상해 등 산업안전보건 설비 등 추가 제시 평가지침: 옹호활동 등의 정의 제시 		
		B15. 취업 후 적응지원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5. 취업 후 적응지원의 질 개선 노력]으로 수정 평가기준: 정기적인 사례회의 실시와 결과반영 여부, 고용주 간담회, 취업자 간담회, 장애인과보호자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반영,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II.사업 관리 (45%)	17	B15. 서비스만족도조사 및 평가를 통한 질 개선 노력	삭제 -
				B16. 사업계획 수립의 명확성 및 목표 관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6.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로 수정 평가기준: 연간사업계획서 수립여부,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 평가결과를 직원과 공유하고 중증지원사업 운영에 반영 여부
				B17.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7. 기관의 접근성]으로 이동
B17. 기관의 접근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대중교통이 1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이 포함됨 				

평가 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III. 자원 관리 (10%)	5	C1. 직원채용의 합리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자료: 인사관리규정, 채용공고관련 근거서류, 기타 심사서류 등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2. 업무분장의 적절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자료: 업무분장표, 직원별 사업 추진 서류철, 직원면담, 업무일지 등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3. 복무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3. 직원복리후생]항목에 흡수
		C3. 직원복리후생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자료: 휴가사용촉진근거서류, 직원복무관리규정 추가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4. 직원교육 실시여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C4.직원교육 적절성]으로 변경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5. 수행인력 외 직업재활 담당인력 배치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상향조절
		C7. 수행인력 업무연속성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10.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질적개선 노력]으로 이동
		C8. 편의시설 설치정도	삭제	-
		C9. 환경의 적절성	삭제	-
IV. 재정 관리 (2%)	2	C6 직업재활사업 예산규모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침: 비지원사업 예산의 직업재활 담당자 인건비 제외
		C11. 예산집행의 자율성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7. 회계업무의 적법성]으로 이동
		C7. 회계업무의 적법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 예산결산은 법인 이사회 의결 거치토록 추가, 서비스 제공담당자가 예산을 청구하여 집행하는지 확인
V. 지역 사회 관계 (5%)	3	C8. 지역사회자원활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침: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정의 수정
		C9. 홍보노력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연간사업계획에 홍보계획 포함, 계획에 따른 홍보 실시, 사업홍보를 위한 4가지 이상의 홍보매체 활용, 홍보계획 격월 1회 이상 실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지침: 요소별 수정
		C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질적 개선 노력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재활센터, 평가센터와 동일한 지표로 중증지원사업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노력
VI. 서비스 만족도 (3%)	9	D1. ~ D9.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D3->D9로 수정 : 임금에 대한 만족을 취업장애인에게 대해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로 변경함
VII. 평가 위원 평가 (5%)	5	E1. 기관장의 노력 및 관심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체크로 수정 : 5점척도(낮음~높음) 평가위원 각 3인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배점
		E2. 재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노력과 열의		
		E3. 재할담당자 전문성		
		E4. 현장평가 협조성		
		E5. 현장평가 사전준비		
계. (105%)	총 55 문항			

○ 직업재활시설

평가 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I.사업 실적 (35%)	11	A1. 직업상담	수정	•근로장애인의 상위기관으로의 전이 또는 근로장애인에서 훈련장애인으로 전이 관련 상담 포함		
		A2. 직업평가	수정	•평가지침: 직업평가 결과보고서에 신체능력종합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 의뢰평가시 의뢰요청서에 의뢰목적이 분명히 명기되어야 함		
		A3. 직업적응훈련	수정	•출석일수기준 연인원 산출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시설 전체 장애인 구분하여 산정		
		A4. 사업체개발	수정	•[A2.사업체 개발 및 관리]로 수정 •타기관 연계 업체 및 온라인 개발 불인정 •직업재활시설로의 연계는 불인정		
		A5. 취업알선	수정	•직업재활시설로의 취업알선은 불인정 •동일업체로의 취업알선은 1건 인정		
		A6. 취업	A61. 일반고용	동일	•A61~66까지 1개의 평가항목으로 통합	
			A62. 재택고용	동일	-	
			A63. 자영업 및 창업	동일	-	
			A64. 지원고용(취업)	동일	-	
			A65. 보호고용	수정	•보호고용은 0.5명 인정, 최저임금 이상 1명 인정	
			A66. 기타	수정	•기타고용은 0.5명 인정	
		A7. 취업확정	수정	•평가자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A71. 취업유지	신규	•취업확정 지표와 동일 •평가지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인정		
		A72. 취업유지	신규	•취업확정 지표와 동일 •평가지침: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인정		
		A9. 서비스의뢰인원수	수정	•평가지침: 완전 종결사례에 대해서만 인정		
		A9. 하청업체/판매 총매출 증감정도	삭제	-		
A10. 취업 후 적응지원	수정	•[A8. 취업 후 적응지원]으로 서비스의뢰 인원수 보다 앞선 항목 배치 •평가지침: 내관 및 방문상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차등반영, 연인원 1일 1건 인정				
A11. 현장훈련	삭제	-				
II.사업 관리 (45%)	15	가. 직업상담	B1. 직업상담 기록여부	수정	•초기면접지, 재활계획서, 상담기록지 포함내용 명시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만 인정	
			B2.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직업상담 내용의 반영정도	수정	•[B2.직업재활계획서의 수립과 반영정도]로 수정 •직업재활계획서 포함내용 명시	
			B3. 이용인의 비밀보호	신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내용 명시	
			B4. 사례회의 실시	수정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 기록 및 관리, 사례회의 결과 반영 등을 확인	
II.사업	15	나	B4. 직업평가도구의 다	삭제	-	

평가 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관리 (45%)	직업평가	양성		
		B5. 직업평가영역 및 내용의 포괄성	삭제	-
		B5. 직업평가 실시	신규	• 평가기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평가실시, 결과 기록·관리 여부, 장애인 및 보호자 욕구 반영 등을 확인
	다. 직업적응훈련	B6. 직업평가보고서의 관리상태	수정	• [B6.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활용]으로 수정 • 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보고서의 반영 등을 확인
		B7. 개인별직업적응훈련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수정	• [B7. 개인별직업적응훈련계획 수립]으로 수정 • 직업적응훈련계획서 내용 확인 • 재활계획서에 훈련계획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B8.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의 전문성	수정	• 이용인의 욕구 반영 정도 추가
		B9. 적합 사업체개발 및 연계관리 노력정도	삭제	• [B.18 생산품 판매노력 II]과 통합 및 수정
		B10. 직종개발과 배치의 적절성	삭제	• 라. 취업영역으로 이동
	라. 직업적응훈련 (삭제)	B9. 직업적응훈련 실시	신규	• 직업적응훈련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 개별파일 관리정도 확인
		B11.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제공노력	삭제	-
		B12. 직업훈련직종의 노력여부	삭제	-
	라. 취업 (신규)	B13. 직업훈련서비스의 전문성	삭제	-
		B10. 직종개발과 배치의 적절성	신규	• 장애인의 욕구, 적성 또는 직업평가에 일치되는 직종개발과 직업배치가 이루어지는지 평가
		B14. 생산품 판매노력(자체생산품 해당시설)	삭제	-
		B11. 사업체 개발 및 관리	신규	• 사업체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시장분석, 사업체 분석, 제안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
		B15. 생산 및 연계노력(하청생산 해당시설)	수정	• [B12. 하청업체 개발 및 관리]으로 수정 • 하청업체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
		B16. 근로장애인 임금수준	삭제	-
		B13.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정	• 산업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추가
		B21. 근로장애인의 보험 가입여부	삭제	-
	아. 취업후	B21. 판매처와의 연계	삭제	-
		B19. 적응지원의 빈도	수정	• [B14. 취업후 적응지원의 질 개선 노력]으로 수정 • 취업후 적응지원의 질적개선을 위한 노력성 파악

평가 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적응지원 B20. 취업 후 적응지원의 노력정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5 취업 후 적응지원의 다양성]으로 수정 • 보조공학도구 지원안내 추가
III. 자원 관리 (10%)	5	C1. 직원채용의 합리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인사관리규정, 채용공고관련 근거서류, 기타 심사서류 등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2. 업무분장의 적절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업무분장표, 직원별 사업 추진 서류철, 직원면담, 업무일지 등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3. 복무규정	삭제	• 평가항목: [C3. 직원복리후생]항목에 흡수
		C3. 직원복리후생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휴가사용추진근거서류, 직원복무관리규정 추가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5. 직원교육 실시여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4. 직원교육 적절성]으로 수정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5. 수행인력 외 직업재활 담당인력 배치정도	수정	• 평가기준: 상향조정
		C7. 수행인력의 업무연속성	삭제	-
		C8. 편의시설 설치정도	삭제	-
		C9. 환경의 적절성	삭제	-
IV. 재정관리 (2%)	2	C6. 직업재활사업 예산규모	수정	• 비지원사업 예산에서 인건비 제외
		C7. 예산집행의 자율성	삭제	• [C7. 회계업무의 적법성]으로 이동
		C7. 회계업무의 적법성	동일	-
V. 지역사회 관계 (5%)	3	C8. 지역사회자원 활용	수정	• 평가지침: 자원 활용에 대한 범위 추가
		C9. 홍보노력	수정	• 계획수립 여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횟수, 홍보결과 모니터링 등을 확인
		C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질적 개선 노력	신규	• 직업재활센터, 평가센터와 동일한 지표로 중증지원사업 질적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노력
VI. 서비스 만족도 (3%)	9	D1. ~ D9.	수정	• D3→D9로 수정: 임금에 대한 만족을 취업장애인에 대해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로 변경함
VII. 평가위원 평가 (5%)	5	E1. 기관장의 노력 및 관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체크로 수정 : 5점척도(낮음~높음) • 평가위원 각 3인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배점
		E2. 재활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노력과 열의		
		E3. 재활담당자 전문성		
		E4. 현장평가 협조성		
		E5. 현장평가 사전준비		
계 (105%)	총 50 문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I.사업 실적 (35%)	11	A1. 직업상담	수정 • 평가지침: 연인원 1일 1건 인정 • 평가기준: 내관 및 방문상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차등반영하고 목표대비 실적에 의한 평가로 수정	
		A2. 직업평가	수정 • 평가기준: 목표대비 실적에 의한 평가로 수정 • 평가지침: 직업평가 결과보고서에 신체능력종합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	
		A3. 정원대비 훈련인원	수정 • 평가기준: 승인인원에 수료인원, 중도탈락, 조기취업 인원 명시	
		A4. 수료생 자격증 취득률	수정 • 평가지침: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모두 인정	
		A5. 취업	A51. 일반고용	수정 • 평가기준: 목표대비 실적에 의한 달성률 평가로 수정 • 평가지침: 안마업의 경우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확인서로 취업인정 필요 •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필수(1개월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 취업확인서로 확인가능)
			A52. 재택고용	동일 -
			A53. 자영업 및 창업	수정 • 평가지침: 안마업의 경우 안마사협회에서 발급한 '개설경유의견서'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음
		A6. 취업확정	수정 • 평가자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A61. 취업유지	신규 • 취업확정 지표와 동일 • 평가지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인정	
		A62. 취업유지	신규 • 취업확정 지표와 동일 • 평가지침: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인정	
A7. 취업 후 적응지원	수정 • 평가지침: 내관 및 방문상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차등반영, 연인원 1일 1건			
II.사업 관리 (45%)	11	가. 직업상담 및 평가	B1. 직업상담 기록여부	수정 • 평가지침: 초기면접지, 재활계획서, 상담기록지에 들어가야 할 세부 내용 확인
			B2.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직업상담 내용의 반영정도	수정 • [B4.직업재활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으로 수정 • 평가기준: 직업상담내용을 반영한 직업재활계획서 수립, 장기 및 단기목표 평가 포함, 직업재활계획서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평가 결과 이후 계획수립에 반영
			B3. 개별화된 훈련계획 수립	수정 • [B5.개별화된 훈련계획 수립]으로 수정 • 평가기준: 모든 이용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계획수립,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계획수립, 개별화된 서류, 개별서비스 제공 여부
			B4. 사례회의 실시	수정 • [B2 사례회의 실시]로 수정 • 평가기준: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 사례회의 일지 기록 및 관리, 서비스 내용 조정, 사례회의를 전체 이용인에게 실시 여부 • 평가지침: 요소별 수정
			B6. 직업평가보고서의 관리상태	수정 • [B3.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활용]으로 수정 • 평가기준: 개별계획에 기반한 평가, 개인파일 보관여부,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평가결과보고서의 반영여부
		나. 직업훈련	B6.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제공 노력	수정 • 평가기준: 장애의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을 위해 구인 동향 분석 실시,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내용 및 방법 개발 노력, 훈련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기적 평가
			B7. 직업훈련직종의 노력여부	삭제 • [B6.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제공노력]으로 이동

평가영역	항목수	평가항목	수정사항	
		B7. 직업훈련 운영의 적절성	신규	• 평가기준: 개별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 최신정보를 활용한 훈련직종 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편성 여부, 훈련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
		B7. 직업훈련 서비스의 전문성	수정	• [B8. 직업훈련 서비스의 전문성]으로 수정 • 평가기준: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 사례회의 일지 기록 및 관리, 서비스 내용 조정, 사례회의를 전체 이용인에게 실시 여부
		B9. 훈련장애인 중도 탈락률	삭제	-
III. 자원 관리	6	C1. 직원채용의 합리성	수정	• 평가자료: 인사관리규정, 채용공고관련 근거서류, 기타 심사서류 등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2. 업무분장의 적절성	수정	• 평가자료: 업무분장표, 직원별 사업 추진 서류철, 직원면담, 업무일지 등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3. 복무규정	삭제	• 평가항목: [C3. 직원복리후생]항목에 흡수
		C3. 직원복리후생	수정	• 평가자료: 휴가사용촉진근거서류, 직원복무관리규정 추가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4. 직원교육 실시여부	수정	• 평가항목: [직원교육 적절성]으로 변경 • 평가기준 및 지침: 요소별 수정
		C6. 편의시설 설치정도	삭제	-
		C5. 환경의 적절성	동일	-
		C6. 이용인의 비밀보호	신규	• 평가기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 파일과 프로그램의 보안유지를 위한 잠금장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여부, 개인 정보공개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
IV. 재정 관리	1	C7. 예산집행의 자율성	삭제	• [C7. 회계업무의 적법성]으로 이동
		C7. 회계업무의 적법성	수정	• 평가기준 : 예산결산은 법인 이사회 의결 거치토록 추가, 서비스 제공담당자가 예산을 청구하여 집행하는지 확인
V. 지역 사회 관계	1	C9. 홍보노력	동일	• 평가기준: 연간사업계획에 홍보계획 포함, 계획에 따른 홍보 실시, 사업홍보를 위한 4가지 이상의 홍보매체 활용, 홍보계획 격월 1회 이상 실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지침: 요소별 수정
VI. 서비스 만족도	9	D1. ~ D9.	수정	• D3->D9로 수정 : 임금에 대한 만족을 취업장애인에 대해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로 변경함
VII. 평가 위원 평가	5	E1. 기관장의 노력 및 관심	수정	• 해당사항체크로 수정 : 5점 척도(낮음~높음) • 평가위원 각 3인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배점
		E2. 재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노력과 열의		
		E3. 재할담당자 전문성		
		E4. 현장평가 협조성		
		E5. 현장평가 사전준비		
계 (105%)	총 43 문항			

V. 결 론

- 장애인단체의 세부 평가지표 수정 시 가장 고려했던 부분들은 장애인단체의 평가지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수행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재활센터의 평가지표를 유사하게 적용하였고, 또한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직업재활서비스 과정과 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충실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표들로 수정·보완하였음.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의 평가지표와의 중복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그러면서도 직업적응훈련, 일반고용(전이) 등을 강조하면서 직업재활시설 본연의 업무인,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보호고용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였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지표는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 및 훈련직종과 취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지표와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교사 및 훈련의 전문성 등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였고, 또한 비록 훈련기관이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 서비스 과정 등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음.

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장애인들에게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전문적 평가와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상설 평가위원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함. 중증지원사업 평가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로 사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본원 내 전문평가팀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나운환, 박경순, 정승원, 강윤주, 최영광, 김춘만

요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는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시기별로 그동안의 사업과정과 성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비용-편익을 통한 지원사업의 편익정도, 직업재활 선진국들의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정책과 전달체계, 전문가 의견조사 기반으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확대와 직업재활사업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업을 지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지원사업과 연계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직업적응훈련기관은 직업재활센터와 직업재활시설내에서의 직업적응훈련과 구분이 어렵고, 직업적응훈련이 다른 직업재활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으면 훈련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직업재활시설과 통합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과는 구별되나 직무개발과 배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서비스범주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우선 서비스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재활 서비스 내실화와 전문성, 질적수준 개선, 체계적인 실적 관리 및 자료 재생산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는 직업재활전문가 우선채용, 수행기관 주기능 중심의 주기적인 직업재활컨설팅제공, 서비스 질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 전산망 구축을 통한 수행기관 유기적인 연계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다.

넷째, 직업재활정책 과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먼저, 직업재활 정책의 목표를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수정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의무고용제도, 차별금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지금처럼 협의적 근로자와 광의적 근로개념의 직업재활대상자를 구분하여 정책의 대상집단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원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연계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체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및 양적 성장으로 볼 수 있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전달체계와 양적 성장에 대한 점검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함.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질을 분석하고, 그 외에 정책적 개입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고용실적을 평가하는 성과측정 방식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시기별로 그동안의 사업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비용-편익을 산출하여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의 편익을 야기하였는지를 분석함
- 미국, 영국, 독일 등 직업재활 선진국들의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정책과 전달체계를 분석함
- 전문가 의견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함
- 상기 결과를 토대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II. 연구내용과 방법

1. 문헌조사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직업재활사업의 성과와 비용편익에 대한 비용요

인, 경제적 효과요인, 편익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정책과 전달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함

2. 성과분석

-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함
 - 기본목표인 ㉠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 구축, ㉡ 소비적 복지에서 생산적 형태의 직업재활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화 구축, ㉢ 직업재활사업의 서비스의 질 향상 달성정도를 측정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유형별 성과를 분석함. 분석기준은 지원사업을 수행할 당시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즉, 직업재활센터는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직업상담, 진단 및 평가, 개별화된 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수립, 직업전훈련, 직무개발 및 배치, 지원고용, 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전문직업평가센터는 종합적인 평가, 도구개발과 표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은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으로 내실화한다는 목표는 직업재활센터와 유사하지만 주된 기능은 보호고용의 장과 통합고용으로의 전이이므로 보호고용 실태 및 지역사회 고용 전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는 접근성을 활용한 직업상담, 직무개발 및 배치, 취업후 적응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한 이후의 단계별 직업재활사업 실적을 구직자 및 취업자, 구인자측면에서 비교하여 그 추이를 분석함. 구직 및 취업자의 경우, 직업재활사업 실적을 장애유형, 학력, 구인직종별로 분석하였고, 구인자의 경우, 구인 장애유형과 정도, 학력, 직종별로 분석하여 추이와 성과를 비교분석함

3.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에 의해 사업이 수행된 2008년에서 2012년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함. 그러나 2008년부터 2010년 사업은 변경회 외(2012)에 의해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본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사업의 분석을 실시함. 비용-편익 분석은

측정지표의 선정, 경제적 효과와 편익요인의 추출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사업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고용후의 경제적 효과와 편익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워크샵, 자문회의

- 문헌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마련된 결과를 토대로 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전문가 워크샵, 자문회의를 실시함. 전문가 의견조사표의 구성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과 개선방안,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목표와 대상 집단,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역할과 기능, 예산지원방식, 전달체계, 일반사항 등으로 이루어짐.

Ⅲ.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성과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당시의 기본 목표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구축,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 수준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성과가 존재함. 2000년 이후 직업재활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1년 지원사업의 시작은 직업재활 서비스 실시기관의 전국적인 확대 및 이에 따른 구직상담 및 취업실적의 대폭 증가, 그리고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성과를 보임.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서비스는 증가하는 직업재활 대상추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 둘째,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2001년 이후 구직자와 취업자가 지체장애 중심에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다양화되어 왔고, 장애등급도 경증장애에서 중증장애, 학력도 저학력 보다는 고학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직종별 구분에서도

생산직에서 전문기술, 사무직 직종으로 증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서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전문성의 경우, 지원사업의 직원배치기준이 부족하지만 전문가 자격요건을 전제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해 직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직원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담당직원들이 비교적 잦은 이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셋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이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지표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질적 지표였음. 2001년 이후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질적 지표는 상당한 수준의 질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적 수준에 있어 아쉬운 점은 장애인 단체가 다른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나 이용자 만족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유형별 성과는 이 사업의 최초 설계시의 방향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이 정착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최초 설계이후에 시작된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상충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보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직업재활센터는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실적과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직업평가센터는 직업평가에 대한 안정된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가도구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은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남.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과 직업적응훈련, 장애인 단체는 직업상담과 직무개발 및 배치서비스에 안정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질적 수준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는 모든 질적 수준과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질적 지표의 보호고용과 작업활동 영역에서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1982년 이후 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 전반의 성과분석을 통해 제시된 의미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첫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사업이 안정화단계로 정

착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업재활사업 확대 시에는 지원사업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취업알선시기와 고용사업시기의 사업성과는 사업시행이후 6년차부터 본격화되는데 비해 지원사업의 경우, 1차년도 부터 사업의 실적이 안정화되고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지원사업의 초기 설계가 적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직업재활사업을 상당부분 경험하였으므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됨

- 둘째, 취업알선시기와 고용사업시기에 비해 직업재활사업시기부터 구직상담 대비 취업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IMF이후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직업재활서비스 체계가 다변화됨으로써 구직자가 지체중심에서 발달장애 등의 장애로 다양화되었고, 이용자의 학력이 중졸이하에서 고졸 이상으로, 직종추이도 생산직에서 전문 관리, 사무 등으로 다양화된데 기인하며, 이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 이유로 분석될 수 있음. 다행인 것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시기인 2010년 이후 증가폭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와 지속적인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진단됨
 - 셋째, 구인자의 욕구는 취업알선시기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시기 까지 주로 지체와 청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취업자는 발달장애, 시각장애 유형에서 의미 있는 증가추세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전문인력과 직업재활 서비스의 적절한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넷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에서 의미있는 결과는 현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와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구직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증가추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지원사업이 정체성에 비추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임
- 비용-편익 분석 결과, 2011년~2012년도 비용-편익 비가 각 2.15, 2.36으로 나타났고, 2008년 이후 편익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충분한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로 보면 대표적 수행기관인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모두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평가센터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으로 지원된 사업이라기보다 앞의

세유형의 수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며, 직업적응훈련의 경우, 프로그램이므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성격이며 더욱이 이 사업의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의 사업 성격을 가지므로 분석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지원사업은 이 사업설계 당시의 목표대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었고, 미미하지만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 직업재활 서비스 기반 및 체계구축,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 향상 순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적추이나 비용-편익 분석과는 달리 직업재활시설과 전문직업평가센터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큰 것으로 진단되었고, 장애인단체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재설계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현재 구조에 대해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았고, 현 구조에서 ①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구축을 위해 지원사업의 예산과 인력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육구 증대에 맞추어 확대되어야 하고, ②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적위주의 관리체계 방식이 수행기관의 주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직원의 자격기준이 직업재활 전문가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③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별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고, 주기적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컨설팅과 서비스의 질 평가기준의 검토가 있어야 하며, ④ 효과적인 실적관리와 자료의 재생산을 통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적관리를 위한 DB 구축이 필요함. 또한 지원사업의 성과가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정책과 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① 정책목표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② 정책의 대상집단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명료화 하며, ③ 정책수단인 의무고용제도나 장애인차별금지 제도도 중증장애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④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일선전달체계의 통합과 업무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함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과 전달체계

- 각 국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정책과 전달체계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는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적극적 우대정책에서 차별금지, 최근에는 평등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직업복귀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등을 강조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 장애의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기능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주는 판정체계를 넘어 사회정책 수급 및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서 장애인의 노동능력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
- 직업재활 서비스의 우선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장애인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와 AbilityOne Program을 강화하여 보호고용형태 작업장 및 기업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우선구매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강화하고 있음
- 직업재활 전달체계는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노력이 돋보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즉, 중앙전달체계가 이원화 혹은 다양화되어 있더라도 일선 서비스 창구는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보장 급여체계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강화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서비스 융합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직업재활 관련 예산은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IV.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발전방안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분석과 제외국의 직업재활정책과 전달체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다음의 측면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함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확대와 직업재활사업의 컨트롤타워 구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82년 이후 사업실적 추이에서 다른 체계들보다 빠르게 안정화 되었으며 실적이나 비용편익,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모두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2001년 본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직업재활 대상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원사업을 비롯한 직업재활 사업은 욕구증대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개선사항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발전방안이 필요함
 - 첫째,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게 필요함. 그리고 연구결과에 나타난 성과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원사업의 확대는 직업재활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게 필요함. 직업재활센터는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과가 있었고, 직업재활시설은 유급의 보호고용을 제공하는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장애인단체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제외하면 확대하기에는 질적인 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둘째, 모든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업을 지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 이 역할은 지원사업과 연계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원사업에 관계 없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수행기관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 장애인복지관들은 수익사업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지원사업과 함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가 필요하고, 이 역할은 지원사업 수행기관과의 업무 연속성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전반적인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이 과정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중간체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통합과 이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직업적응훈련기관은 직업재활센터와 직업재활시설내에서의 직업적응훈련과 구분이 어렵고, 직업적응훈련이 다른 직업재활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으면 훈련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직업재활시설과 통합이 필요함. 중증장애인 중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과는 구별되나 직무개발과 배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개선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함
 - 첫째,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자의 욕구증대에 따른 서비스 범주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게 필요함
 - 둘째, 중증장애인 우선 서비스 규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함. 서비스 범주와 예산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창구에서 중증장애인은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대기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큼. 각국의 사례와 같이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서비스 우선규정을 명문화하고 실적관리나 평가에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함
 - 셋째,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위해 ① 고학력 장애인과 중증장애, 전문직이나 사무직, 유연성 있는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개발 및 배치, 직무개조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고, ② 직업재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배치 규정에 직업재활사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③ 직원의 업무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과 보수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④ 실적관리 방식을 수행기관의 주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함
 - 넷째,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직업재활 과정별 구체적인 매뉴얼을 보급하는 게 필요하고, ② 수행기관의 주 기능 중심으로 주기적인 직업재활 컨설팅이 필요하며, ③ 서비스 질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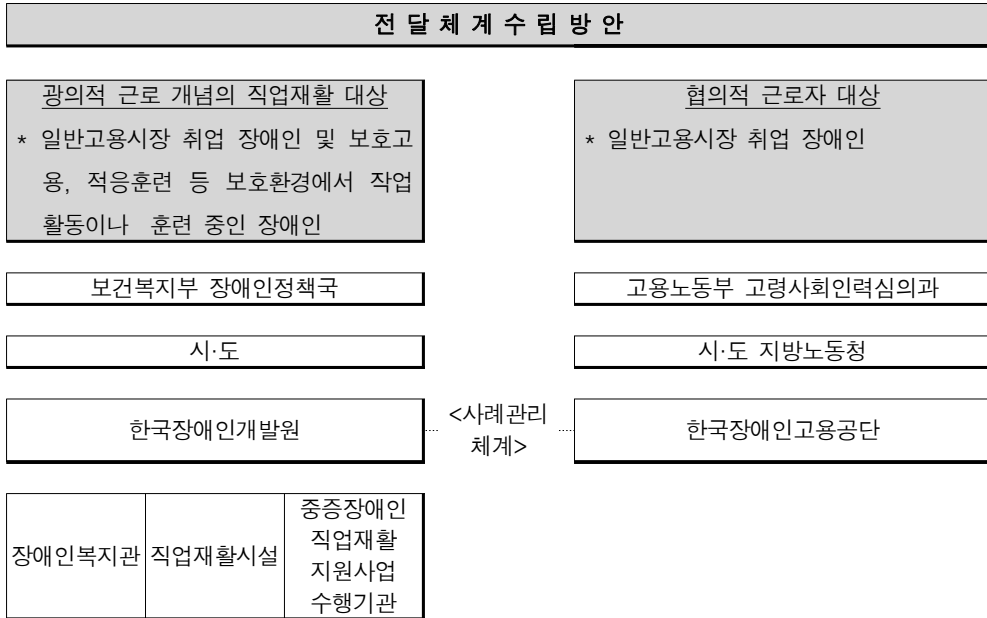
과 특히, 장애인단체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점검이 필요하고, ④ 전문직업평가센터의 평가도구 개발과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자료재생산을 위한 DB구축이 필요함. 각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일선 직업재활 서비스 창구는 어떤 방식이든 통합창구에서 복지서비스와 함께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창구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① 전산망 구축을 통해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② 전산망의 성공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활용하는 전산망과 반드시 연동이 되도록 web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③ 자료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직, 구인, 취업자의 장애유형이 세분화되고, 직업에 중점을 둔 학력, 경력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직종이 세분화되고, 평가결과가 표준화되어 기록되는 등 구체적인 전산화 표준화방안이 마련된 후 설계되어야 함

4. 직업재활 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직업재활 정책과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직업재활의 정책목표를 중증장애 대상으로 변경하고, 장애판정 기준도 개선하는 게 필요함.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들은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목표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 초점이 경증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의 대상집단을 중증장애로 명료화하거나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우선권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애판정기준도 직업적 제 능력과 사회참여를 포함한 포괄적 측면에서 중증장애가 분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둘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함.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기준 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의 차등 적용, 중증장애인의 더블카운트 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별금지제도의 직무분석에 기초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마련과 사업주나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과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셋째,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우선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일선 전달체계의 통합과 업무연계, 직업재활 전문가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전달체계의 통합이나 업무연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해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어느 중앙전달체계이든 광의적 근로개념의 직업재활대상자 모두를 포함하여 정책의 대상집단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이를 담당하는 중앙전달체계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협의적 근로자와 광의적 근로개념의 직업재활대상자를 구분하여 정책의 대상집단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는 업무연계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체계가 고려되어야 함



정책제안 및 반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 쟁점을 중심으로 제안함

첫째, 모든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업을 지원·조정하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체 직업재활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위하여 직업재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신분 및 보수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그 외 본 연구의 제안이 반영된 내용은 직업재활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4년 사업 중 매뉴얼제작을 위한 연구, 직업재활컨설팅지원사업 진행, 수행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 및 기능 고도화 추진 등임

해외 장애일자리 현황 조사

신숙경, 신현욱, 이미정, 김희영

요약

본 조사는 장애인일자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6개국의 장애인 취업 현황 및 특성,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일자리 사례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각 국가의 최근 3년간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예전 자료는 기존에 발간된 연구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본 조사의 내용 중 일자리 사례분석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사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와 병행하여 이 분야의 장애인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캐나다의 사례로 창업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육과 재정지원을 하는 ‘온타리오 자영업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영국의 경우 다양한 일자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매업 분야의 일자리로 다국적 슈퍼마켓 포장 및 지원업무, DIY 상점 판매 도우미, 소매 DVD&CD 판매점 보급원 등이다. 네 번째로 호주는 ‘JobAcces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가정용 기기 검사 업무, 카페서비스 업무, 백화점 일자리, 세금 컨설턴트, 행정사무직 등에 취업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일본의 경우 홍심원, 종합메디컬 주식회사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일반 고용시장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Job 4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 소득보장 정책이 단순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유인정책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소득보장 정책의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국가의 일자리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 ‘제1의 고용주는 정부’라는 인식 아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행정명령 13548)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정착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일자리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시범 적용된 우수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채용노력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 장애인 특히, 고용여건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우선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의 최근 현황과 고용정책 및 일자리 지원 사례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장애인일자리 현황,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국가 지원, 각국의 신규 개발 및 유망 직종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일자리 정책 및 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우리나라에 소개된 해외 장애인의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자료와 해당국의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검토·분석하였음

II.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일자리 사례

1. 미국

1)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17.1%임. 이 같은 수치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17.8%를 유지한 것에 비해 0.7% 낮음 수치임

2)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남자가 24.7%, 여자가 17.1%로 여자의 고용참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고,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은 6.9%이고, 16세부터 64세 연령층은 27.0%임
-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2%로, 비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분포가 약 18.9%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미국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일자리(Green Job)

- 미국은 일자리 전망이 좋은 녹색일자리에 장애인 취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녹색일자리에 장애인을 진입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최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2) 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 직무 사례

- 미국 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는 장애인 원격근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알선, 직무배치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교육훈련 수행과 민간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수행하고 있음
- NTI가 개발한 직무의 85%는 전화 콜센터를 운영하는 연방정부와 일반 사업체에 고객서비스 사원이며 나머지 15%는 서비스 모니터링, 정부의 설문조사 업무, 텔레마케팅 등이 있음

2. 캐나다

1) 장애인 고용률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중 장애인의 고용률은 53.5%¹⁾(비장애인 고용률 75.1%), 실업률은 10.4%(비장애인 실업률 6.8%)를 차지함

1)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을 포함한 수치임

2) 장애인 고용현황

-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보수 수준 및 장애인들이 직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공서비스 고용 조사(Public Service Employee Survey)'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 2011년도 5차년도 조사 분석 결과가 공시되었음
-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5%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비장애인 근무자 85%가 '좋아한다'라는 답변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치로 나타남. 또한 조직 만족도 여부도 비장애인 근로자 66%가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반면 장애인 근로자들은 54%가 '만족한다'라고 답변함

3) 캐나다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 창업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사례(Ontario Self-Employment Benefit)
 - 온타리오주정부는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에게 무료 교육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온타리오 자영업지원(Ontario Self-Employment Benefit: OSEB)을 운영하고 있음
 - 창업에 필요한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영국

1) 장애인 고용률

- 2012년 3월 기준으로 영국에 있는 근로연령 인구의 21%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 근로연령 인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16세에서 64세까지로 정의됨
- 2012년 3월 기준으로 근로연령 장애인의 고용 비율은 47.8%로 비장애인의 75.9%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의 격차는 2005년 31.5%에서 2012년 28.1%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 장애인 고용현황

- 고용현황은 장애 유형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우울증, 불안, 심한 학습장애는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학습장애인의 고용률은 20%미만이지만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고, 6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장애로는 당뇨병, 피부 상태, 가슴/호흡 문제를 가진 장애인으로 조사됨

3) 영국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1) 소매업 부문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

- 다국적 슈퍼마켓 포장 및 지원 업무
- DIY 상점 판매도우미
- 소매 DVD&CD 판매점 보급원

(2) 학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대학식당 주방 보조원
- 지역 슈퍼마켓 직원

(3)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대기업 관리자
- 슈퍼마켓 관리자

4. 호주

1)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의 고용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2009년 15세에서 64세 사이에서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83%인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5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장애인 고용현황

-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고용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 증가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률이 다르게 분석되고 있음
- ABS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ers (2009)에 의하면, 장애인의 고용 참가율은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45세에서 54세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55세에서 64세사이의 장애인의 경우 40%의 가장 낮은 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3) 호주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 호주에서는 현재 'JobAccess'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고용에 대한 무료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작업장에서의 어려움, 재정적 지원, 서비스 정보의 접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역사회, 고용주,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음. 다음은 'JobAccess'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장애인의 실제적인 사례임

(1) 고용지원기금 활용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가정용 기기 검사 업무

(2) 지원 급여 시스템(Supported Wage System)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카페 서비스 업무

(3) 장애고용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백화점 일자리 사례

(4) 사회적 기업 호주(Social Firms Australia: SoFA)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세금 컨설턴트 일자리 사례

(5) 지역사회 고용 옵션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례

- 행정 사무직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례

2. 일본

1) 장애인 고용률

- 2012년 11월 기준, 민간기업의 실 고용률은 과거대비 최고 기록으로 1.69%(전년도 1.65%)이고, 공공기관의 실 고용률은 2.31%로 전년대비 0.07% 상향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수는 7,105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음

2) 장애인 고용현황

- 민간기업(56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382,363.5명으로 2011년보다 4.4%(16,164.5명) 증가하였음
- 법정고용률 달성기업 비율은 56~100인 미만 규모기업이 43.7%, 100~300인 미만이 48.5%, 300~500인 미만이 46.8%, 500~1,000인 미만이 47.1%, 1,000인 이상이 57.5%임
- 산업별로는 '광업, 채석업',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및 '복합 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에서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3) 일본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1) 사회복지법인 홍심원

- 2012년에 설립된 홍심원은 장애인 취로이행지원을 실시하는 다기능형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한 산업용 비닐을 제조하고 있음. 다른 회사에서 모방할 수 없는 기술과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 등을 토대로 2012년에 후생노동성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함

(2) 종합메디컬 주식회사

- 약국, 의료 경영컨설팅, 의료 관련기관 기기 대여 및 임대 등을 실시하는 종합메디컬 주식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는 34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4명, 청각장애인 4명, 지체부자유 14명, 지적장애인 7명, 내부장애인 5명 등이 근무하고 있음
- 장애인들의 주요 업무는 시각장애인은 헬스키퍼와 사무업무, 지체부자유는 사

무업무 및 영업과 IT업무, 내부장애인은 사무업무와 영업, 지적장애인은 사무보조업무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3) 주식회사 히로시마 은행

- 은행업이 주요 업무인 히로시마 은행은 3,417명의 직원 중 5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음. 이 중 시각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16명, 지체부자유 24명, 내부장애 13명, 지적장애 1명, 정신장애 2명이 근무하고 있음

6. 독일

1) 장애인 고용률

- 2011년 기준으로 독일의 중증장애를 가진 경제활동인구는 3백 27만 여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3년 말에는 중증 장애인 경제활동인구가 다시 전체인구의 10%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장애인 고용현황

- 독일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 가 중증장애인이며, 특히 60세~65세의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중증장애인 비율이 18%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활동 중인 중증장애인의 비율에서 55세에서 65세 연령대가 48%, 전체 경제활동 중인 중증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함

3) 독일의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 Job 4000

- 2007년 초부터 연방노동·사회부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Job 4000'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주무부서는 연방노동·사회부로 예산은 약 30백만 유로가 연방노동·사회부에 서, 각 주 연방에서 20백만 유로를 나누어 투자함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증 젊은 장애인의 직업적 통합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작업장 이외의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직업적 사회통합을 지원하였음

Ⅲ.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장애인 고용의 핵심적 토대로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단계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해 왔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복지의 방향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음

2. 장애인의 가장 충실한 고용주는 정부

-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제1의 고용주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행정명령 13548)를 취하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2013년 현재, 연방정부 장애인근로자는 13%임)
- 독일의 경우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민간부문보다 훨씬 높아 2013년 현재 독일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이 6.5%이고, 민간사업장은 4%임. 이 수치는 독일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5%인 것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정부기관이 장애인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3. 사업주 주도적 지원방안 모색

- 미국 장애인고용정책사무국(ODEP)에서 실시하는 사업주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각 주의 사업주가 구축한 웹사이트를 운영, 장애인 인력풀, 장애고용 관련 정보, 구직 장애인에게 훈련과 근로경험 제공, 우수 고용사례 공유, 오프라인 회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 사업주 스스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도적으로 고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함
- 캐나다도 강제성을 띤 프로그램이긴 하나 '기업의 고용평등 달성 프로그램 (LEEP)'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평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용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사업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의 고용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각 국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 소득보장 정책이 단순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유인정책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실효성 있는 소득보장 정책의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각 국의 일자리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 '제1의 고용주는 정부'라는 인식 아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행정명령 13548)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정착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일자리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시범 적용된 우수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채용노력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Ⅶ. 인권증진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최승철, 강경숙, 김주영, 최미선

요약

본 매뉴얼은 교육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차별이 무엇인지 구체적·실용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에서의 장애 차별에 대한 교육 기관과 장애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장애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매뉴얼은 먼저 교육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요건을 사례를 곁들여 살펴보고 교육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법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과 다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 본문에서 세부 영역별/차별 유형별로 무엇이 교육에서의 장애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가상사례, 외국 지침상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본론의 세부영역은 먼저 직접차별·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금지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전자는 입학, 전학·전입, 수업·시험·실습, 현장견학·수학여행 등 교육 세부 영역별로, 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로 열거한 것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 세부사항으로 나누었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났으나 교육기관 종사자들과 비장애학생 및 보호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들도 교육 영역에서 장애 차별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임
- 교육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차별이 무엇인지 구체적·실용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장애 차별에 대한 교육기관 종사자들과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교육에서의 장애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데 본 매뉴얼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요건 제시
 - 교육 영역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장애보조조건 또는 보조기구 사용 방해 등의 차별 유형과 이들이 성립되는 요건을 사례를 곁들여 분석,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상충 소지 분석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가 교육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규정된 '교육보조인력'의 기능과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기능이 어떻게 보완적이고 어떤 지점에서 상충하는지 분석
- 차별 종류별/교육 세부영역별로 무엇이 장애 차별이 될 수 있는지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가상사례, 외국 지침상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

II.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차별 유형과 구성요건(총론 지침)

-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장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장애가 아니었다라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을, 즉 해당 장애가 없는 개인에게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함
- 불리한 대우란 장애인이 어떤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장애인의 유형·무형의 이해관계 및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대우로는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입을 거부하는 것, 장애인의 학습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장애인에게 질이 떨어지는 교습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에게 입학 지원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이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님. 정당한 사유로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학교 등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발생시키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해당 교육 서비스나 절차 등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음
- 간접차별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해당 기준의 부정적 효과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충분히 회피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사전에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문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간접차별임
- 정당한 편의가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해당 활동(입학 시험, 교내외 학습 활동, 평가, 도서관 등 시설 이용, 등하교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그들 모두에게 해당 활동을 똑같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님
-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가진 지원자나 학생이 또는 그 부모들이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비공식적인 상호 협의를 시작해야 함.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요구가 없으면 편의제공을 위해 비공식적 상호 협의를 시작해야 할

의무,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한편 비공식적 상호 협의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편의가 여러 개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편의 제공자는 장애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학교는 자신이 생산·배포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학생, 장애학생의 장애를 가진 보호자, 학교 밖의 장애인 등이 장애로 인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공해야 함
- 특정 정당한 편의가 그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비용이 좀 든다거나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정도의 부담이나 곤란이 아니라 지나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례적이지 못한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지는 않음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특수교육법」과의 관계 (보조인력의 문제)
 -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보조인력'의 기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인적 편의로서 '교육보조인력'의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특수교육법」상 보조인력의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통학을 보조하는 기능 등임
 - 다만 「특수교육법」상 보조인력의 상기 기능 중 '신변처리' 또는 그에 대한 보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일반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편의제공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교육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투약과 같은 신변처리와 같이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경우에는 편의제공 의무가 촉발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성인이 아닌 학생들은 등교해서 학교에 있는 동안 신변처리를 보조해줄 가족 등이 가용하지 않으며, 등교해 있는 동안 학생들의 신변에 관해서는 학교가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보조인력에게 장애학생 신변처리의 보조 임무를 맡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러한 점

때문에 장애학생의 신변처리에 대한 보조를 정당한 편의로 규정해도 법리상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수는 있음

IV. 교육 세부영역별 장애 차별 금지 지침

1.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금지

1) 입학

- 학교 측이 어떤 장애아동의 장애가 중중이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입학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아동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여전히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 소지가 있음
- 유치원 측이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면서 그 거부 사유로 다른 아동의 보호자들이 자신들의 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유치원 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면, 이 거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불리한 대우로서 그 자체로 직접차별에 해당됨
- 특수교사가 없으면 해당 장애아동의 학습활동이 상당히 어렵고 현재 학교에 특수교사가 없어서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부한 경우, 학교가 상급기관에 대해 특수교사의 배정을 요청하는 등 사전에 특수교사를 확보하는 노력을 성실히 해오지 않았다면 입학 거부는 정당하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전학 및 입학

- 유치원 측이 원생의 장애가 심하여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입을 거부하면서 다른 여건이 좋은 유치원을 알아보라고 권유한 경우, 장애아동에게 각종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여전히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로 전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 소지가 있음
- 학교 측이 자신의 편의시설의 수준에 비해 전입을 신청한 장애학생의 장애가 너무 중중이어서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입을 거부한 경우, 만약

그 편의시설의 낮은 수준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이 미준수 자체는 위법이고 이에 따라 전입 거부도 차별에 해당함

3) 수업이나 실험·실습(교실에서의 수업)

- 학교가 장애학생이 장애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특정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장애로 인한 지장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리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참여 배제는 정당할 소지가 있음
- 학교 측이 과학실험이나 가정실습 등의 특정 수업활동에서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수업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차별일 소지가 있음
- 학교 측이 다른 학생과는 달리 장애학생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특정 과목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규 학습,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유선택활동 시 과목 선택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일 소지가 있음

4) 현장견학, 수학여행(교외 활동)

- 학교 측이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해 현장견학이나 수학여행 장소까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현장견학이나 수학여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이동 수단, 이동 보조인력 등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제공해도 여전히 이동이 어렵거나 그러한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차별이 아닐 수 있음
- 학교 측이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수학여행에서 장애학생을 돌보는 조건으로 장애학생을 수학여행에 참여시키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일 소지가 있음.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부인바, 수학여행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교가 이행해야 할 의무임

5) 취업 및 진로교육

-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만약 교육책임자가 장애학생의 장애에 따른 능력과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장애학생에게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 제공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달리 소정의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그러한 실시에 정당 사유가 없다면 이는 간접차별일 수 있음

6) 장애학생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 교육책임자나 교직원이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보조인 등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학생의 장애를 이유로 또는 장애와 관련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금지됨. 이때 어떤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모욕감 또는 비하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는 해당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장애인의 관련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바, 비장애인에게는 모욕감이나 비하감을 유발하지 않는 언어적 표현이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이를 유발할 수 있음

2.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1) 교육시설 내 이동·접근을 위한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의 제공

- 교육책임자는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교내에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필요할 경우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학생의 이동용 보조기구가 고장이 나서 장애학생이 교내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교육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준용한 「편의증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거, 법적 기준에 맞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라도 특정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해야 함

2) 학습 장소의 이용을 위한 설비의 설치·개조 및 관행 변경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학습 장소의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개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관련 관행을 변경해야 함

3)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의 참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각종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하는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제공해야 함
-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등·하교 시에 학교 정문이나 그 접근로에서 교실까지 혼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보조인력은 장애학생의 등·하교 시의 이동을 보조할 수 있음

4) 교육 교보재의 이용을 위한 변경이나 보조기구·보조인력의 제공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는 달리 장애로 인해 학습 정보를 담은 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해당 자료의 포맷을 장애학생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그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보조기구나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함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교육 교보재의 이용을 위한 변경이나 보조기구·보조인력의 제공 등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시점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빠른 시간 또는 시일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함

5) 교육활동에서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보조기구·보조인력의 제공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각종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의사소통의 복잡성, 장애 특성 및 기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조하는 보청기 등 보조기구나, 수화통역사, 대필자 등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함
- 교육책임자는 청각장애학생이 그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할 때,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나, 필담자 또는 수화통역사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함
- 교육책임자는 시각장애학생이 그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할 때,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낭독자 등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인력이나 기타 의사소통 보조수단을 제공해야 함

6)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방법 및 평가 방법의 적용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해 장애학생에게 기존의 교육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그 결과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에 따른 다른 교육 방법이나 평가 방법을 요구할 경우, 적절한 학습 진단을 통해 해당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해야 함
- 학습 진단을 할 때,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 학습(수학) 능력일 경우에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해 학습 능력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러한 조치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진단 결과로 인해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함

7)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

- 교육책임자는 비장애학생과 달리 장애로 인해 등·하교 등 통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 통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보조수단,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해야 함

8) 입학시험이나 입학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로 인해 입학시험을 볼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요청하면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함
- 학교 측은 입학시험이나 입학절차에서 장애로 인해 정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인은 언제까지 어디로 이를 신청하라는 것을 입학시험 요강이나 공고 등을 통해 널리 공지해야 함. 한편 장애인이 이러한 공지 내용을 몰라서 입학시험 당일 날 시험장에서 시험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요구할 경우, 학교 측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해야 함

9) 기숙사 생활 등 기타 교내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책임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

해 비장애학생과 달리 기숙사 생활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인력, 보조기구 등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기숙사의 규칙을 변경해야 함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교무실(학사처·학생처)과 교육행정실(사무처) 등의 학교 본부와 보건관리센터, 학술정보관, 학생회관, 체육관, 식당 등의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편의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함

10)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편의 제공

- 학교책임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나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 관련자가 수업,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교내외 교육활동에 장애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참여가 교사나 다른 학생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그 참여를 허용해야 하고 참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11)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 학교는 자신이 생산·배포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학생, 장애학생의 장애를 가진 보호자, 학교 밖의 장애인 등이 장애로 인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공해야 함
- 학교가 교내 또는 교외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장애학생, 장애학생의 장애를 가진 보호자 및 다른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행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일방향적 또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이나 자료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점자자료 등의 편의를 행사 요구할 경우, 학교 측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요구받은 것이나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편의를 제공해야 함

1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 및 여건 마련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장애학생지원부서의 설치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해야 함.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가 취하는 조치는 편의 요청 사항의 접수 및 처

- 리, 장애학생용 교보재의 획득 및 관리, 교사, 교육보조인력 등에 대한 관련 교육, 장애학생 등에 대한 편의 신청 안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과 부모가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고 편의 제공에 필요한 장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방된 학교 분위기 및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음. 또한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정당한 편의에 대한 신청 및 제공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 함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최승철, 윤재영, 김원영, 강민구, 도미화

요약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으로, 권리 증진 목표와, 목표 달성에서의 진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전략의 주요 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근거, 지표 산식, 자료 수집 및 출처, 측정 주기, 분리, 코멘트 및 한계 등을 적시하는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인천전략 지표가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 사이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게 안내함으로써 각국의 인천전략 목표의 이행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43개의 인천전략 핵심지표 중 유엔에스캅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32개 지표 각각에 대해 유엔의 인권지표 메타데이터시트 작성 지침에 따라 지표 정의, 근거, 지표 산식, 자료 수집 및 출처, 측정 주기, 분리, 코멘트 및 한계 등을 포함한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새천년개발계획 등 국제개발목표는 목표 달성에서의 진척을 모니터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포함하며 국제개발목표의 하나인 인천전략도 그러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국제개발목표의 지표는 모든 관련 국가에서 일관되게 측정되어야 하기에 지표 정의, 근거, 산식, 자료 수집 및 출처 등을 적시하는 메타데이터시트가 필요하며, 유엔은 이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인천전략 지표의 경우에는 측정하기 어려운 장애인 권리의 이행을 측정하려는 의욕 때문에 측정이 어렵고, 심지어는 그 정의조차 어려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전략의 주요 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근거, 지표 산식, 자료 수집 및 출처, 측정 주기, 분리, 코멘트 및 한계 등을 적시하는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인천전략 지표가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 사이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게 안내하는 데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3개의 인천전략 핵심지표 중 유엔에스캅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32개 지표 각각에 대해 유엔의 인권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작성 지침에 따라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
- 이를 위해 새천년개발계획 지표의 메타데이터시트 등을 수집, 분석
- 또한 지표의 정의 및 근거,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지표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협약과 유엔의 관련 원칙이나 행동계획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Ⅱ. 인천전략 주요 지표별 메타데이터시트(산식)

※ 메타데이터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산식을 제시했음

지표명	산식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력 평가) 국제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PPP에\ 대해\ 조정되는\ 일일\ 1.25달러\ 이하로\ 소득\ 을\ 벌거나\ 소비를\ 하는\ 장애인\ 총수 / 장애인\ 총\ 인구수) / (PPP에\ 대해\ 조정되는\ 일일\ 1.25달러\ 이하로\ 소득을\ 벌거나\ 소비를\ 하는\ 비장애인\ 총수 / 비장애인\ 총\ 인구수)$
1.2 전체 고용인구 대 고용 장애인 비율	$(15세\ 이상의\ 고용된\ 장애인\ 총수 / 15세\ 이상\ 장애인\ 총수) / (15세\ 이상의\ 고용된\ 비장애인\ 총수 / 15세\ 이상\ 비장애인\ 총수)$
1.3 훈련받은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지난\ 1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 가능\ 연령의\ 장애인\ 총수 / 지난\ 1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노동\ 가능\ 연령의\ 인구수) * 100$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 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율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수 / 국가입법기구의\ 총\ 의석\ 수) * 100$ 단, 국가 의회가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만 대상으로 한다.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서로\ 다른\ 조직화된\ 장애인\ 집단(장애인단체)들을\ 공식적으로\ 각각\ 대표\ 하는\ 구성원\ 숫자 /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 숫자) * 100$ 동일한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개인 여러 명이 국가조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 이는 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인의 비율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기구'\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 의사결정\ 기구의,\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장애인\ 구성원\ 총수 / 당해\ 기구의\ 구성원\ 총수) * 100$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장애인\ 투표자가\ 접근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동시에\ 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기표할\ 수\ 있게\ 기표용\ 보조기구\ 한\ 가지\ 이상을\ 비치한,\ 국가\ 수도\ 내의\ 투표소\ 총수 / 국가\ 수도\ 내의\ 투표소\ 총수) * 100$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 할 수 있게 관련 공

지표명	산식
청사의 비율	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국가 수도 내의 정부 청사 총 수 / 국가 수도 내의 정부청사 총 수) * 100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 일국의 공인된 국제공항 총 수 / 일국의 공인된 국제공항 총 수) * 100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막 및 수화통역의 비율	(자막과 또는 수화통역이 모두 제공되는, 비상업적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연간 총 뉴스 프로그램 횟수 / 비상업적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연간 총 뉴스 프로그램 횟수) * 100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 비율	1-1. (일 년간 중앙정부가 공중을 대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장애인 접근을 위한 포맷이 하나 이상 적용된 문서의 총 수 / 일 년간 중앙정부가 공중을 대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문서의 총 수) * 100 1-2. (일 년간 중앙정부가 장애인에게서 받은, 공공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건수 / 일 년간 중앙정부가 장애인에게서 공공 문서에 대해 접근성 제공 요청을 받은 총 건수) * 100 2. (WAI 표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준수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총 수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총 수) * 100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특정 보조기구나 다른 생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총 수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 특정 보조기구나 다른 생산품이 필요한 장애인 총 수) * 100
4.1 정부 지원의 보건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지난 1년 동안 정부 지원의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 총수 / 장애인 총수) / (지난 1년 동안 정부 지원의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장애인 총수 / 비장애인 총수)
4.2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등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	1.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 총수 /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체 인구 수) * 100, 또는 2.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 총수 / 장애인 총수) * 100

지표명	산식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 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 훈련,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 기관 수,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종류, 투여되는 연간 정부예산 총액, 그리고 활동보조 등 주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연간 실제 이용자 총 수 또는 연간 이용 총 건 수(활동보조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은 이용 건수(이용자 연 인원 수)를 집계한다)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수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취학 전 아동의 숫자는 두 가지일 수 있고, 따라서 산식도 두 가지일 수 있다. 1) 지표 측정 시점 전 회계연도 동안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국가에 의해 민간기관에 위탁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의 총 수, 또는 2) 지표 측정 시점에서 집계된 것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국가에 의해 민간기관에 위탁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공식적인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의 추계된 총 수
5.2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	1. 장애아동의 초등교육에서의 GER = ((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초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총 장애아동 숫자)/(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초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 인구)) * 100, 또는 2. 초등교육 취학률에서의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 = (장애아동의 초등교육에서의 GER) / (비장애아동의 초등교육에서의 GER)
5.3 장애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	1. 장애아동의 중등교육에서의 GER = ((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중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총 장애아동 숫자)/(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중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 인구)) * 100, 또는 2. 중등교육 취학률에서의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 = (장애아동의 중등교육에서의 GER) / (비장애아동의 중등교육에서의 GER)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GEWE만을 목표로 하는 또는 이를 그 목표의 하나로 하는 현행의 국가행동계획에 고용, 교육을 포함한 영역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 즉 장애포괄적인 내용을 유엔에스캅이 정한 임의적 기준 이상으로 포함시킨 국가의 수

지표명	산식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비율	1.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수 / 국가입법기구의 총 의석 수) * 100, 또는 2.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수 / 국가입법기구에서 여성 의석 총 수) * 100, 또는 3.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수 /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 의석 총 수) * 100 단, 국가 의회가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만 대상으로 한다.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지난 1년 또는 정부예산회기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공한 SRH 서비스를 이용한 12세 이상 장애여성 총수 / 12세 이상 장애여성 총수) (지난 1년 또는 정부예산회기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공한 SRH 서비스를 이용한 12세 이상 비장애여성 총수 / 12세 이상 비장애여성 총수) 이용 인원수는 실 인원수일 수 있고 연인원수일 수도 있다.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스토킹, 성희롱,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및 이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의 현행 프로그램의 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조치의 경우, 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하고, 장애 특정한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 숫자와 지원된 예산액 등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되어 집계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 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수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스토킹, 성희롱,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및 이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의 현행 프로그램의 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조치의 경우, 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하고, 장애 특정한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 숫자와 지원된 예산액 등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되어 집계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지표명	산식
7.1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가용성	<p>하나의 포괄적인 주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 중 그 세부영역들의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했는지 여부와 그 세부영역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용을 적시한다.</p> <p>개별적인 여러 주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는지 여부와 그 개별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용을 적시한다.</p> <p>장애 특정한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여했는지 여부와 장애 특정한 내용을 적시한다.</p>
7.2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포괄적인 훈련의 가용성	<p>지난 1~2년 동안 DRR 서비스 인력의 훈련에 사용된 모든 개별 교재 또는 매뉴얼 중 장애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교재 및 매뉴얼의 제목과, 그 고려한 내용과 그러한 교재 및 매뉴얼의 사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인력의 유형을 서술한다.</p> <p>또한 장애 특정한 국가 DRR 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면, 그 훈련에 사용되는 교재 또는 매뉴얼의 제목과 그 간략한 내용, 그리고 그 사용 대상이 된 서비스 인력의 유형을 서술한다.</p>
7.3 접근 가능한 긴급대피소 및 재난구호소의 비율	<p>(긴급대피소로서의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 또는 본래 용도의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긴급대피소의 총 수/ 사전 지정된 전국의 자연재해 대처용 긴급대피소 총 수) * 100</p>
8.1 ICF에 근거한 장애의 연령·성별·인종·사회경제적 지위별 출현율	<p>ICF에 근거하여 측정된 장애의 연령별, 성별, 인종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출현율</p>
8.2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 수	<p>자국의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2017년까지 모두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의 수</p> <p>특정 인천전략 목표 달성의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데 요구되는 인천전략 지표 및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유사 지표 및 데이터는, 그 상황을 아태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 데이터가 상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해당 상황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다.</p>

지표명	산식
8.3 건강·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주류 개발프로그램 및 정부 서비스에서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분리 데이터의 가용성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연간 이용에 관한 모든 개별 행정 통계 데이터나 서베이 데이터들 중 장애 그리고/또는 연령으로 분리 가능한 것들의 제목과 간략한 내용
9.1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 수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총수로 계산한다.
9.2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별금지법의 유무	차별 금지가 주요 목적인 일국 차원의 법이 장애를 근거로 한 직접차별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장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기제를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을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한다.
10.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모든 유엔에스캅 회원국·준회원국과 이들 국가의 국내 민간 부문이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실체들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과, 그 기부가 물품인 경우에 이를 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된 금액 기부한 물품의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제시장 가격으로 환산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전동일, 김동기, 유경민

요약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계기가 되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가 등장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중심의 개인별전달체계', '권리옹호제도 및 기구 도입'을 묶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주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초기 4가지 구성요소(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자립생활 보장,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첫째,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 판정체계와 간접소득보장제도 성격의 감면·할인제도를 직접 소득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탈시설화-자립생활 명문화를 요구하였는바, 이를 위해 ①단기적으로 시설소규모화, 장기적으로 시설폐쇄 정책 명시, ②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에 명시), ③시설내 인권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 ④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 ⑤탈시설전환기관 설치, ⑥전환주거 지원제도 시행, ⑦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셋째, 장애인권익옹호(P&A)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침해 기관을 적발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넷째,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 중심 전달체계와 대통령 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기 보다 「장애인복지법」을 부분 개정하여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전면 개정이 되더라도 범명에 '권리'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문항 삭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총론은 모두 동의하나 '탈시설'의 개념에 대해 장애인단체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옹호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가능성이 높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섯째, 상설 장애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의 기능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 배경

- 본 연구 목적은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 하는데 있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제안한 「장애인권리 보장법」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주요 내용별 쟁점 분석
 - 성명서, 보도자료, 기고문 등을 통한 내용 파악
 - FGI를 통한 추가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의견 수렴
- 자문회의 운영
 - 연구 방향 설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입법 방향 자문

3. 연구 한계점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표명한 자료가 많지 않음. 이에 본 연구는 의견 수렴 과정과 기고, 기사 등에 나타난 소속을 밝힌 장애인단체 인사의 발언 등을 포함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시각을 재구성하였음
- 이로 인해 개별 사안에 따른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의견과 단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 본 연구는 최근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장애인단체 내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내부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구 결과는 잠정적일 수 있음

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 배경

-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계기가 되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가 등장
-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중심의 개인별전달체계', '권리옹호제도 및 기구 도입'을 묶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주장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의 요구를 집약하는 과정 중에 등장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 단체 주장의 변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주요 내용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제18대 대선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칭)'를 제안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내용 제시: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자립생활 보장, 장애인권리옹호제도(Protection and Advocacy: P&A) 도입,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계 대토론회(2013. 6. 20.)에 8가지 요구사항으로 확대: 1) 장애정의의 전환, 2) 탈시설화, 전화서비스체계 구축, 3) 장애인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 4)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5) 간접 소득보장을 직접 소득보장으로 전환, 6) 예산 확대, 7) 권리옹호 체계 구축, 8) 지역사회 자립생활권리 확보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2013. 8. 26.)은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을 제외
- 본 연구 논의의 범위
 -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초기 4가지 구성요소(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자립생활 보장,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가 핵심

2. 「장애인권리보장법」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이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독립적인 이슈이기도 함

-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 하락 및 탈락자 발생이 계기가 되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이와 관련하여 등급단순화, 감면할인제도, 판정도구 등 쟁점들을 남겨두고 있음
- 탈시설화-자립생활 보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화 선언 및 탈시설 전환서비스 제도화,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요구함
 - 특히 탈시설화를 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함
-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
 -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침해 기관을 적발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말함
-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제안될 당시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에서 제외됨
 -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내용은 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독자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소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된 내용으로 네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장애인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성명서, 보도자료, 토론문, 기고 등을 통해 공식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함

Ⅲ. 「장애인권리보장법」 주요 쟁점

1. 장애등급제 폐지

- 대안 판정체계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판정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장애연금, 활동지원, 감면할인제도 등에 대한 적용대상을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적용하자고 제안
 - 개인별지원체계는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됨
- 감면·할인제도의 전환
 - 장애등급의 구별 없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할인제도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직접 소득으로 전환시키면 되고, 등급별로 차등되는 감면·할인제도는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

2. 탈시설화 · 자립생활 명문화

- 탈시설화의 개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화를 “신규시설의 설립 금지나 시설폐쇄”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탈시설화 계획 수립”을 요구함
 - 신규시설의 설립 금지나 시설폐쇄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생활정착금, 탈시설전환국,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탈시설 정책 목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회의’는 탈시설 정책 관련하여 ①단기적으로 시설소규모화, 장기적으로 시설폐쇄 정책 명시, ②탈시설전환 계획 수립(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에 명시), ③시설내 인권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 ④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 ⑤탈시설전환기관 설치, ⑥전환주거 지원제도 시행, ⑦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급을 주장

3. 장애인권리옹호(P&A)제도 도입

-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의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와의 차별성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장애인권센터 설치'(추진목표 III-2)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상시 조직 설치를 목표로 설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의 필요한 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소관 부처
 -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소관부처가 결정되어야 함
 - 새로운 장애인권리옹호제도가 필요하다면 이 제도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데, 소관 법률은 어떤 법률로 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장애인권리옹호기구의 권한
 - 장애인권리옹호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리옹호기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권과 대리소송권을 갖추어야 함
 - 향후 이러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중심 전달체계
 - 장애인 중심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장애인 전달체계를 분리한 전달체계를 말함
 - 접근성, 원스탑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역행할 수 있음
- 대통령 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중심 전달과 더불어 대통령 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음

IV.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현행 법령과의 관계

1. 논의 필요성

- 제3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제4장은 형식적 요건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형식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개정할 때 법 형식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함

2. 전면 개정의 타당성

- 법령이 당연히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법령에 ‘권리보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법령에 부여하는 선언적 의미 밖에 없음
- ‘권리보장’이라는 용어는 국제협약에서 발견되나 추상적인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개별법에 의해 다시 규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권리보장’을 강조 또는 선언적 의미의 피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권리로서 기술해야 하는 개별법에서 ‘권리보장’이라는 용어는 큰 의미가 없음

V.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입법 방향

1. 내용적 측면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개인별지원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의 구축임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할인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유지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즉, 기존 직접소득보장제도와 간접소득보장제도 그리고 현물급여 등에 대한 별도의 판정도구 또는 판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관련 입법이 구체화하기 위해 장애인단체간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자기결정권에 의한 탈시설이 실현되도록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시설은 개인별 탈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탈시설화 정책 수단으로 탈시설 전환시스템을 마련토록 함
-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 도입
 - 장애인권리옹호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임의조사권 등 일부 권한을 '인권센터' 소속 직원에 부여할 수 있음
-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사회복지 통합 전달체계 구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현하기 어려워 졌음
 - 대통령 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로 개편은 논의될 수 있으나 수준에 고려해야 함

2. 형식적 측면

1)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설정

-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는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법령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
 - 법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며, 그 방향은 긍정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만약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음

- 법명이 바뀌었다고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음

○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

- 앞에서 제시한 법명과 내용, 그리고 법명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내용의 변화의 수준이 법명을 바꿀 만큼 상징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가 모호해짐
- 오히려, 박병식 외(2008, 159)와 우주형(2011, 157)은 「장애인복지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개칭하여 급부보장규범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2)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간의 관계

○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 ‘장애인등록제 폐지’, ‘탈시설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의 내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수정이 요구됨
- 특히 중경증 구분의 필요성이 큰 고용보장 정책 영역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의무고용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등급 표기를 포기할 경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간 장애인고용정책 간 이질화가 심화될 우려 있음

○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

- 장애인 정책은 소득보장, 고용보장, 일상생활지원, 의료보장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고용보장정책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은 장애계로 줄곧 주장해 온 바이며 세계적인 추세임
- 장애인등록제 폐지 등은 통합판정체계로의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음
- 판정체계는 다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용자 중심성’을 토대로 구성될 수

있음

- 법체계 차원에서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면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통합판정체계를 포기하고 서비스별로 판정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 통합판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판정도구의 변화는 40%대의 등록장애인의 탈락이 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정도구에 따라 탈락률이 달라질 수 있음

VI. 결 론

1. 요약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의 요구안 검토
 - 논의과정 중에 법 형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대체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
 - 법 내용 측면에서 장애인등록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은 일부 문항 수정 또는 타법 개정을 통해 반영 가능
 - 즉,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움
 - 법 형식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타당성 부족
- 입법방향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기 보다 「장애인복지법」을 부분 개정하여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
 - 전면 개정이 되더라도 법령에 '권리'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제32조의2 등의 일부 문항 삭제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음

-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총론은 모두 동의하나 '탈시설'의 개념에 대해 장애인단체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권이용호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가능성이 높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2. 한계점

- 장애인단체의 요구나 구체적인 내용의 반영도
 -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일부 내용들은 폭넓게 의견을 반영하고 종합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논의 과정 중에 있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의견이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단체와 장애인단체간 논의 미흡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단일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소속 단체들간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단체 내부의 입장 표명 이전의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간의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절대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함

3. 제언

- 「장애인권리보장법」 중간 보고서로서의 의의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논의의 성숙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장애인단체의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음
 -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을 요구된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단순히 서비스 몇 개 증가가 아닌 전면적인 변화가 전제됨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계승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창자들도 지적하였다시피, 반드시 법형식은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될 필요는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결국 장애인권리 보장의 증진을 위한 수단이며,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취지를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
- 개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정체계에 대한 연구
 - 개별화 서비스의 변화는 행정상의 변화가 뒤따를 것임
 - 개별화 서비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긍정론은 경계되어야 함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단체의 요구사항이 명료해 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단체간의 논의가 확대될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기 보다 「장애인복지법」을 부분 개정하여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둘째, 전면 개정이 되더라도 법령에 ‘권리’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셋째,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제32조의2 등의 일부 문항 삭제를 통해 반영될 수 있음. 넷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총론은 모두 동의하나 ‘탈시설’의 개념에 대해 장애인단체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다섯째, 권리옹호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가능성이 높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최승철, 조한진, 조윤경, 강동욱, 남세현, 홍현근, 이해경, 김승완, 이진숙, 김지혜
유경민, 김지연, 도미화, 송창근, 최미선

요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의무 기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는 2013. 4. 11부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 중 사립 유치원 500개소,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600개소,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700개소, 연수기관 171개소(전수조사), 직업교육훈련기관 300개소, 사업장(30명 이상~100명 미만) 1,700개소로 총 3,971개소를 대상으로 이들이 동법의 주요 영역에서 관련 차별 금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상담·안내는 지난 2012년 이행 모니터링의 실태조사대상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인 공공·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미술관·박물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체육시설, 공공기관, 시·도립 장애인복지관, 종합병원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이 미진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하였다.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는 2009년 제1차 모니터링 때부터 실시해왔던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의 정도, 장애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또는 태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면,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고, 넷째, 장애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의무화하여야 하여 장애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며, 다섯째, 정부부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지침과 규정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을 충원하고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등의 분야에서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또 어떤 조항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행이 미진한 차별금지 조항 및 분야에 대해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언하는 것임
- 한편, 정부는 지난 3차 모니터링 때부터는 이처럼 법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차의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이행이 미진한 기관 일부에 대해 이행의 개선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이행 개선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 오고 있음. 이것은 해당 기관이 미진하게 이행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미진한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모니터링 사업은 매년 장애 차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각종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장애 차별 인식 조사’도 병행해 왔음. 이 조사는 장애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에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의거하여 2013. 4. 11부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 대해 동법이 금지하는 각종 차별의 금지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임. 2013. 4. 11부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특정한 유형의 교육기관과 일정 규모의 사업장이 각각 교육 분야와 고용 분야에서, 그리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조사대상기관은 사립 유치원 500개소,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600개소,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700개소, 연수기관 171개소(전수조사), 직업교육훈련기관 300개소, 사업장(30명 이상~100명 미만) 1,700개소로 총 3,971개소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모니터링으로, 지난 2012년 이행 모니터링의 실태조사대상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그 대상으로 함. 조사대상기관은 공공·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미술관·박물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체육시설, 공공기관, 시·도립 장애인복지관, 종합병원 총 132개소임
- 2009년 제1차 모니터링 때부터 실시해왔던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의 정도, 장애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또는 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장애 차별 인식 조사임

2) 연구방법

- 조사표를 이용한 실태조사는 조사대상기관이 해당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됨. 조사원은 조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표를 수거할 때 조사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 이외에 조사대상기관이 제공했다고 응답한 정당한 편의에 대해 그 제공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체크함. 이러한 조치는 조사대상기관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음을 조사표에 객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조사표를 이용한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조사대상기관들의 교사와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장애학생과, 장애인근로자 및 비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상담·안내는 대상기관에 대해 이행 개선 모니터링의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를 통해 발송하고 상담안내 요원들이 대상기관과 전화로 기관 방문 시간을 상의하여 정한 후 대상기관을 방문함. 상담안내 요원들은 지난 2012년 조사 이후 금번 2013년 조사 시점까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던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개조되었는지 조사하고, 여전히 개조되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해 그 문제점과 개조해야 할 내용, 개조 비용 등을 상담하고 안내함. 또한 이들 기관이 제4차 모니터링에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시한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여 차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장애인차별 인식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들의 인지도, 이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 정도, 장애 차별에 대한 태도 또는 이해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이용해서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 무작위 추출은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화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이 수행함

II.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²⁾

1.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된 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그간 간간히 언론에 부각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동법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이나마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로, 2012년의 제4차 조사 때의 인지도(56.6%)보다 조금 상승했음. 그렇지만 61.0%의 응답률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9%,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1.1%로, 동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꾸준히 계속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별로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 이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이해도는 다른 차별 금지에 대한 이해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특정 영역에서 장애 차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장애인을 보험에 가입시킬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장애인에게 성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입학 시 별도의 신체검사나 면접을 요구해도 된다’ 등과 같은 항목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즉 그러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 차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때 이처럼 장애 차별에 대한

2) 지면의 한계로 함의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참조 바람.

이해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점검할 때 그러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사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입학 시 장애아동을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조사대상 유치원 492개소 중 1개소에 불과했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의 입학을 공공연하게 거부하거나 입학 과정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입학 거부나 별도의 신체검사 실시는 모두 장애 차별일 소지가 아주 큰바,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즉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함. 또한 장애아동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그러한 배제 및 요구가 위법임을 널리 홍보하여 당해 차별이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사립유치원의 74.0%가 장애아동이 입학했을 때 그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요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26.0%의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장애원생 부모들은 정당한 편의를 받는 권리를 모르고 있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립유치원이 장애아동 입학 시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또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전체 조사대상의 18.0%에 불과함. 이들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사항인바, 관련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서나 담당인력의 기능 또는 임무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해당 정부부처는 그 임무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³⁾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부서나 담당인력의 임무에 대해서는 최승철 외 4명(2013).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66쪽 참조.

3.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입학 시 장애영유아를 입학 및 등록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602개소 중 3개소였지만, 심층면접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의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입학 거부는 장애 차별일 소지가 아주 큰바,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함. 또한 장애영유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그러한 배제가 위법임을 널리 홍보하여 당해 차별이 발생할 경우 차별시정기구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41.9%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58.1%의 어린이집은 책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많은 편의제공 의무기관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예산 미책정' 또는 '예산 부족'을 드는바, 이들 기관들이 예산 책정 시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고려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행이라 할 수 있음. 한편, 상급기관이 어린이집의 예산을 심의·배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책정하여 요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고 있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전체 조사대상의 28.9%에 지나지 않음. 이들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해당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그러한 부서나 담당인력의 기능 또는 임무가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부부처는 우선 그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4.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시설은 조사대상기관의 35.9%가, 그리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60.6%가 장애학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장애학생 현황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바, 해당 정부부처는 이들 기관들이 장애학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 입학 시 장애인을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조사대상시설 566개소 중 3개소였음. 이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해당 기관은 그

배제 사유로 ‘다른 학생들의 반대가 심해서’와 같은 명백히 차별적인 사유를 들고 있는바, 입학에서의 장애인 배제는 거의 모두 차별이라는 점과 어떤 배제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를 평생교육시설에 배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전체 조사대상의 17.2%이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은 14.8%에 불과함. 당해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사항인바, 관련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법은 그러한 부서나 담당인력의 기능 또는 임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해당 정부부처도 이를 정립하지 않았던바, 그 기능을 정립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강의 및 학습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온라인 강의 및 학습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매우 중요함. 설문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강의 파일 및 학습자료에 대한 요청이 전혀 없고 요청 없이도 제공한 건수도 전부 4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은 접근성 문제때문에 원격평생교육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의 19.0%에 불과하다는 점임.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웹 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은 기본임. 해당 정부부처는 모든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반드시 웹 접근성 인증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5. 연수기관

- 연수기관은 조사대상기관의 33.0%가, 그리고 원격연수기관의 경우에는 68.6%가 장애연수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에, 해당 정부부처는 이들 기관들이 장애연수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사대상 연수기관의 62.8%가, 그리고 원격연수기관의 52.9%가 장애인이 입학했을 때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요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고 응답함. 일부 장애인들은 편의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권리인지 몰라서 또는 이를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연수기관은 입학한 장애연수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를 권리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연수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32.9%이고 원격연수기관은 19.6%에 불과함. 편의제공을 위한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정부부처는 담당인력을 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법은 그러한 부서나 담당인력의 기능 또는 임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정부부처도 이를 정립하지 않은바, 그 기능을 정립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강의 및 학습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연수기관의 경우, 온라인 강의 및 학습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은 원격연수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임. 특히 원격연수기관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웹 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은 기본임. 그렇지만 원격연수기관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25.5%임. 따라서 해당 정부부처는 모든 원격연수기관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6. 직업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조사대상기관의 20.8%가 장애교육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장애학생 현황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바, 해당 정부부처는 이들 기관이 장애교육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심층면접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일부 장애교육생은 자신이 장애인임을 드러내기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분명하게 보장하면서 장애교육생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조사대상기관의 3.6%(11개소)임. 이 중 거의 모두가 '장애가 심하여 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장애인을 입학에서 배제했는바, 해당 정부부처는 이러한 사유가 어떤 경우에 한해 정당할 수 있는지 지침을 만들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12.0%에 불과함. 당해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법은 그러한 부서나 담당인력의 기능 또는 임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해당 정부부처도 이를 정립하지 않았음. 따라서 그 기능을 정립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7. 상시 3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은 ‘고객이 장애인근로자를 선호하지 않아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퇴사할 것 같아서’ 등과 같이 명백히 차별적인 사유를 제시함.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이 이처럼 명백히 장애차별적인 사유로 좌절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인바, 해당 정부부처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근로사업장에 널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응시자가 모집·채용과정에서 채용 기관에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채용 공고문 등에 사전에 고지한 비율은 30.3%로 낮고 장애인응시자가 실제로 채용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한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음. 편의제공에 대한 고지가 없으면 장애인응시자가 이를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은 채용 공고문 등에 반드시 고지해야 함. 해당 정부부처는 홍보 차원에서 비차별적인 모범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여 알릴 때 장애인응시자가 채용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어떻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공고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조사대상 근로사업장 중 사내 전산망(인트라넷)이 시각 및 청각장애인근로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43.6%임.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에서 지체장애, 지적장애 다음으로 청각 및 시각장애가 많이 분포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웹 접근성에 대한 논의 및 점검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사내 전산망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편임. 해당 정부부처는 근로사업장의 사내 전산망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함. 정책 당국은 현재 도래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시대에 이러한 접근성 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상담·안내

- 금번 이행 개선 모니터링 결과에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 상당수의 기관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를 들고 있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공공 종합공연장 등의 경우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임. 또한 상급기관은 동법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야 하는 데, 우선 관련 기관에서 동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 법 이행 의무기관들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로 ‘장애인이 요청하지 않아서’를 들고 있는데 장애인이 요청하지 않아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범조항이나 요청 방법을 몰라서 이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관련 정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인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나아가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는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는 정당한 편의가 될 수 있고,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는지를 작성한 지침이나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IV. 결 론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신규로 부가되는 기관에 대한 법 이행실태 결과 중에서 편의제공 여건 현황의 주요 결과를 비교한 결과,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근로사업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곳의 비율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2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인을 위한 별도 부서나 전담 인력의 배치현황 역시 거의 모든 기관에서 별도 부서나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도 부서는 없으나 전담 인력은 배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28.9%로 가장 높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9.4%로 전담 인력배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내용이나 제공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장애인이나 장애인부모 및 가족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요청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법에 대한 홍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는 특정한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정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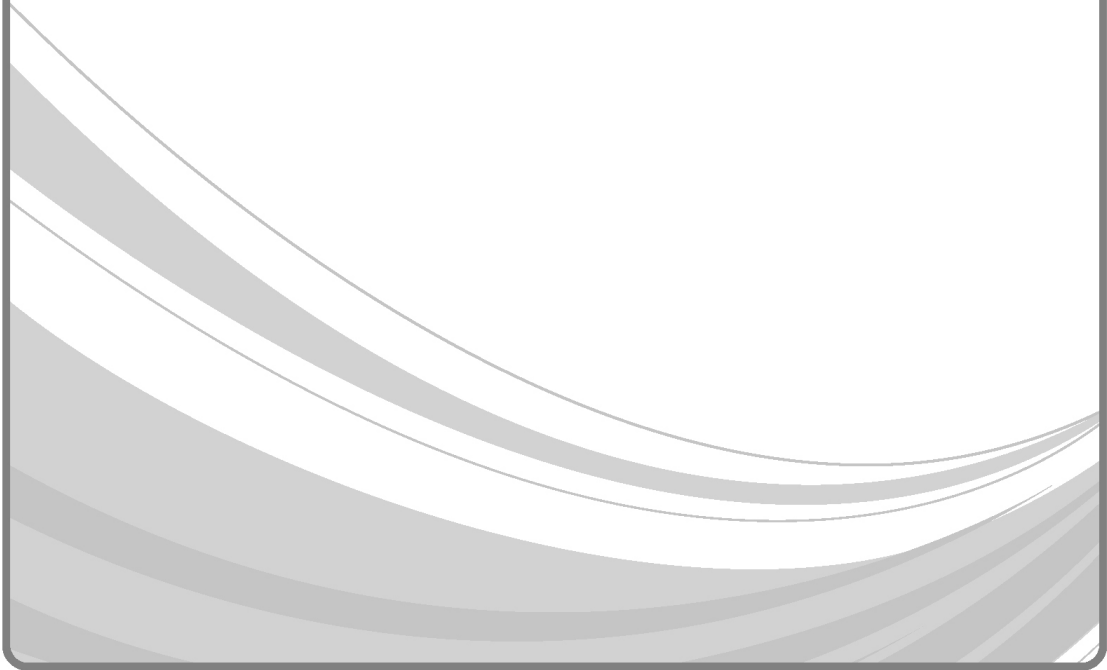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대상인 편의제공 의무기관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예산 미책정’ 또는 ‘예산 부족’을 들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기관은 응답기관 평균 14.0%에 불과함. 편의제공 의무기관들이 예산 책정 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예산을 고려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예산을 심의·배정토록 요청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넷째, 장애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장애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특히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의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등록 또는 입교 시 거부를 당하거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됨. 교육기관에서 입학에서의 장애인 배제는 거의 모두 차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평생교육시설이나 연수기관과 같은 곳에서 장애학생 현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이들 기관이 장애학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다섯째, 정부부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지침과 규정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필수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서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임

여섯째, 장애인의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을 충원하고 확대 배치하여야 함. 편의제공을 위해 별도의 부서나 담당인력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 부서나 담당인력의 기능과 역할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거나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 부서와 담당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음

VIII. 편의증진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권영숙, 이정수, 권영진, 김진욱, 김인순, 김철환, 권흥순, 서동구, 유용흠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위기상황별 대응에 대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작동되고 있으며, 각 중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각 부처별 유관매뉴얼로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매뉴얼이 대부분 위기상황 대응에 매우 취약한 계층보다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계층을 위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관련하여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의 장애포괄적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결과로 장애포괄적인 위기상황대응매뉴얼개발 로드맵 제시하였다.

연구의 수행방법은 먼저 장애포괄적인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검토 및 발생사례 조사를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둘째 국내 및 미국·영국·독일·일본과 기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정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문헌조사 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평가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포괄적인 위기대응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향후 연구방안으로 5개년간의 로드맵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장애포괄적인 피난속도, 피난형태특성, 대피취약점에서 대부분 재난에 대한 상황 인지의 어려움과 상황정보전달 재난대응이 우선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장애포괄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동시에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 재난현황 조사결과 재산피해로는 자연재해인 태풍과 수해이며, 인명피해로는 인적재난인 교통사고 다음으로 화재가 높아 재난 중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화재에 관한 위기대응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국내·외 관련법, 제도,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위기상황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사례와 같이 재난의 유형별 위기상황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국내 장애인관련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위기상황별 대응에 대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작동되고 있으며, 각 중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각 부처별로 유관매뉴얼이 제작됨
- 그러나 이와같은 매뉴얼이 대부분 위기상황 대응에 매우 취약한 계층보다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계층을 위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재해관련 하여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 및 장애인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의 장애포괄적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아울러 이 결과로 장애포괄적인 위기상황대응매뉴얼개발 로드맵 제시하고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장애포괄적인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검토 및 발생사례 조사
 -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
- 정책의 경우, 국내 및 미국·영국·독일·일본과 기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정책현황과 시사점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문헌조사 후 국가별 비교 분석
-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평가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 포괄적인 위기대응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향후 5년간 연구방안 제시

II. 이론적 고찰

1. 장애유형

- 장애인은 근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위급 상황의 대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력 이동이 어려워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해약자라 할 수 있음

<표-1>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출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2. 위기상황 유형

-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위기상황이란 일반적으로 ‘재난’으로 대표된다. ‘재난’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재난의 법적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2> 재난의 법적 성격

구 분	재 난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낙뢰, 지진, 황사, 적조 등 	
근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복구책임	인적재난	자연재난
	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설 : 국가 - 지방시설 : 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 : 개인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가 일부 보조 및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대상지역 3개 시·도 이상 : 선포 → 국무총리 선포대상지역 2개 시·도 이하 :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내지 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 : 대통령 	

Ⅲ. 장애포괄적인 재난 및 사고 사례 조사연구

1.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포괄적인 대처의 취약점

○ 장애포괄적인 피난속도 특성

장애포괄적인 보행 및 이동에서의 행태적 특성⁴⁾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보행·이동면의 바닥상태, 경사, 장애물 등에 큰 영향을 받음

<표-3> 장애포괄적인 특성

구분	보조장치	통행시 특성	보행속도(%)
비 장애인	-	-	1.55
지체 장애인	휠체어	· 수직이동 곤란 · 이동하거나 회전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 · 약간의 요철과 단차에도 통행 곤란 ·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은 때의 동작이 힘들 · 이동거리의 제한	0.87
	목발	·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 · 넘어지기 쉬움 · 보행능력이 약함 · 보행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용하기 곤란하고 위험	0.78
시각 장애인	지팡이	· 지팡이 진행방향의 앞을 두드리며 걸음 · 사행하기 쉬움 · 행태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담이나 벽이 있는 곳에서는 지팡이를 벽면에 대고 걸음	1급시각(보조): 0.76 1급시각(단독): 1.12

○ 장애포괄적인 피난 행태 특성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한⁵⁾ 장애포괄적인 복지관 6개소의 피난실험 결과, 각각의 장애포괄적인 피난행태에 대한 특성이 다음과 같이 분석됨

4) 서혁진외(2007). 지하공간에서의 장애인용 피난안전시설의 설치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7 한국 화재소방학회 추계논문집. p.68.

5)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장애인복지관의 재난방지를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피난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pp.116, 120 재정리.

<표-4> 장애포괄적인 피난 특성

구분	이동속도 특성	비고
시각 장애인	· 보호자 동행 > 흰 지팡이 보행 > 개인보행(보조도구 없이 보행) > 핸드레일 보행 > 흰 지팡이 + 보호자동행 > 핸드레일 + 시각장애인동행 > 핸드레일 + 흰 지팡이 보행	· 단독 보행이 보호자에 의하여 인도되어질 경우 이동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각 경우를 비장애인의 수평 보행속도와 비교해 볼 경우 전체적으로 40 ~ 66%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계단 보행속도의 경우 비장애인의 39 ~ 57%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측
청각 장애인	· 평균 보행속도는 0.95m/s로 조사되었으나 총 22명 중 5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와 큰 차이가 없었음	· 경보 전달의 인지 여부가 청각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
뇌성마비 장애인	· 개인보행속도 평균은 0.93m/s로 나타났으며 기준으로 삼은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1.09m/s에 비교했을 때 약 85% 수준 · 휠체어 장애인 개인이 이동할 경우 이동속도의 평균은 0.71m/s로 나타났으며 기준으로 삼은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1.09m/s에 비교했을 때 약 65% 수준 · 휠체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경우 이동속도의 평균은 1.03m/s로 나타났으며 기준으로 삼은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1.09m/s에 비교했을 때 약 92% 수준	-

○ 장애포괄적인 대피 취약점

2011년 실시⁶⁾된 장애포괄적인 복지관 6개소의 피난실험 결과, 각각의 다양한 장애의 피난시 취약점이 다음과 같이 분석됨

<표-5> 장애포괄적인 대피 취약점

구분	대피 형태	취약점
시각장애인	· 경보 등 알림에 의해 피난 개시 · 보호자 동행, 보행 보조도구(지팡이) 활용, 핸드레일 등 장치 활용	· 재난 발생시 평상시 대피로 숙지가 필요
청각 장애인	·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피난 대처 능력	· 경보전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뇌성마비 장애인	· 경보 등의 알림 후 보호자 또는 안내인에 의해 피난 개시 · 보호자 동행, 휠체어 등 장비 활용	· 상황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자 등의 외부조력이 반드시 필요

6)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장애인복지관의 재난방지를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피난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pp.116, 120 재정리.

2. 국내 재해현황 분석

○ 자연재해

- 국내의 자연재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재해는 태풍과 호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풍의 경우 루사 등의 피해가 있었던 2002년과 2003년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호우에 의한 피해와 동반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는 호우라고 할 수 있음
- 재산피해의 경우, 태풍과 홍수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대설(폭설)이며, 모두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악화시켜 고립시킬 수 있는 재해라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시급함

○ 인적재난

-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및 화재의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자연재난보다 교통사고 및 화재 등 인적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 및 화재에 대한 장애인 안전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3. 소결

- 장애포괄적인 피난속도, 피난행태특성, 대피취약점에서 대부분 재난에 대한 상황인지의 어려움과 상황정보전달 재난대응 시 우선함. 이에 장애포괄적인 대응 매뉴얼 개발과 동시에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국내 재난현황 조사결과 재산피해로는 자연재해인 태풍과 수해이며, 인명피해로는 인적재난인 교통사고 다음으로 화재가 높아 재난 중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화재에 관한 위기대응매뉴얼 개발이 시급함
- 국내외 관련법, 제도,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위기상황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사례와 같이 재난의 유형별 위기상황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IV. 재난관련법·제도·지원체계 현황 및 비교분석

- 국내의 경우 재난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상의 중점 추진과제 중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에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음. 또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상의 대비책 중 “긴급 대피체계 구축”의 일환인 ‘재해 약자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에서 중요 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재난으로 부터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현장지침에 따른 재난에 관한 대응으로 소방 및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gement Agency: FEMA)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음.⁷⁾ 현장지침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별 매뉴얼⁸⁾을 기반으로 각 기관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DDA)과 비상대비시민보호법을 근간으로 한 현장지침으로는 건물 설계와 시공·운영에서의 화재예방(BS 5588-8), 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의 실무 규칙,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건물 설계와 접근(BS 8300), 단체별 지침 사례⁹⁾ 등으로 개별가정단위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홍보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시민보호 및 재난도움에 관한 법체제로 시민보호 및 재난도움 연방청에 의해 순환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침으로는 재난대비 매뉴얼과 재해약자 대피 매뉴얼을 통해 재난대비 훈련 (Lükex)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독일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도움청에서 정기간행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기본법, 지진대책특별조치법, 수방법, 재산·치수긴급조치법 등을 근거로 기능별 매뉴얼 구축(의료, 복지, 지휘감독, 비상재해정보서비스, 상하수도, 피난, 검시, 복구, 기타)하여 자위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및 현 단위 홍보자료, 안내 책자 배포하고 있음

7)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계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간 관계론이 재난관리체계의 기초를 구성한다. (강인호, 2006:p.4)

8) 사례: 뉴욕시 안전 가이드, UCSF 장애인 재난 대비 계획 가이드, 코네티컷 주 장애인 재난 대비 계획 가이드, 켄터키 대학 장애인 재난 대비 계획

9) 장애인 접근성 디자인가이드(ADP), 리버풀대학 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 규정

<표-6> 현장지침의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재난 약자 대응 매뉴 얼 및 훈련	· 소방 및 민 방 위 훈련	·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별 매뉴얼 ex:뉴욕시 안전 가 이드, UCSF 장 애인 재난 대비 계획 가이드, 코네티컷 주 장 애인 재난 대비 계획 가이드, 켄터키 대학 장 애인 재난 대비 계획	·BS 5588-8 : Fire precautions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use building(건물 설계와 시공, 운영에서의 화재예방) ·Code of practice for means of escape for disabled people (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의 실무 규칙) ·Building Regulations 2000 Approved Document, "M" (건축법규 2000, M 시리즈) ·BS 8300: The design of buildings and their approaches to meet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건 물 설계와 접근) ·Code of practice 실무 규칙 ·단체별 지침 사례 ex:장애인 접근성 디자인가이드(ADP), 리버 풀대학 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 규정	· 재난대비 훈 련 (Lükex) · 재난 대비 매뉴얼 · 재해약자 대 피 매뉴얼	·기능별 매뉴얼 구축(의료, 복지, 지휘감독, 비상 재해정보서비스, 상하수도, 피난, 검사, 복구, 기타) ·자위소방훈련
홍보 및 교육	-	·기관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일 반시민 대상 홍 보	·개별 가정 단위로 재난대응 매뉴얼 홍보	·정기 간행물 제작과 배포 (독일 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 도움청)	·시(홍보관청과 시민복지부) 및 현 단위 홍보자 료, 안내 책자 배부 ·시민활동추진과 (외국어 방재 팜 플렛, 방재 표지 판 등의 외국어 부기)

IV. 결론 및 제언

- 주요 국가별 재난약자 위기상황 대응현황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주요 국
가에서 화재 등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음
- 이에 사회적약자가 재난 시 자립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은 필수적임
-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대책은 있으나, 장애포괄적인 다양한
대책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특징별로 구난방법, 피난방법 등이 고려된 지
원체계 및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행동 및 이성적 특징에 따른 위기상황매뉴얼 개발과

함께 이를 보급, 교육,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개발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매뉴얼의 최종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의 정책제안으로는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 재난발생률이 높은 상황에 대한 장애포괄적인 위기대응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위기상황 법적 지원체계 확립과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의 위기 상황대응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는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제안

건축법 개정마련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분석 연구

김인순, 이소영, 안성준, 이영환, 성진희, 권태하, 유성은

요약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함)에 의해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규정¹⁾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용자에게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²⁾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시점에서 그동안의 편의증진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 법적기준의 적용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허가권자인 담당자의 편의시설 이해 수준에 의해 설치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한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장애물을 만들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는 되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건축적 대안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며 안전하다는 사회적 의식의 부족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높이차이제거를 통한 장애물 제거가 시설적 측면에서의 어떤 혜택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이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로 시작되었으며, 접근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편의시설의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에 대한 체감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실제 현장에서 사례로 적용가능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 및 체육관련 시설 중에서도 본인이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12개의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당시설별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Barrier-free) 주출입구로 만들기 위해서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등의 건축적 행위를 할 경우, 시설별로 투입되는 비용의 회수기간 및 건축물의 순현재가와 내부수익율을 분석하여 추후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

1)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따른 건축물 설계계획을 위한 현실적인 비용수익모델 제시
- 사용자의 요구, 물리적 환경(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적절성, 투자대비 비용산출의 적절성 등이 잘 부합된 실용화 방안 제시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정착을 위하여 비용·개조방법 등에 관한 다각적인 효과분석을 통한 유형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헌연구 : 국내 건축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 등에 대한 법규, 국외 주출입구 유형에 대한 자료수집 하고 연구의 내실화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함
- 실태조사 : 장애인의 생활 밀착형 시설인 주민 체육센터 및 문화·공연·관람장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편의 증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각 대상시설별 효과적인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방안 및 비용을 산정 함

II. 문헌 고찰

1. 무장애 건축물의 비용편의 분석 선행연구

- 접근가능한 디자인이나 무장애디자인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이나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의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함
-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비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며 안전하다는 의식의 부족과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추가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접근성이 높은 디자인과 이를 구축한 환경이 어떤 혜택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이나 장애물 없는 디자인의 비용적 효과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접근가능한 환경은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접근가능한 디자인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30여 년 전에 시행되었으며(Chollet, 1979), 이 외에도 접근가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무장애 건물의 편익을 측정한 연구(Alonso, 2002) 등이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본과 호주 등지에서 접근가능한 디자인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건축물의 장애를 없애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이것이 가져오는 혜택을 입증하고자 하였음
-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무장애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용적인 문제와 이러한 디자인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효과를 분석한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상업시설(시가지 입지형), 숙박시설(호텔), 철도역에 대하여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의 유형을 열거하여 배리어프리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Ⅲ. 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 건축물의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시설의 선정은 20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의3)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20개 건

3) 2013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경우 2013.11월 현재 조사연구 진행중

건축물 유형중 공공성이 높은 7개 유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조사대상시설 군으로 분류함

- 3차에 걸친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대상시설군의 축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이용 증대 및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건축물의 유형을 다시 세분하여 대상시설을 분류하고, 기초자료의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대안을 선택하여 대상시설을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함
- 첫 번째 방법으로는 20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매개시설 중 높이차이제거에 대한 항목의 평균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하고 설치율이 낮은 항목의 건축물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공연·관람장의 경우 장애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상시설 분류를 진행함
- 공공업무시설, 특수학교, 공공도서관, 읍면동사무소, 공연·관람장, 운동시설, 학교의 경우 2008년도 전수조사의 원자료(Raw Date)를 기준으로 총17,892개소에 대하여 각 유형별 적정설치율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적정설치율 70% 미만인 시설을 1차 분류 대상시설로 선별함
- 2차 분류대상시설은 2008년도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적정설치율이 70%이하인 시설로써 총678개소에 대하여 선별하였으며 2차 분류로는 연구일정 등에 따라 조사대상시설 중 섬지역, 폐관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설을 분류하여 62개소가 제외된 616개소를 선별하였다. 3차 분류에서는 2차 분류를 통하여 선정된 건축물의 유형별 비율조정 등 전체분류대상시설 개소수 조정을 위하여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65%로 조정하여 95개 시설을 제외하여 522개소로 분류함
- 다음으로는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대상시설을 건축물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애당사자의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고,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설로 대상시설의 범위를 다시 축소 시켜 대상시설을 분류함 또한, 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운동시설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골프장 및 체육관등의 시설이 많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구민체육센터 등의 생활밀착형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공연관람장의 경우 서울 및 경기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대상 시설을 분류함

IV. 시설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비용 산정

1.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건축물 유형 분류

1) 접근로 기능에 따른 건축물 유형 분류

-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의 유형 분류를 통한 건축물의 분류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 또는 보차분리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을 통하여 대상시설을 분류함

<표 1> 접근로 기능에 따른 건축물 유형 분류

분 류		RA	RB		RC
건축물 특성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접근하는 경우	해당건물 보도와 차도가 분류 되어 있음		① 구조상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적합 기준
			① 경계석으로 분리 되어 있는 시설	② 도장분리만 되어 있는 시설	
주요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폭 확보 (1.2미터 이상) - 보차분리를 위한 경계석 설치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폭 확보 (1.2미터 이상) - 바닥재질 변경 (바닥재질의 질감을 달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석 설치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 유효폭 확보 (1.2미터 이상) - 최단거리 측정 변경 등 - 바닥재질 변경 (바닥재질의 질감을 달리함) 	- 인적 서비스제공
소요 금액	10m미만				인적서비스 최저비용
	11m~30m 미만				
	30m초과				

- 보차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세부개선 내용에 따라 경계석 분리와 도장 분리로 구분하여 유효 폭의 확보, 바닥재질의 변경, 보도의 길이 등에 따라 추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보차혼용의 경우 보차분리를 위한 적정유효폭의 확보

와 함께 경계석의 설치, 바닥재질의 마감에 따른 검토를 통하여 추정공사비를 산정하였음. 또한 그 외 설치비용 항목으로는 유효폭의 확보 등을 검토였으며, 지형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서비스를 통한 대체 방법을 제시하였음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설치)를 통한 건축물 유형 분류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하여 기존경사로의 경사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예상비용을 산정하였음
- 각 대상시설별 경사도를 산정하여 8.33%이하인 경우 'HA'항목으로 분류하여 양측면 손잡이, 바닥재질의 변경, 추락방지턱 항목에 대한 설치비용을 검토하여 산정하였으며, 경사도 8.33% 이상인 경우 법적기준인 1/12을 준수하여 철거 후 재설치 비용을 산정함
- 단, 경사로 설치시 바닥면으로부터 0.75m마다 1.5×1.5m의 수평참에 대한 설치 항목에 주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표 2>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통한 건축물 유형 분류

분 류	HA	HB	HC
	1/8초과	1/12이하	개선불가능 또는 적합한 경우
주요개선 사항	- 기울기 수정을 위한 경사로 철거 - 경사로 재설치 (바닥공사, 아스팔트 및 기타 재질 사용 등) - 손잡이 재설치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0.9m 이하) - 바닥 재질 변경 (non-slip바닥재를 사용한 경사로 재질 변경)	- 기울기 관련 개선사항 없음 - 바닥재질 변경 (non-slip 바닥재를 사용한 경사로 재질변경)	- 구조적 특성으로 경사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서비스 제공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소요 금액	25cm ~ 1m 미만		인적서비스 최저비용
	1m이상		
	-1m이상		

3) 캐노피 설치에 따른 건축물 유형 분류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함께 주출입구의 접근성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캐노피의 설치를 통한 주출입구 접근로 개조 방안을 제시함

<표 3> 캐노피 설치에 따른 건축물 유형 분류

분류	CA			CB			CC		
	돌출형			평면형			함몰형		
주요 개선 사항	- 캐노피 설치 (기존캐노피 제거 비용 포함) - 기타 배관공사 (빗물 넘침 등-트렌치)			- 기타 배관공사 (트렌치 등) - 캐노피 설치 (순수 설치비용만)			- 기타 배관공사 (트렌치 등)		
소요 금액	5m이내						해당 없음		
	5m이상								

2. 대상시설별 개조비용 산출

- 조사대상 56개 시설 중 12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주출입구의 높이차이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시설 주출입구 Barrier-Free화를 통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각 시설별 투입되는 비용의 회수기간과 건축물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을 분석함으로써 건축물 주출입구의 Barrier-Free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표 4>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비용 효과 분석 대상시설

단위 : 천원

번호	시설명	총수입 (연간예산)	연간지출	유지 보수비용	비율	회원수 (명)	기준년
1	DCS 시설	2,400,000	2,500,000	300,000	12%	4,500	2012
2	OPS 시설	2,987,796	2,987,796	68,000	2.3%	68,665	2012
3	NTCS 시설	235,860	452,865	68,665	15.2%	6,663	2012
4	GCA 시설	3,911,240	7,925,183	93,000	1.2%	20,000	2012
5	SPRS 시설	3,467,239	3,076,297	200,000	6.5%	36,000	2012
6	SPGC 시설	466,982	666,277	450,000	67.5%	178,000	2012
7	GWSC 시설	1,958,000	2,100,000	21,000	1.0%	48,000	2012
8	GYSC 시설	1,437,227	1,416,426	150,000	10.6%	400,000	2012
9	SWPZC 시설	2,136,728	1,889,053	2,000	0.1%	40,000	2012
10	GWGC 시설	26,400,000	1,825,084	59,972	3.3%	720,000	2012
11	OZDC 시설	2,487,231	2,885,449	62,000	2.1%	52,800	2012
12	HGC 시설	134,922	184,304	5,344	2.9%	18,840	2013

IV.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 및 체육관련 시설 중에서도 본인이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12개의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당시설별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Barrier-free) 주출입구로 만들기 위해서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등의 건축적 행위를 할 경우, 시설별로 투입되는 비용의 회수기간 및 건축물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 12개 대상시설 중에서 10개의 대상시설의 주출입구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주출입구 개선이 시설운영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반면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2개 시설의 경우에는 연간 총수입의 규모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 비용효과 분석

단위 : 천원

번호	시설명	주출입구 Barrier-free 화를 위한 개조비용	장애이용객 증가율	10년간 기대 증가 총 수익	10년간 발생 총 비용	NPV (순현재가치)
1	DCS 시설	15,132	1.43~3.7%	34,416~88,800	19,018	14,989
2	OPS 시설	6,134	1.33~3.7%	39,797~110,548	7,710	6,134
3	NTCS 시설	2,342	1.56~3.7%	3,679~8,726	2,943	878
4	GCA 시설	17,571	1.07~3.7%	42,006~144,715	22,084	19,193
5	SPRS 시설	4,745	1.28~3.7%	44,311~128,287	5,963	34,348
6	SPGC 시설	15,318	1.28~3.7%	5,968~17,278	19,253	-13,285 (총수입대비 20% 이상의 수입발생 시에만 편익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7	GWSC 시설	9,542	1.63~3.7%	31,954~72,446	11,992	19,962
8	GYSC 시설	14,138	1.39~3.7%	19,919~53,177	17,769	2,150
9	SWPZC 시설	8,120	1.16~3.7%	24,871~79,058	10,206	14,665
10	GWGC 시설	8,975	1.21~3.7%	319,176~976,800	11,280	307,896
11	OZDC 시설	17,343	1.20~3.7%	29,846~92,027	21,797	8,049
12	HGC 시설	13,921	1.20~3.7%	1,619~4,992	17,496	-15,877

- 주출입구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현재 이용객 대비 일정 비율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자수가 현저히 작거나 이용자의 시설이용으로 인한 수입액이 매우 낮은 시설에서는 이러한 기대 효과가 미미하며 즉, 연간 시설운형을 통해 얻게 되는 총 기대 수입과 수익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해당시설의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득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분석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짧게 본 점⁴⁾, 이용객의 증가비율에 따른

4) 미국의 건축 장애물 제거에 따른 비용편익 추정연구(Chollet,1979)에서 건축물의 사용연한을 50년으로 봄. 50년으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경우, 12개 사례시설 모두 NPV>0으로 나타남

수입증가비율을 낮게 책정한 점⁵⁾, 총수입원의 증가⁶⁾ 대신 이익률로 대체하여 계산하였으며 이익률의 수준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재이용객의 증가율도 대체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효과분석을 위한 조건을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출입구 물리적 장애물 개선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비용을 투입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시설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전에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새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그 결과로 시설 이용자의 증가와 시설활용도는 높아지게 됨. 이는 전체 시설의 총수입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2026년 이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사회구성원 중에서 시설이용약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시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편리한 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분야에서 조속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건물의 개조뿐만 아니라 신축되는 시설물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 시설로 계획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적용함으로써 추후 시설물의 Barrier-free화를 위해 별도의 추가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물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축되는 시설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누구나 이용 가능한 Barrier-free 시설물로 건축된다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설이용약자의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해 추후 별도의 시설 개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분야의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5) 영국의 공공교통의 접근성에 관한 규제 임팩트 평가 (1999) 연구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부모의 이용 등으로 이용자가 4~5% 증가, 본 연구에서는 최저 1.07~1.63%으로 NPV, IRR추정하였음

6) Chollet(1979)연구에서 쇼핑센터의 임대면적당 총 판매수입에 근거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 순 이익 대비로 추정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총수입의 1/10수준의 금액을 이익으로 보고 추정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시설별 비용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각 대상시설의 경제적 실용성을 입증하여 건축법 개정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기존 이원화된 출입구 형태를 일체화하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적용하여 차별없는 사회환경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PILOT) 연구

김인순, 이정수, 김응식, 김진욱, 김철환, 권영숙, 권흥순, 유용흠,
이주송, 김광일, 송창수, 이승주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취약하며,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부터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 위기상황별 대응에 대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안전행정부 주관 하에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이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국내 실정이다. 이에 본원에서 기 연구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된 재난관련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의 재난 사례, 재난관련 국·내외 관련법, 지원체계 등의 국내 현황 및 정책방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중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샘플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수행방법은 먼저 국내의 경우 장애인 관련 대응매뉴얼이 미흡하여, 국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매뉴얼을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재난의 종류는 인적재난 중 가장 발생율이 높은 교통사고 다음인 화재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실험 및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응매뉴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화재 발생 시 장애포괄적인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FGI를 장애계전문가, 시설관리자,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화재 시 대응을 위한 샘플 매뉴얼을 개발하고, 아울러 장애포괄적인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로 장애인 피난매뉴얼은 시설에서 평지, 계단, 경사로를 이용하여 화재 피난 시 장애인, 보조인, 관리자 별 행동요령을 삽화를 통해 제작하였으며, 제언으로는 첫째, 화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활용을 위한 교육의 정례화이다. 둘째, 정기적인 교육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은 샘플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은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취약함
- 국내의 위기 상황에 대응 시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재난 시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 매뉴얼과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일환으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조사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장애포괄적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제작을 위한 기본원칙 및 샘플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함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문헌연구
 - 미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관련 대응매뉴얼을 조사하여 분석함
- 실험 및 분석
 -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대응매뉴얼 개발함
 - 재난 중 화재를 중심으로 대피실험 및 관련 데이터 분석
 - 인적재난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발생율이 높은 화재를 중심으로 수행함
- FGI
 - 장애계 전문가, 장애인거주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및 결과 분석
- 자문회의
 - 장애계 전문가, 학계, 소방전문가를 자문위원 구성
 - : 장애계 전문가,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수, 소방관련 전문가 구성으로 장애인 위기상황(화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 마련에 의견수렴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장애포괄적인 피난 원칙 및 모델의 제시로 이에 대한 시설별 운영자, 이용자 등의 피난에 대한 이해도 및 중장기적인 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매뉴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봄
- 활용방안으로는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부차원의 장애인관련 시설 교육교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장애인 관련 시설의 화재 시 인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단초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봄

II. 장애인관련 재난 사례분석

1. 개인주택

-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대는 대부분 저녁에서 새벽 시간대로 장애인들의 취침시간과 맞물려 인지를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16사건 중 8건임
- 화재감지경보기가 없는 개인 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화재인지조차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
- 16건의 사건에서 7건의 사건은 인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탈출로 이어지지 못해 화재 초기 감지와 더불어 보조요원의 존재가 매우 필요함. 또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도우미가 되는 상황에서 화재 감지가 되었어도 탈출에 실패한 경우가 2건이 있어 이런 대피 계획도 고려 되어야함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초기의 작은 사건으로 끝내기 위한 초기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실정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는 초기진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개인거주시설에서의 탈출로는 집문이 유일한 통로임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보조요원파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대부분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음

2. 공공시설(인가 및 비인가시설)

- 비인가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가시설에 비해 화재경보기 및 초기진화장치와 같은 안전 설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화재에 더욱 취약함
- 특히 관리 인원의 부족과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응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화재발생의 초기인지 가능한 화재경보기와 장애인들의 탈출을 도와줄 보조요원이 필요함
- 인가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노유자(노인과 어린이) 시설의 경우 총면적 400m²(약 121평) 이상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는 총면적 600m²(약 181평) 이상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중소 규모의 경우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시설 관련 설비 법령을 보완시킬 필요가 있음
- 대피보조요원이 있으나 야간에는 그 수가 적어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인명피해가 났으며, 관리책임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음

III. 국외 피난매뉴얼 사례 및 특성분석

- 미국 : 재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과 예방이 중심임
 -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법(ADA)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놓음
 - 또한 재난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난은 각 기관별로 재난대비, 대피, 비상용품, 비상연락처 등을 보여주는 안전가이드 등과 같은 일반지침과,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대피를 위하여 응급대응계획(Emergency Action Plan)을 통하여 시각, 청각, 이동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위원회 긴급 대피 절차(Access Board 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미국 장애인 위원회)를 제정·고시하고 있음

- 영국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을 기준으로 함
 -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건물 설계와 접근(BS 8300: The design of buildings and their approaches to meet the needs of disabled people)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의 실무 규칙(Code of practice for means of escape for disabled people)을 통해 적용되고 있음
 -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요구를 다루고 있는 유용한 건물 디자인 관련 사항으로 엘리베이터, 대피공간, 시각적, 청각적 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진동 화재 경보 시스템 등 시설기준으로부터 개별 긴급 대피 계획(Personal Emergency Evacuation Plan : PEEP)이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사용자를 위해서 작성되도록 하고 있음
- 독일 : 재난약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로) 규정(Verordnung ueber Rettungswege fuer Behinderte)’과 ‘화재 시 휠체어 사용자 대피 규정 (Verordnung ueber die Evakuierung von Rollstuhlbenutzern)’ 등이 있으며, 독일 연방법인 기본법과 장애인법 그리고 장애인 평등법을 기초로 함. 특히 독일 연방시민보호 및 재난도움청(BBK)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장애인 화재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위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오랜 재난역사에 따른 경험으로 일상에서의 재난대응으로부터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히 장애유형별로 재난대응요령 및 피난소 생활 등 세분하여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각 지자체의 부서업무별, 각 기관별로 재난에의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진이나 재난 시 업무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재난대응매뉴얼을 함께 제시함)
- 각 국가별 재난대응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재난발생시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지침에서 재난 약자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국내 상황은 OECD국가들에 비해 소방 및 민방위 훈련 등은 실시되어 왔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등 재난약자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특히, 주택이나 건축물 등 각 시설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 피난하는 실제적인 현상 및 피난방법 등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음)

IV. 화재피난실험 및 행태분석과 FGI 조사 분석

1. 장애인거주시설 화재대피실험

- 실험대상자는 N-시설 거주 장애인중 5명 선발하여 실시함
 - 피난 도우미로 현재 N-시설의 근무 직원으로 정하여 참여함
 - 피난실험대상자는 5그룹으로, A는 지적 장애인으로 보행이 자유스러운 사람이며, B, C, D, E 장애인은 보행은 불가능하며,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외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험 중 부상의 위험이 있어 실험보조 인원이 대신하여 대피 실험을 실시함

2. 실험 방법

- 실험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함
 - 실험은 피난 관련 사전교육 없이 실시함 : 화재에 가장 취약한 야간시간에 당직 근무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시나리오로 가상의 화재 상황을 연출하여 피실험자들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고, 최종 대피 시간을 측정하여 이후 피난교육 후 상황과 비교 검토를 위하여 실시함
 - 첫 번째 실험이후 대피 상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피난 방법을 피실험자들과 관리자들에게 교육한 이후 경사로를 통한 피난실험을 실시함
 - 첫 번째 실험이후 경사로를 이용한 피난을 하기 힘들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으며, 피실험자들과 관리자들에게 계단을 이용한 피난방법을 교육하고, 앞에서와 같이 피실험자들의 대처 방법과 피난시간 측정함

3. 1차 피난실험

- 유사시, 당직자 1인이 모든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대피 시간을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이 됨
- 이동 기구를 옮겨 타는 시간이 전체 대피의 2/3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므로 이동기구의 탑승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리프트의 경우 화재 시 사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들의 평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인해 대기 시간을 지체함

4. 2차 피난실험(피난교육 후)_경사로방향

- 침대이용자의 경우 이동속도는 60% 정도로 늦어지며, 가장 느린 이동 수단으로 평가됨
- 1차 실험 후 교육을 통한 장애인 개별 역할이 각각 숙지되어 교육전 4명의 보조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음
- 이동기구를 옮겨 타는 시간이 줄어든 반면, 장애인이 방화문까지의 이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1차 때에 비하여 안전 구역인 방화문 근처로 모든 사람이 이동하여 1차 때 보다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외상 중증장애인의 대피 시간을 빼면 총 대피시간은 4분 53초로 약 2분 정도의 대피시간이 단축 되었음 => 교육 및 자기 역할 인식에 결과로 사료되며, 당직자도 1차 때에 비하여 이동 기구의 이동 및 이동 기구에 장애인 착석 시간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됨

5. 3차 피난실험(피난교육 후)_계단방향

- 이동보조기구의 경우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만 피난 시간 단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관리자에게 업힐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가장 빠른 이동방법으로 나타남
- 4명의 관리자가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하는 방법은 시간 및 노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음
=> 1인 또는 2인이 장애인을 업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평가됨
- 관리 요원의 숫자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경우 침대 시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됨

6.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 지체장애인

- 비상대피훈련의 필요성
 -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정도의 대피훈련 필요
 - 매뉴얼 개발(운영자 및 이용당사자 구분 필요) 후 매뉴얼을 이용한 교육·훈련필요
 - 소방관련 전문가 참여 피난교육 및 훈련 필요
 - 피난 도우미(Buddy)와의 연계에 대한 훈련 및 비장애인 동시 참여 훈련 필요
- 비상대피훈련 시 고려사항
 - 연기 등으로 인한 시야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로(구) 위치 파악 가능 설비 설치
 - 질식을 고려하여 1차 탈출을 위한 발코니, 방화구획, 방화가능 구조물 등의 지정 필요
 - 중증장애인의 질식사 방지를 위한 방독마스크 구비 및 사용 훈련 필요
 - 야간 비상시 각종 인지를 위한 손전등 비치 및 호출벨설치 필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제안
 - 장애인 주 이용시설의 외부 피난 경사로 설치 의무화 추진
 - 전문가 피난교육 정례화 및 훈련교육용 동영상 제작 배포 필요

○ 시각장애인

- 비상대피 훈련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자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피훈련의 반복이 필요
 - 체계적인 소방교육 및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훈련 필요
- 비상대피 훈련 시 고려사항
 - 화재 발화점 인지를 위한 다양한 인지 방법(고주파 및 LED)으로 비상탈출 연결통로 유도필요
 - 발화점별 탈출로에 대한 인지반복 훈련 필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제안
 - 현재의 화재교육(동영상 시청 또는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체계적인 비상대

피 훈련으로 실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청별 재난점검단을 재난전문가 교육으로 전환 필요

○ 지적 자폐성장애분야

- 비상대피 훈련의 필요성

- 인지 후 대피는 비교적 용이하므로 대피 반복훈련이 반드시 필요

- 비상대피 훈련 시 고려사항

- 지적 자폐성 중증장애의 경우 일대일(담당교사 중심) 대피 훈련 필요
- 소방관 건물 현황 파악 도면 등의 현관 비치 필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제안

- 매뉴얼을 소방법과 연계하여 시설별 교육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 있음
- 화재 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비보완 지원 필요

○ 청각장애분야

- 비상대피 훈련의 필요성

- 취약시간 대별 거주자 및 관리자 대피계획 편성 필요
- 화재발생을 빨리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전문 소방대원 등의 교육훈련이 필요

- 비상대피 훈련 시 고려사항

- 시설 내부 각 공간별 비상시 작동할 수 있는 경광등 설치 필요
- 수화동영상을 적용한 피난매뉴얼 개발이 필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제안

- 복지시설은 건축 시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지원 필요

V.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제시를 위한 종합분석

- 국외의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문헌조사와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인터넷 뉴스를 통한 조사,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화재 피난실험과 FGI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장애인·관리자·지원자 매뉴얼로 구분하여 본장에서 정리함

- 장애인 스스로 피난하기 위한 매뉴얼은 화재 시 IT제품을 이용한 구조요청방법, 화재 시 피난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시설에 관한 인지와 법적으로 정기적인 훈련이 요구됨
- 관리자 매뉴얼은 시설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소방설비 확보, 탈출로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과 위기상황 시 외부기관과의 대피협조 체계 확립이 필요함

VI. 장애인거주시설 화재 피난대응시범 매뉴얼 제시 및 제언

1. 장애인 피난 매뉴얼

- 본 매뉴얼은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포괄적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매뉴얼로, 5장에서의 종합분석을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화재 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제시함
 - 첫째, 본 매뉴얼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본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이유/위기상황 및 피난의 개념/시설의 관리계획상 유의점을 담음
 - 둘째, 화재발생 시 피난유형을 자력대비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어 정리함
 - 셋째, 관계자별 피난행동 매뉴얼로 화재 시 관리자와 시설이용자인 장애인의 피난행태를 나열하고 각 시설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자력대피가능자, 보조인과 함께하여야 하는 장애인, 특정대피계획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별로 체크하도록 하여 화재 시 외부에서 투입되는 구조자(소방관 등)에게 시설이용자의 현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수직구조유형별(평지, 계단, 경사로), 보조기구별(휠체어, 침대 등)로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이용자, 관리자 또는 보조인의 도움으로 피난이 가능한 시설이용자별로 구성함

2. 제언

- 화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활용을 위한 교육의 정례화
- 정기적인 교육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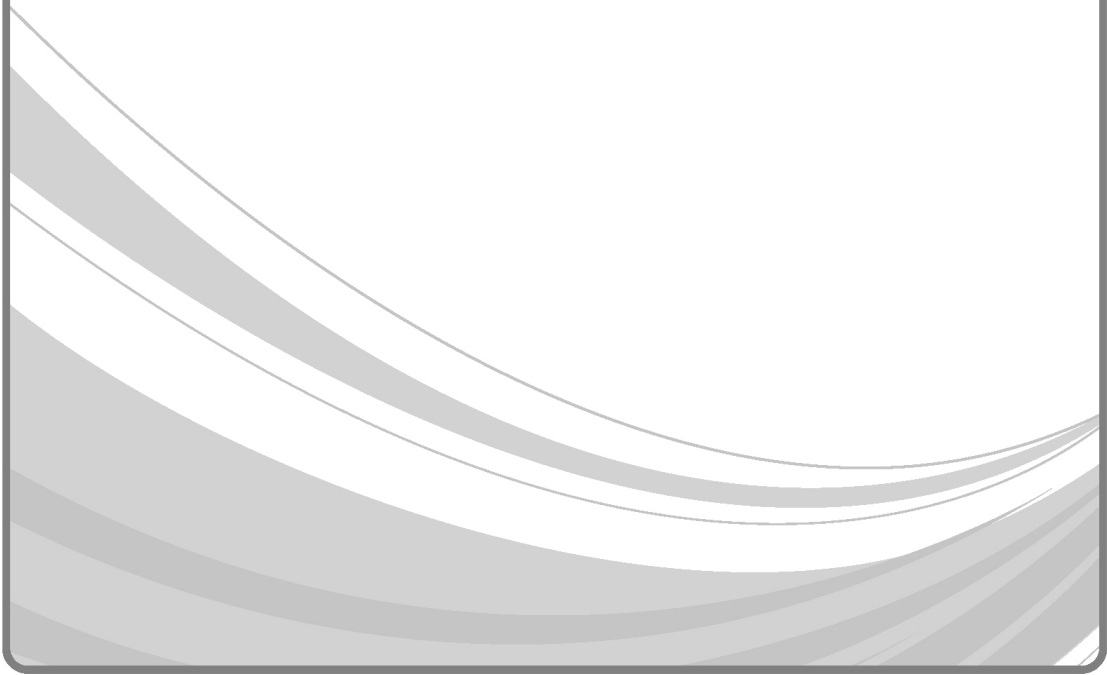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은 샘플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정책제안 => 본 연구의 정책제안은 개발된 매뉴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별 장애포괄적인 매뉴얼 개발로 위기상황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설별 운영 시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배양되어 재산손실까지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수행이 필요함

정책반영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매뉴얼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배포하여 화재 훈련 실시에 활용하도록 권고함

IX. 국제협력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김정희, 김경란, 박지연, 이윤희, 김병철, 양입웅, 나가세 오사무, 사토 히사오

요약

본 연구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현황과 주요영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복지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 제도 중 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 서비스보장(보건의료, 교육, 취업, 문화체육, 사회환경 등), 인권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사회복지지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급부상이후 새롭게 조명 받는 새로운 분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개국의 상황은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나름의 독특한 사회복지 발전 경로를 갖고 있다.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복지체제는 이미 서구 학자들의 주목을 받은바 있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국과 대만의 복지팽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 복지제도의 구축과정이 비교사회정책 연구자들의 중요한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시아 복지국가 연구에 대한 관심의 배경은 1997년~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아시아 각국에서는 실업과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고, 사회보장·복지정책에서도 급격하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복지국가의 초고속 확대’가 나타난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에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서구와 같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수립이 매우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는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을 강조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이런 예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동아시아 상당수의 나라들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복지팽창을 경험했고, 일본은 2008년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제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중국은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시장경제로의 전환이후 2000년대 들어와 급속한 복지팽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현황과 발전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국가별로 살펴본 후, 영역별로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교했고 이를 비교표를 통해 제시했다. 본 비교연구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 장애인복지모델 구축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역사도 짧고, 장애인복지 영역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기존의 논의들이 동아시아 사회복지 모델과 체계분석에 치우치는 등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탓에, 구체적인 제도 분석은 간과하여 개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 등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 최근 장애와 인권, 장애인의 환경적 요인을 새롭게 조망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해외 장애인복지 정책동향에 관한 신속한 파악과 대처가 요구됨. 또한 사회복지정책 동향분석과 관련한 연구에서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특성을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 논의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동아시아 인접국가간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함
- 본 연구는 한·중·일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현황과 주요영역별(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인권보장) 비교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장애인복지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고찰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주요영역별(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인권보장) 장애인복지제도 현황 고찰, 전문가 심층면접, 한·중·일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현황 파악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공동연구진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주요 서비스제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한·중·일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를 위해 연구진 구성 → 자료수집 및 문헌조사 → 국외기관 방문 → 원고 집필 및 수정 → 보고서 발간의 절차를 따름

II.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의 정의, 유형과 인구현황

-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킴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며 동법 제 32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 장애유형 현황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개 유형으로 분류
 -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으로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등이 장애유형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세분화 됨
 - 2003년 호흡기 질환, 장루, 간질 등 다섯 가지 장애유형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15가지 장애유형에 근거한 장애판정제도의 틀이 만들어 짐
- 장애인구 현황
 - 등록 장애인구 수는 2,519천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체장애는 53%, 청각·언어장애 11%, 지적장애 6%, 기타장애 19% 순으로 나타남(2011년 말 기준)
 - 여성의 장애등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2001년 31.3%→2011년 41.8%)

2. 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정

- 1970년대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장애인 제도나 법령에 영향을 미침
- UN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기본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고용, 편의증진 분야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됨

3. 장애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공적/민간 전달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 전달체계는 수직적 체계로, 민간 전달체계는 개별 민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양자간 연계가 미약하여 수요자인 장애인당사자의 이용이 어려움
 -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 One-stop으로 가능한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제도개선
 -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정책수요가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 교육·문화 분야의 경우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경제활동분야의 경우 장애인연금 증액,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사회참여 분야의 경우 방송접근권 개선, 저상버스 비율 확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Ⅲ. 중국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의 정의, 유형과 인구현황

- 장애인의 정의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활동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장애유형
 - ‘제2차 전국 장애인 샘플 조사 장애 기준(第2次全國殘疾人抽樣照查殘疾標準)’에 의해 2011년에 발표된 ‘장애인 장애 분류 및 등급(殘疾人殘疾分類和分級)’에 근거하여 장애 종류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多重)장애 등 7가지로 구분하였음

○ 장애인구 현황

- 중국의 장애인은 총 8천296만명으로 1987년 1차 장애인 조사 때 보다 3천132만명이 증가하였음. 장애유형별로 장애인구를 살펴볼 때, 지체장애인은 2,421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29.07%, 청각장애인은 2,004만명으로 24.16%, 다중장애인은 1,352만명으로 16.30%, 시각장애인은 1,223만명으로 14.86%, 정신장애인은 614만명으로 7.40%, 지적장애인은 554만명으로 6.68%, 언어장애인은 127만명으로 1.53%를 차지함

2. 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정

- 1949년~1965년은 장애인복지제도의 수립단계로 이 시기에 공공부조정책이 제정되었는데, 보장대상자는 주로 도시빈민, 실업자, 독거노인 등이었으며, 자선단체를 통해 구제활동을 전개하였고 도시장애인복지제도와 농촌장애인복지제도를 수립하였음
- 1966년~1977년은 장애인복지제도의 정돈단계로 이 시기 동안 중국에서 「장애인보장법」 및 「장애인교육조례」, 「장애인취업조례」 등 장애인 이익을 보장하는 전문적인 법률과 법규를 공포·시행하였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 해당지역에 적합한 장애인보장법 시행세칙과 기타 장애인 권익보장 법규를 제정하였음

3. 장애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일반성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 중국의 사회보험법에서는 전국민이 5대 보험(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하였음
- 공공부조
 - 중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재해부조 등으로 구성되며, 2012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은 장애인은 22.6%인 반면,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은 장애인은 22.9%임
 - 의료부조제도의 장애인 의료구조방식은 보험, 입원보조금, 정신병 무료치료 등임. 또한 장애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로 장애인 주택보조정책을 실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교육부조제도를 제정해서 장애학생과 빈곤 장애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특수성 사회보험제도

- 자립지원보조금 등을 포함함. 현재 중국은 아직 전면적인 장애보조금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011년 5월 1일부터 홍샤오바오(紅寺堡)에 거주하고 1급 혹은 2급 장애인증명서를 소유한 1,200여명의 장애인들은 매월 120위안을 장애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법률체계의 미흡, 장애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좁은 적용범위와 낮은 급여수준, 장애인 사회보장 자원 투자의 부족, 자원 분배의 불균형, 장애인복지 운영의 효율성 감소, 장애인복지에 관한 권위를 갖춘 관리부서의 부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낙후성임
- 중국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법률·법규의 개선, 장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공공부조 급여수준의 향상, 사회보장자원의 투자 확대, 농촌과 중·서부지역의 집중 투자, 장애인복지의 운영 효율성 증가를 위한 장애인 파악, 전문 서비스 인력의 양성 등임

IV.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의 정의, 유형과 인구현황

- 일본의 장애자기본법은 “장애자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를 포함), 기타 심신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 및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 장애인 수는 신체장애자 366만3천명, 지적장애자 54만7천명, 정신장애자 320만1천명으로, 이를 인구 천명 당 환산하면, 신체장애자 29명, 지적장애자 4명, 정신장애자 25명임

2. 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및 고도경제 성장기
 - 1946년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여 기본적 인권의 관점과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생활보호법」(1946),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사회복지사업법」(1951)이 제정됨
 - 1970년에 들어서면서 196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모든 시책들에 기본을 명시하는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이 제정됨
- 국제장애자의 해 이후
 - 198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연금의 충실화, 1987년 「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적장애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
 - 1987년 「정신보건법」을 시작으로 1990년 8개의 사회복지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지역복지를 목표로 일련의 시책들이 전개됨
- 장애자정책의 계획적 추진
 - 1993년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이 「장애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의상 3종류의 장애가 통일됨. 이와 동시에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법 및 심신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장애자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내용이 추가됨
 - 1994년 고령자와 신체장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을 촉진하는 「하트빌딩법」 제정.
-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 1990년대 후반 이후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의 변경, 다양한 경영주체의 도입, 시장원리 활용 및 공정한 부담 등의 사회복지기초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일어남
 - 2002년 「신체장애자 보조법」, 2003년 「의료 및 관찰법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발달장애자지원법」, 2005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제정, 2006년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2006년 「학교교육법」이 개정됨
- 장애자권리조약과 장애자정책 개혁
 - 2006년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응익부담은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원고

- 단과 민주당은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복지 법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장애인 제도개혁 추진 본부' 및 '장애인 제도개혁 추진 회의'를 구성함
- UN 「장애인권리조약」의 채택으로 일본 국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건 정비가 필요해 짐
 - 2011년 추진회의에서 제출한 장애인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제2차 의견'이 일부 수정을 거쳐 중의원 참의원 전원일치로 가결 성립됨
 - 이후 2011년 「장애인학대방지법」,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해소법안」이 성립됨

3. 장애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최근 장애인 제도개혁의 주요성과
 - 2011년 장애인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정의에 사회모델 관점의 반영과, '합리적 배려'의 개념이 포함됨
 - 장애인 기본계획의 실시상황을 감시하고 권고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
-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신(新) 장애인기본계획' 기본과제
 - 정신장애자의 사회적 입원 문제 해소 및 지역이행 촉진
 - 난치병환자를 장애인시책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구축
 - 고차 뇌기능 장애를 장애인시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
 - 장애인시책과 고령자시책과의 연계를 통한 치매환자의 지원 검토
 -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결격조항 재검토 및 장애인수첩제도의 재정비, 성년후견인제도 정비, 가족의 돌봄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원제도 확립 등

V. 한·중·일 3국간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1. 장애관련 전반 비교

<표 1> 한·중·일 3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정

시기	정책현황		
	한국	중국	일본
1940년 ~ 195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민구제총회 장정 제정 및 통과(1950) - 혁명인원 상해·사망 무출사업 임시조례(1950)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1951) - 고급 농업합작사 시범장정(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세계대전 이후 상이군인 대상 장애인 정책 실시 - 일본국헌법 공포(1946) -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 사회복지사업법(1951)
1960년 ~ 197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 제정·공포 : 장애인복지사업 불포함(1970) - 지체불능아동 고입 체능검사 면제(1971) - 소득세법에 장애인공제제도 도입(1974)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 내무부 폐지(1966) - 중국맹농아인협회 업무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제정(1960) - 1959년 국민연금법 제정-무 납입제의 복지연금 개시(1960) - 정신박약자복지법 제정(1960) - 정신위생법 제정(1950) -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제정(1970) - 난치병대책요강발표(1972)
1980년 ~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 장애인등록사업 실시 : 1988년 전국적 확대 실시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장애인복지기금 설립(1984) - 장애인보장법 초안 발표(1985) - 중국장애인연합회 설립(1988) - 장애인 교육 및 취업 권리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개정(1985) : 기초연금제도창설 - 신체장애자 고용촉진법을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개정(1987, 지적장애자도 포함) - 정신보건법 제정(1987) - 신체·지적장애자복지법에 재택복지서비스 법정화(1980, 1990)
1990년 ~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 발표(1994)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9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장법 통과(1990) - 장애인교육조례 발표(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을 장애인기본법으로 개정(1993) - 정신보건법(1987)을 정신보건법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1995) - 특정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 제정 (1994) - 난치병환자 등 거택생활지원 사업실시(1997)

시기	정책현황		
	한국	중국	일본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1999)		
2000년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추진 중	- 빈곤 장애인 지원사업을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2004) - 장애인취업조례발표(2007) - 복지기업자격인정 방안 발표(2007) - 장애인보장법 수정·통과(2008) - 장애인권리협약 인정(2008) - 북경장애인올림픽(13차) 개최(2008) - 중국장애인사업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 시행 - 무장애 환경건설조례(2012)	- 신체장애자보조조건법 제정(2002)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비제도 시행(2003) - 장애인자립지원법(2005)으로 제정 - 의료관찰법 제정(2003) - 발달장애자지원법 제정(2004) - 장애인자립지원법(2005) - 고령자·장애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2006) - 학교교육법 개정(2006) - 장애인 제도개혁 추진회의 설치(2010) - 장애인자학대방지법 제정(2011) -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2012)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 제정(2013)

<표 2> 한·중·일 3국의 장애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장애인구	2,519,241	7,411,000	82,960,000

2. 영역별 장애인복지제도 현황

1) 소득보장

-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일종의 기여식 사회보험인 장애연금이 있으며, 중국은 장애인 소득보장 중 사회보험의 핵심이 노령연금임
- 일본의 장애인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연금의 장애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 그리고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과 단체 등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후생연금의 장애연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민연금의 장애

기초연금+공제조합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됨

- 공공부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이 존재하며,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로 구분되어 장애유무를 떠나 수급자일 경우 대상임
 - 중국의 경우는,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임시성 부조제도가 공공부조에 포함되며, 일본의 공공부조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제도가 존재함

2) 서비스 보장

- 보건의료
 - 한국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기존에 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학교보건에만 국한되어 있던 인구집단 건강관리 부분을 취약계층, 장애인 건강으로 확대함
 - 중국은, 보건의료자원이 도농간-지역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의료보장방식이 단편적이며, 전문 보장제도가 결여된 상태라는 한계가 있음
 - 일본은, 장애자기본계획(2003~2012)에 명시된 보건/의료의 기본 시책 방향에 따라 장애인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특수교육
 - 한국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1994)을 통해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고, 일본은 2006년 채택한 장애인권리조약에 근거하여 특별지원교육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생사회 형성으로 나아가는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중국은 장애인 교육체계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고용
 -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거나 남성장애인의 취업률이 여성장애인보다 2배나 높으며(44.8% : 22.7%), 중증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경증장애인보다 2배 이상 낮으며(8.3% : 41.4%), 단순노무종사자가 30.1%를 차지함
 - 일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시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

- 한국의 경우,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 향후 5년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대상자 확대,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우수 장애단체(예술가) 발굴·육성 등의 추진계획이 수립된 상황임. 중국은, 정책 및 법률법규를 통해 장애인 문화·체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문화시설을 장애인에게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개방하거나 장애인 문화주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장애인 문화사업을 시행함
- 최근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 의해 개최된 2008년 장애인 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통해 장애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있고, 매년 장애자주간(12월3일~12월9일)을 정해 전국장애자 예술문화제를 개최하며, 민간단체의 장애자 문화예술 활동,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일본과라경기대회, 세계농아인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환경

- 한국과 일본은 건축물 관련법과 교통 관련법이 있으나 중국은 건축물 관련법만 존재함. 특히 인증제도는 한국에서만 제도화 되어있음

3) 인권보장

-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장애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
- 일본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해소추진에 관한 법률인 「장애자차별해소법」을 2013년 6월에 제정하였으며,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장애자차별금지를 향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자에 대한 직접차별을 금지함과 동시에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VI. 전망과 과제

1. 전망

○ 한국

- 한국의 장애인 문제 및 제도와 법령은 1970년대 UN의 각종 권리 선언에 영향을 받아왔음
- 1998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필두로 2013년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3~2017)’이 시행 중이며, 2000년 이후 장애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당사자주의로의 전환이 제도발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 중국

- 중국은 장애인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 경제·사회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전반적 장애인복지의 발전 수준이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중국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는 법률체계의 미흡,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사회복지 자원 분포의 불균형,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 서비스의 취약을 들 수 있음
 -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회공평의 원칙 준수, 장애인 보호 장치 마련, 정부차원의 장애인연합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 사업에 지원을 확장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1952년의 7년 동안 사회복지의 기초를 구축해 왔음
- 2011년 「장애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자의 정의에 사회모델 관점을 반영하고 ‘합리적 배려’의 개념을 포함하였으며, 국내 장애자 기본계획 실시상황의 감시 및 권고를 위해 장애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2012년 「장애자종합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자권리조약의 조기비준 및 국내 추진체계 정비, 장애자의 지역생활 지원방안 검토 등 과제가 남아 있음

2. 과제

- 동아시아 장애인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각국의 사회복지 구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예외성과 보편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모델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해야 함
 - 둘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모호성을 배제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차이를 최소화하여, 제도 혹은 서비스 비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셋째, 각국 장애인복지의 출발시기와 전개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인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공통의 요인들을 양적 혹은 질적분석 지표로 재구조화 하여 국가 간 장애인정책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동아시아 지역구분을 위한 기준 설정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고, 이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범주화를 통해 그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영역별로 소개한 후 비교분석함.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서구복지국가의 특성과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동아시아 인접국가간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소개 및 비교한 연구임

연구결과를 통한 한·중·일 3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연관된 시사점은 다양한 장애유형별 법령의 구비 및 대상 확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정책의 전개, 사회통합 및 공생이념의 확산임. 향후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지표를 통한 한·중·일 3국간 장애인정책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장애인복지제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연구

김승완, 도미화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 및 인천전략의 이행, UN의 장애포괄 개발협력 요구에 대한 부응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장애포괄적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개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형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이념, 비전, 원칙,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핵심이념은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장애포괄적 개발의 이행”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전으로는 “열린 국익에 부합하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제안하였다. 셋째, 원칙으로는 “인천전략 이행의 주도국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모범적 실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장애포괄적 원조”, “수원국 중심의 솔루션 제공과 장애인의 참여 보장”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략으로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제도개발과 권리기반 중심의 접근전략”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은 국내적으로 생소한 개념이므로 시간적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국가협력전략(CPS)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정책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장애인을 주요 이해당사자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성과 달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넷째, 장애포괄적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다섯째,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굿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부처 ODA 사업 중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2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 주류화' 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이는 곧 장애인의 국제개발 참여의 당위성으로 인식되었으며, 장애를 국제개발의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간주하게 되었음
- 2013년 9월 UN 총회 '장애와 개발에 대한 고위급회의'에서는 모든 개발협력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과 함께 2015년까지와 그 이후의 장애포괄적 개발 의제의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 및 인천전략의 이행, UN의 장애포괄 개발협력 요구에 대한 부응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장애포괄적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제2장),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제3장). 그리고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과 함께 장애 특정적 및 일반적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제4장). 4장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형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제5장).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제6장)
-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써 첫째, 문헌 및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함. UN 관련 문건과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 현황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진척 정도와 실행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였음. 둘째, 국내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개발협력 사업현황을 수집·분석을 실시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 국내에서 실시 중인 개발협력 사업에 장애포괄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해 연구에 반영하였음

II.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의의 및 역사적 맥락

1. 장애이슈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보편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 시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ECD/DAC, UN 등 다자기관과 주요 양자기관 등의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이중트랙 접근(twin-track approach)이 요구됨
 - 첫째, 모든 보편적 개발협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장애이슈를 포함시키는 포괄적 접근 방법을 말함
 - 둘째, 장애인의 특정 요구(special needs) 및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지원과 같은 장애 특정적(disability-specific) 접근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기초적 이론

- 공적개발원조(ODA) 이론은 사업의 원조목적과 이행당사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원조목적에 따른 국제원조에 대한 이론은 국제관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주의(Realism), 이상주의(Ideal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행당사자에 따른 분류는 수원국의 욕구모형(recipient need model)에 근거한 이

론과 공여국의 이익모형(donor interest model)에 근거한 이론으로 구분 가능함

3.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역사적 맥락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라는 논제가 확립되게 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발달 과정을 초창기, 형성기, 발전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초창기는 장애인의 직업·의료재활을 중심으로 접근한 시기를 일컬음. 이 시기에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었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수용시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료 재활적 관점에서 심리, 사회, 교육 등 각 영역에 재활이 도입되어 장애인복지의 통합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장애와 인권을 연관시켜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를 형성기로 구분 할 수 있음. 이 시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는 이 시기에 UN에서 공표한 문서들에 반영되어 있음. 대표적인 문서로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for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rsons),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등을 들 수 있음
- 발전기는 본격적으로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시기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개발목표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12년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 주류화'(E/CN.5/2012/6) UN ECOSOC 회의, 2012년 6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회의(리우+20)' 등이 개최되면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은 2013년 9월 UN 총회 '장애와 개발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개발목표 실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2015년까지와 그 이후의 장애포괄적 개발 의제의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Ⅲ.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국제 동향

1. 국제적 차원의 포괄적 개발협력

-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이미 국제협력에서 장애포괄적 개발 프로그램 및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이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호주 외교통상부(DEAT),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등은 개발협력에서 장애 부문을 별도의 목표로 선정하고 있음
- 유엔 기관간 지원 그룹(Inter-Agency Support Group), 세계은행(World Bank), 미대륙간 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다자간 개발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ies)들은 새로운 장애정책의 과정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접근 방법을 검토하기도 함

2. 아·태지역의 포괄적 개발협력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이하 UNESCAP)는 UN 장애인 10년(1983~1992)의 종료 시점에 UN 장애인 10년을 위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아·태 지역만이라도 UN 장애인 10년의 모멘트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논의에 따라 북경에서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을 선포하였음
-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종료되는 2002년 UNESCAP은 일본 시가현 비와코에서 지난 10년의 성과 ‘통합’과 ‘장애물 제거’ 그리고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를 향한 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하여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을 선포하게 되었음
- UNESCAP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나라 인천에 모여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을 결산하고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음

3. 호주

- 호주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은 (1) 모든 것을 동시에 하기보다 몇 가지 방법에 주력하여 초기의 성과 강화, (2) 지방/지역의 경험과 전문성 연계를 강화하고 발전, (3) 장애인이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편성,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4) 장기적 관점으로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소요되는 현실적인 시간을 인정, (5) 대부분 이슈의 지역적 접근법에 대한 국가적 접근법을 채택, (6) 지나친 의학적 접근을 지양하고 사회적·권리기반의 접근을 채택할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고 있음

4. 일본

- JICA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첫째, 사업수혜자로서 장애인의 참가 확보. 둘째,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배리어프리 대책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셋째, 사업실시자로서의 장애인의 참가. 마지막으로 사업주기에 있어서 장애인 시점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JICA는 2000년 이후 총 43건의 ‘장애와 개발(Disability and Development)’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원조유형별로 유상자금협력 21건, 무상자금지원 3건, 기술협력사업 22건임

IV.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1. 한국의 ODA 정책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 한국은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을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 협약의 국내 발효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이행을 위한 입법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음
-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개정되어,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을 명시하였던 것에 ‘장애인’이 추가되면서 장애 주류화를 위한 국

제사회의 흐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천년선언(MDGs)에 부응하며 한편, 우리나라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

2. KOICA

- KOIC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 주기, 매 단계별로 장애관점을 포괄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됨
- 2012년 KOICA 무상 지원 총 예산은 445,277,000달러로, 이 가운데 장애 특정적(disability-specific)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0.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접근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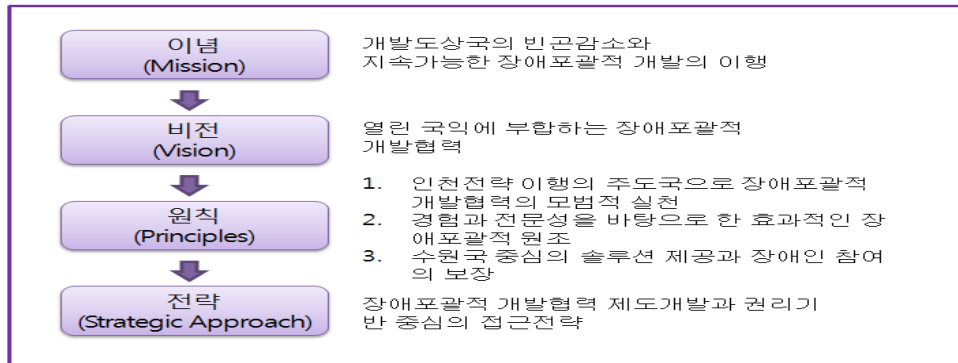
3. 장애 특정적 및 일반적 개발협력 사업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탐색·분석하기 위해 정부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를 선정해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장애 특정적 및 일반적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을 파악·분류하고 그 경향성에 대해 분석하였음

V.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이념과 전략

1.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이념과 전략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개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이념(Mission), 비전(Vision), 원칙(Principles), 전략(Strategic Approach)을 제안함



[그림 1] 한국형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이념과 전략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의 전문가 의견조사

- 정부부처 및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 특정적 사업의 한계는 ‘장애’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수원국 장애인의 손상을 복원하거나 치료해주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ODA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난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장애포괄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협력에 장애이슈를 포함시키는 포괄적 접근과 함께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 특정적 접근이 공존하는 이중트랙 접근이 필요함. 또한 장애포괄적 관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임

3. 보건복지부

- ‘개발도상국 장애포괄적 응급의료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장애포괄적 모자보건 이동클리닉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장애인 정책 전문가 양성사업’, ‘개발도상국 장애인 정책 컨설팅 사업’을 제안하였음

4. 고용노동부

- ‘개발도상국 장애인 포함 직업훈련 연수프로그램’, ‘개발도상국 장애인직업훈련 전문가 양성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 사업을 제안하였음

5. 미래창조과학부

- '개발도상국 장애포괄적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장애포괄적 정보화 인력양성 사업'을 제안하였음

6. 교육부

- '장애포괄적 이러닝 국제컨설팅 사업', '장애포괄적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 (GKS)'을 제안하였음

7.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포괄적 해외 작은도서관 사업'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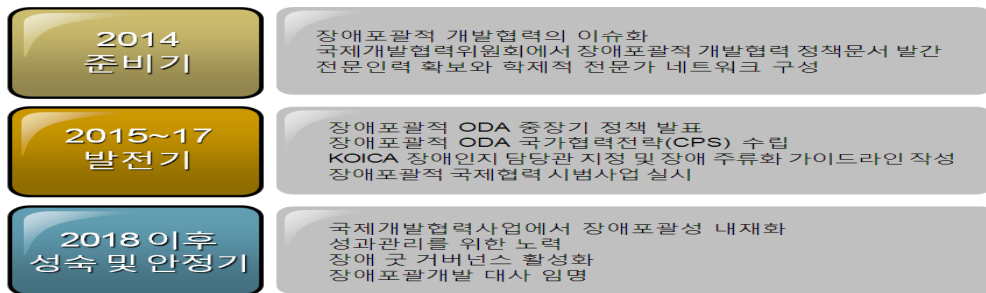
8. 외교부(KOICA)

- KOICA의 ODA 사업 중 보편적 장애포괄성이 반영될 수 있는 분야로 보건·의료, 직업훈련, 교육, 도로건설 등 SOC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들 분야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이 포함된다면 보편적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으로 이행이 가능함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로드맵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은 국내적으로 생소한 개념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시간적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로드맵

2. 국가차원의 전략

-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원조정책의 기획 및 입안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발협력의 정책목표와 기본전략을 담은 포괄적인 정책문서(overall policy statement)와 중점 지원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고 연계되어야 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함

3.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주요 이해당사자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성과 달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과정을 중요시해야 함

4. 인적자원 개발 및 효과적인 리더십

- 정부부처 ODA 사업에 장애포괄성이 인지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공무원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5. 장애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함

6. 정부부처 ODA 사업의 장애포괄적 방향성

- 장애포괄적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설계 시 (1)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 분석, (2) 근본적인 원인 분석, (3)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파악, (4) 자원의 분석, (5) 네트워크 전개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함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은 국내적으로 생소한 개념이므로 시간적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인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협력전략(CPS)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정책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셋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넷째, 장애포괄적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다섯째,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굿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여섯째, 정부부처 ODA 사업 중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이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나가야함

2013 KODDI 연구요약집

발행일 : 2014년 3월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전화 : 02-3433-0648 Fax) 02-416-9567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발행인 : 변용찬

인쇄처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031-421-8418)

※ 본 연구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

ISBN 978-89-6921-152-1 93330

